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395호

2017. 2. 16.(목)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 제2017-393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
제2017-401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 고 시

- 제2017-41호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5
제2017-42호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내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
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무지개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구역 지정]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2
제2017-43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고시 25
제2017-44호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86
제2017-45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고시 87
제2017-46호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16
제2017-4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18

◆ 공 고

- 제2017-343호 소방시설업 폐업 공고 129
제2017-354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공고 130
제2017-359호 2016년 수도권(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 공고 130
제2017-384호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 개정 공고 131
제2017-386호 2017년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134
제2017-394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144
제2017-39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44

◆ 구 고 시

- 제2017-15호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용산구) 146
제2017-2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2차) 고시(성북구) 148
제2017-2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북구) 154
제2017-27호 동선지구중심외 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성북구) 156

제2017-7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양천구)	160
제2017-8호 도시관리계획(원불교부지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작구)	161
제2017-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관악구)	164
제2017-22호 대치동 구마을 제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강남구)	165

◆ 구 공 고

제2017-1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중랑구)	171
제2017-173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도봉구)	173
제2017-11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수락골전망쉼터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노원구)	175
제2017-11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조성) 실시 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노원구)	176
제2017-13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조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노원구)	178
제2017-13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조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노원구)	181
제2017-185호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서대문구) ...	183
제2017-188호 도시계획시설(안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서대문구)	186
제2017-2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구로구)	187
제2017-26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폐지)결정(안) 열람공고(구로구)	189
제2017-18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금천구)	189
제2017-19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강동구)	190

◆ 사업소공고

제2017-3호 유물 구입 공고(서울역사박물관)	192
제2017-1호 특정소방대상물 조치명령서(미니레지던스) 공고(서초소방서)	194

◆ 기 타

제2017-16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96
제2017-19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96
제2017-20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97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393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주거비용의 부담을 겪고 있는 민간주택 이외 ‘준주택’ 거주 주거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거주 유형을 확대 필요
- 나. 준주택 거주 시민에게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 도모

2. 주요내용

- 가. 종래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 한정되었던 임대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준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까지 확대하도록 개정
- 나. 종래 ‘주택 소유자’에 한정되었던 임대료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의 상대방을, ‘임대인’으로 변경하여 준주택 임대사업자도 임대료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의 상대방에 포함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02)2133-7325, FAX: 02)2133-0718 E-mail: kwang9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401호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서울창의상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정연구논문 참여율 제고 및 논문의 질적 향상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연구 공모를 시민, 공무원 각각 연 1회로 통일하여 실시

－ 공무원 등 대상 시정연구논문 시상주기(횟수) : 연2회 → 연1회

나. 시민대상 시정연구논문 포상금 증액으로 참여율 제고 및 질적 향상

－ 시상등급별 포상금 증액

다. ‘제안’ 용어에 대한 정의에서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서울창의상의 효율적 운영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사회혁신담당관(신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혁신담당관(☎ 2133-6322, FAX 2133-0744, E-mail : dunkin@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1호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 사업 부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20-1일대(한남하이츠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

구분	자치구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성동구	4	옥수동	220-1	4.8	210%	50%	-	1	공동	-
변경	성동구	4	옥수동	220-1	4.9 ¹⁾	210%	50%	-	1	공동	국공유지 편입

※ 1) 국공유지 편입 219.5㎡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성동구 옥수동 220-1 일대	-	증)48,837.5	48,837.5	-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합계		48,837.5	100.0	-
획지		48,837.5	10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정비기반시설 계획 없음

2)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48,837.5	—	48,837.5	100.0	—
	소계	48,837.5	—	48,837.5	100.0	—
합계		48,837.5	—	48,837.5	100.0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26	25~40	보조간선 도로	7,800	용산구 한강로3가	성동구 응봉동	일반 도로	—	총독부 고시 제722호 (1936.12.25.)	독서 당로
기정	중로	3	139	12	—	550	옥수동 367	옥수동 449	일반 도로	—	서245 (1981.7.2.)	한림 말길
기정	소로	2	18	8	국지 도로	110	성동구 옥수동 220-4	성동구 옥수동 435-4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73호 (1968.9.19.)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동 이용 시설	어린이놀이터	옥수동 220-1번지 일대	—	증) 1,814.5	1,814.5㎡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의거 주민공동시설 = 839×2.5×1.25 = 2,621.875㎡이상 설치 ⇒ 계획 6,355.8㎡
	주민운동시설		—	증) 1,191.3	1,191.3㎡	
	경로당		—	증) 300.0	300.0㎡	
	어린이집		—	증) 400.0	400.0㎡	
	작은도서관		—	증) 350.0	350.0㎡	
	기타 주민 공동시설		—	증) 2,300.0	2,300.0㎡	
부대 시설	관리사무소		—	증) 300.0	300.0㎡	—
	경비실		—	증) 100.0	100.0㎡	—
	근린생활시설		—	증) 2,730.0	2,730.0㎡	—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48,837.5	획지	48,837.5	옥수동 220-1번지 일대	10	-	-	10	-	-

나)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	평균 (최고) 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48,837.5	획지	48,837.5	옥수동 220-1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74,635.271	24.49 이하	249.06 이하	20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 규모별 주택건설비용								
			전용면적		세 대 수		비율(%)				
			59.99㎡	재건축소형주택	52	52	6.20	6.20			
			59.99㎡	일반분양	54	252	6.44	30.04			
			74.99㎡		7		0.83				
			75.60㎡		15		1.79				
			84.99㎡		176		20.98				
			74.99㎡	조합원분양	137	535	16.33	63.76			
			88.85㎡		112		13.35				
			144.32㎡		154		18.36				
			172.09㎡		132		15.73				
			합 계		분양	787	839	93.80	100.00		
					재건축소형	52		6.20			
－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고, 일반분양 전체를 85㎡이하로 계획함											
심의를 통하여 완화 받고자 하는 사항			○ 허용용적률 완화(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8% (에너지효율인증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 지능형건축물 2등급 12%								
			○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정비계획용적률(230%) → 예정법적상한용적률(249.0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계법규 및 지침들에 의함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국·공유지
	48,837.5㎡	48,837.5㎡	0㎡	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0㎡				
기준용적률	○ 210%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허용용적률	○ 230% = 210%(기준용적률) + 20%(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지능형건축물)				
개발가능 용적률 산 정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α) = 230% × (1+1.3×0) = 230%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0㎡ / 48,837.5㎡ = 0.00 ○ 정비계획용적률 = 230%이하 적용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도시	○ 주변지역의 경관요소로서 한강변과 대상지 주변 녹지와 최대한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 ○ 주변지역과 연계, 지형을 고려한 총고계획으로 변화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 ○ 단지내부에 여유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를 유도	
	건축물	○ 건축물 높이 - 주변지역 및 사업구역의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높이 계획 - 단지내, 공간감, 방향성 및 고려한 인근지역의 적합성을 고려한 계획을 통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유도 - 건축물의 높이계획 : 최고 20층 ○ 건축물 형태 - 판상형과 탑상형의 혼합배치	
	오픈 스페이스	○ 공공녹지 계획 - 자연지형과 주변 공원현황을 최대한 보존연계한 공원 계획 - 풍부한 녹지공간으로 쾌적한 건축 환경 및 도시환경 창출	
환경보전	토지이용	○ 주변 공동주택단지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 녹지 공간 최대 확보	
	대 기 질	○ 공해에 강한 대기오염 정화수 식재 ○ 수관용적이 높은 수종으로 평면적인 식재가 아닌 관목과 교목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식재계획을 통해 녹지를 최대한 확보	
	수 질	○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폐 기 물	○ 공사 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발생폐수는 수거 후 위탁처리 ○ 지구 내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 서울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한 최종처리	
	소 음 등	○ 진출입로 차량 운행시 경적사용 금지 ○ 진출입로 등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 부지 내에 녹지 최대 확보	
재난방지	○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 내구성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사용 ○ 녹지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투수성 포장재 사용률을 높여 전체적으로 투수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침수피해에 대응 ○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확립		

7)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증) 304세대 - 현황 : 535세대 - 계획 : 839세대	-

8)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가능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립

구 분	정비계획상용적률 ①	법적상한용적률 ②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상용적률 ③	소형주택 분(③/2)
용적률 (%)	230%	249.06%	249.06% - 230% = 19.06%	19.06% / 2 = 9.53%
소형 주택 계획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상용적률을 뺀 값을 시도조례로 정한 비율에 따라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함 •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주택비율 및 연면적 (249.06% - 230%) / 2 = 9.53% • 따라서, 48,837.5㎡(대지면적) × 9.53% = 4,654.214㎡이상을 소형주택 (60㎡이하)으로 건설해야 하므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 52세대 공급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59.99	29.7	89.69	52

9) 2016년 제15차(2016.09.07.)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금회 상정안으로 수정가결〉

※ 조치사항 : 성동구 공고 제2016-1009호(2016. 12. 15.) 재공람 참조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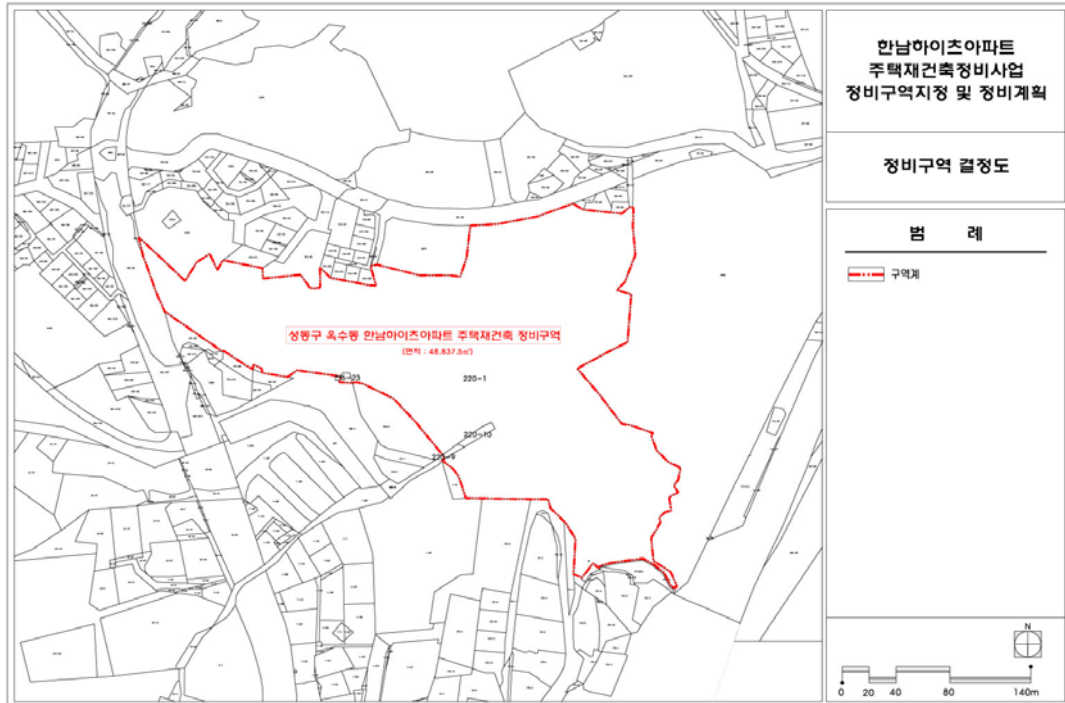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 구역지정 도서 참조

4.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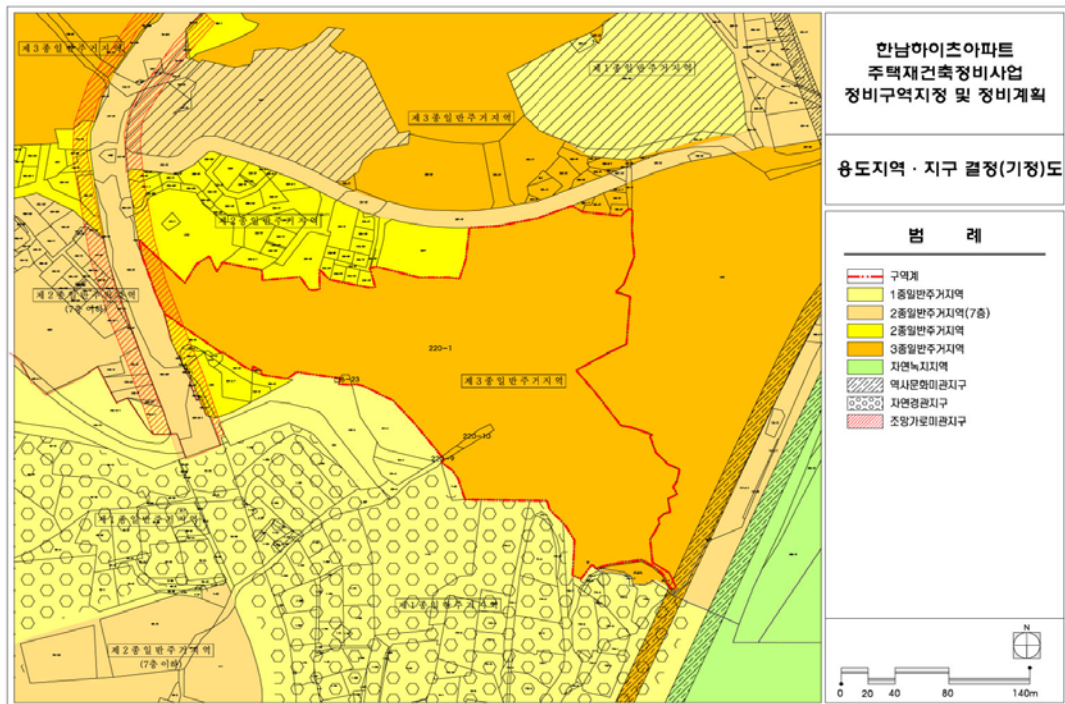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2) 및 성동구 주거정비과(☎02-2286-6557)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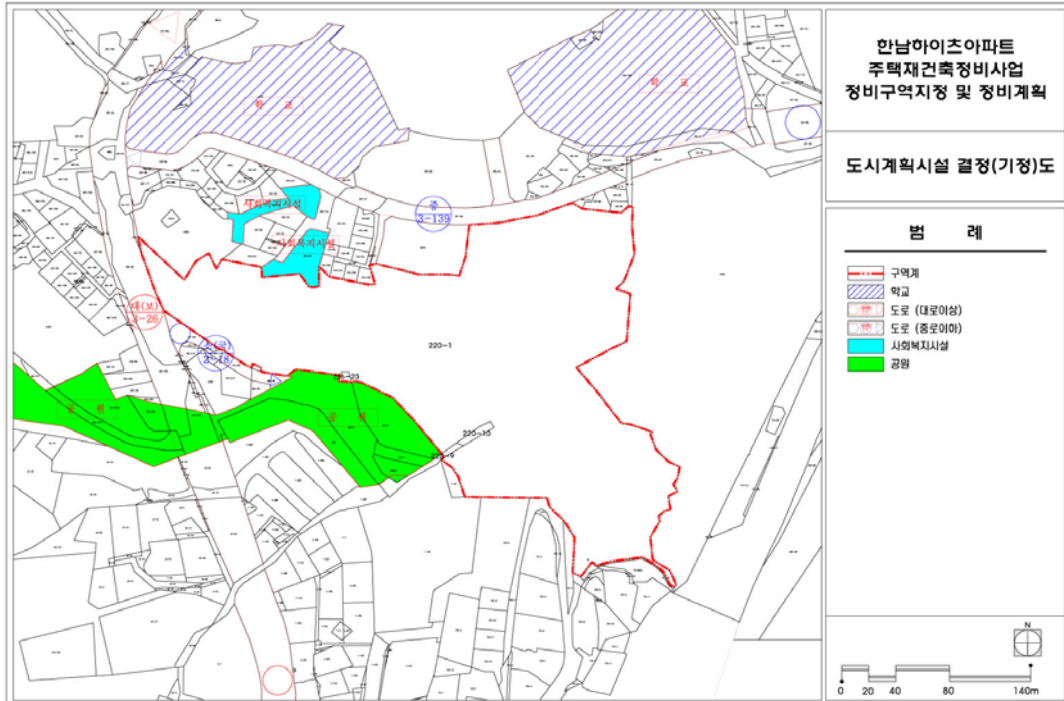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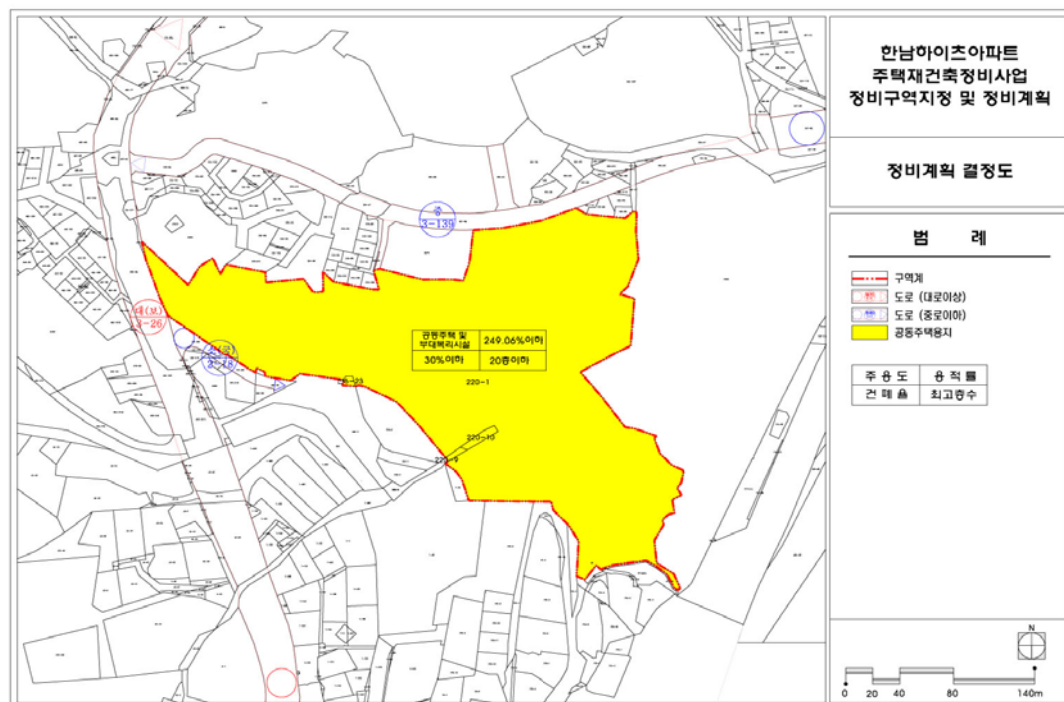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정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2호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내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무지개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구역
지정]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52호(2015.02.22.)로 변경 결정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내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변경 및 무지개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계획구를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결정(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취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적용대상		높이계획		비고
		기정	변경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150m 이하	좌동	
시흥대로변 일반상업지역		120m 이하	좌동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100m 이하	좌동	
시흥대로변 준주거지역		80m 이하	좌동	
공공청사(금천구청사) 부지				
홈플러스부지·113-112번지일대 특별계획구역				
이면부 일반상업지역 및 금하로·시흥대로73길(구.시흥역길)변 준주거지역		40m 이하	좌동	금하로변 남측(B2)주1)
기타 이면부		30m 이하	좌동	
이면부 공동주택지 (베르빌, 목련, 건영아파트)		도로사선제한 (H=1.5D이하)을 적용	좌동	
이면부 공동주택지 (무지개아파트, 무지개연립)		도로사선제한 (H=1.5D이하)을 적용	110m 이하	
롯데알미늄부지 특별계획구역		100m 이하	좌동	
롯데알미늄 주변 개별필지		60m 이하	좌동	
군부대 부지	시흥대로변 상업업무복합용지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150m 이하	좌동	
	금천구청역 인근 상업업무복합용지	사선제한 적용	좌동	
특별 계획 구역	공공청사 용지	60m 이하	좌동	
	공동주택 용지	사선제한 적용	좌동	
	학교용지	30m 이하	좌동	
	문화체육/사회복지용지	30m 이하	좌동	
베르빌아파트 북측 민간부지(15개필지)		40m 이하	좌동	최고높이가 지정된 대지는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 의한 도로 사선제한(H=1.5D이하)을 적용하지 아니함
필승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80m 이하	좌동	

○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높이계획 수립으로 높이 계획 변경

4)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1)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없음
- 2)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없음
- 3)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없음
- 4) 홈플러스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없음
- 5) 113-112번지일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없음
- 6)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토지이용		• 주거용지	
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진입표면 해발 297.86m ~ 335.36m)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무지개연립부지 : 준주거지역)	
사업방식		• 주택재건축사업	
기반 시설	도로	• 도로신설 1개소 ① 중로2-317 : 대로3-82(시흥대로73길(구.시흥역길)) ~ 중로1-110(금천로) 연결, 폭원 15m	
	기타	• 구역면적의 5%이상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물 밀도	건폐율	• 50% 이하	
	기준/상한 용적률	• 230% / 250% 이하	
	최고높이	• 도로사선제한(H=1.5D이하)을 적용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건축 한계선	• 시흥대로73길(구.시흥역길)변 5m • 시흥대로63길(구.발소길)변 3m • 8m 도로변 2m	
	대지내 공지	• 공개공지 2개소 (시흥대로변 및 시흥대로63길(구.발소길)변)	
	차량출입금지구간	• 20m이상 도로변 차량출입 금지구간 지정	

주1) 공공시설은 사업시행 시 개발주체가 조성 후 기부채납함을 원칙으로 함

주2) 주민합의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 무지개 연립부지와 공동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각각 개별적 개발이 가능

* 분리 추진 시 무지개연립부지는 인접한 필지(112-3대)와 같은 지침을 따름

주3) 사업방식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Shift도입시 관련기준 적용하여 사업방식 선정 및 계획수립

주4) 기타 기반시설은 기부채납되는 시설에 한함. 단, 건축물 기부채납의 경우 토지로 환산한 면적을 적용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토지이용		• 주거용지	
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진입표면 해발 297.86m ~ 335.36m)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무지개연립부지 : 준주거지역)	
사업방식		• 주택재건축사업	
기반 시설	도로	• 도로신설 1개소 ① 중로2-317 : 대로3-82(시흥대로73길(구.시흥역길)) ~ 중로1-110(금천로) 연결, 폭원 15m	
	기타	• 구역면적의 5%이상	
건축물 용 도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제외)	
	권장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건축물 밀 도	건폐율	• 50% 이하	
	기준/상한 용적률	• 230% / 250% 이하	
	최고높이	• 35층이하 (110m 이하)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건축 한계선	• 중로이상 도로 변 : 5m • 소로3-109호선 변 : 3m • 그 외 : 2m	
	대지내 공지	• 공개공지 2개소 (시흥대로변 및 시흥대로63길(구.발소길)변)	
	차량출입금지 구간	• 20m이상 도로변 차량출입 금지구간 지정	

주1) 공공시설은 사업시행 시 개발주체가 조성 후 기부채납함을 원칙으로 함

주2) 주민합의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 무지개 연립부지와 공동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각각 개별적 개발이 가능

* 분리 추진 시 무지개연립부지는 인접한 필지(112-3대)와 같은 지침을 따름

주3) 사업방식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Shift도입시 관련기준 적용하여 사업방식 선정 및 계획수립

주4) 기타 기반시설은 기부채납되는 시설에 한함. 단, 건축물 기부채납의 경우 토지로 환산한 면적을 적용

■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침(기정)도



■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지침(변경)도



- 7) 건영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없음
- 8) 대명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없음
- 9) 필승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없음
- 10) 공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없음
- 11) 롯데알미늄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없음

5.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6. 경미한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III.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무지개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무지개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금천구 시흥동 109-1 일대	-	증)28,336	28,336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증) 28,336	28,336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 1,414	1,414	5.0	
	도 로	-	증) 1,414	1,414	5.0	
획 지	소 계	-	증) 26,922	26,922	95.0	
	획 지	-	증) 26,922	26,922	95.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8,336	-	28,336	100.0	
주거 지역	소 계	28,336	-	28,336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6,578	-	26,578	93.8	
	준주거지역	1,758	-	1,758	6.2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시흥대로변	236,960 (252)	8,000 (42.5)	양측 12	건고350 72.8.14	-

※ ()은 구역내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2	317	15	집산	340 (148)	시흥동 113-46	시흥동 998-2	일반 도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04호 (06.06.08)	-
기정	소로	3	109	6~8	국지	220 (5)	시흥동 114-5	시흥동 123-2	일반 도로	-	금천구고시 제2000-4호 (00.02.19)	가각부

※ ()은 구역내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기준근거		기준(㎡)	계획(㎡)	비고
관리 사무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이상 확보		57.15㎡ 이상	315.63㎡	-
주민 공동 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창조적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정비모델 개발」 100세대~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 × 1.4		3,475.5㎡ 이상	3,571.14㎡	총량 기준
	경로당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100세대 이상일 경우, 40+(세대수-150)×0.01㎡	225㎡ 이상	253.14㎡	-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500세대 이상의 경우, 4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설치	330㎡ 이상	359.42㎡	-
	작은 도서관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300세대 이상일 경우	158㎡ 이상	466.74㎡	-
	기타 주민공동 시설	-	-	2,734.45㎡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주차장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 -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 -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75㎡당 1대이상 설치 -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0.8대 이상 설치		920대	1,022대	-
근린생활시설	-		-	3,666.10㎡	

마.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규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8,336	시흥동 109-1번지 일대	8	-	-	8	-	-

(2) 건축시설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최고 층수 (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규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8,336	계	26,922	시흥동 109-1번지 일대	-	-	-	-	-
			획지	26,922	시흥동 109-1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50% 이하	300% 이하	110m 이하	최고 35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건립세대수 : 993세대 ▶건립규모								
		구 분		소 계	세대수		구성비 (%)	비 고		
					분 양	임 대				
		합 계		993	865	128	100.0			
		전용 60㎡ 이하		506	378	128	50.9			
		전용 60~85㎡ 이하		487	487	-	49.1			
		전용 85㎡ 초과		-	-	-	-			
심의완화 사항		▶용적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에 따른 용적률 완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중로이상 도로 변 : 5m ▶소로3-109호선 변 : 3m ▶그 외 : 2m								

■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도로)	시설 기부채납 면적 (문화시설)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28,336㎡	26,922㎡	1,414㎡	1,473.71㎡	69.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문화시설 환산 부지면적 = 표준건축비(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_2015) × 연면적 ÷ 부지가액 (국토교통부 공시지가×2) = 2,849,000원 × 1,944.30㎡ ÷ 5,340,000원 = 1,037.32㎡ - 문화시설 대지 지분면적 = 총 연면적 중 문화시설 연면적에 대한 대지지분 = 1,944.30㎡(문화시설) × 26,922㎡(대지면적) ÷ 119,946.408㎡(총연면적) = 436.39㎡ - 총 정비기반시설 = 1,414㎡ + 1,473.71㎡ = 2,887.71㎡ (순부담율 9.97%)				
계획(기준)용적률	계획(기준)용적률 : 230%				
허용 용적률	계획없음				
상한용적률 및 정비계획용적률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1 + 1.3 × α) = 230% × (1 + 1.3 × 0.10470) = 261.31%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887.71-69) ÷ 26,922 = 0.10470 - 정비계획용적률 : 250.0% 이하				
예정법적 상한용적률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300% (계획 : 299.9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 규정에 의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가능. 단, 증가용적률의 50%를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소형주택 건설 = (299.98% - 250.00%) × 50% = 24.99% 이상 - 증가된 용적률의 24.99%(126세대)이상인 26.09%(128세대)를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계획 ※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 ※ 건축위원회 심의 시 법적상한용적률 확정				

■ 문화시설 기부채납

- 도입용도 : 문화시설 (지역예술교육센터)
- 도입목적 : 아동·청소년에게 문화예술 체험기회 제공 등
- 운영주체 : 금천구청
- 시설규모 : 연면적 1,944.3㎡ ※ 부지환산 면적 : 1,037.32㎡

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 보전	• 토양 및 지형지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도와 보행로, 주차장 등에 가급적 소형 블록, 투수성 블록 등과 같은 투수성 재료를 이용 • 기존 건축물의 철거시 매설된 정화조로부터 토양오염이 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량 수거처리 후 철거작업을 시행처리 • 수목식재는 건축물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수종으로 선정·식재 • 공사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준하여 처리 • 성상별 분리수거 및 음식물은 서울시 금천구 음식물 쓰레기처리계통에 의거 처리 • 공사시 가설 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감속주행 및 주간작업을 통한 발생시간 단축 • 도로변 공공조경을 통한 녹화시설 설치	
재난 방지	• 공사시 발생하는 절성토로 인한 사면에 대해서는 안정화대책을 마련하고 녹화공법으로 시공 • 정비구역내 가능한 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투수율을 제고함 • 건축배치계획시 소방도로로의 기능 용이성과 화재 초기진화를 위한 주요 사항 등을 고려 • 건축시 가능한 한 내연성, 불연성 건축자재를 사용 • 유류, 전기시설 및 위험물에 대한 상시 관리기능 강화 • 주 보행로 등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여 개방성, 안전성 확보 • 학교 주변지역 교육환경 저해시설이 입지하지 않도록 하고 보안등을 설치하여 충분한 조도 확보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비고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방법)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획지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6,922	시흥동 109-1번지 일대	26,922	공동주택 용지

자.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 수	세대수	공급면적 (전용면적)	비 고
시흥동 109-1번지 일대	별도획지로 구분하지 않음	-	128	54.87㎡ (39.90㎡)	

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가결) (2016. 12. 28)

■ 조건사항

- 가로 대응형 건축배치 및 가로활성화 관련
 1. 대상지 인접 거로의 위계, 이용 현황 등을 감안하여 북측 시흥대로 73길변은 ① 서측으로 연접한 공동 주택 단지(필승아파트)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가로활성화를 제고토록 조정 검토, ② 문화시설은 시흥대로 73길변으로 출입구 등 조정, ③ 동측의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북측 가로변으로 이전 검토.
 2. 남측 시흥대로 63길변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가로활성화 측면에서 가로에 접하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 검토
- 상정안의 단지내 공공보행통로는 단지 주민의 정주환경을 고려하여 단지내 보행동선 등으로 조정 검토
- 단지내 차량진출입구(2개소)는 안전상 지장이 없도록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구간의 길이는 최대한 확보할 것.
- 장애인·고령자유아 등 주거약자를 배려한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노인정, 화장실 등)과 단위세대의 화장실 등의 UD(Universal Design) 설계 검토.

4. 관계 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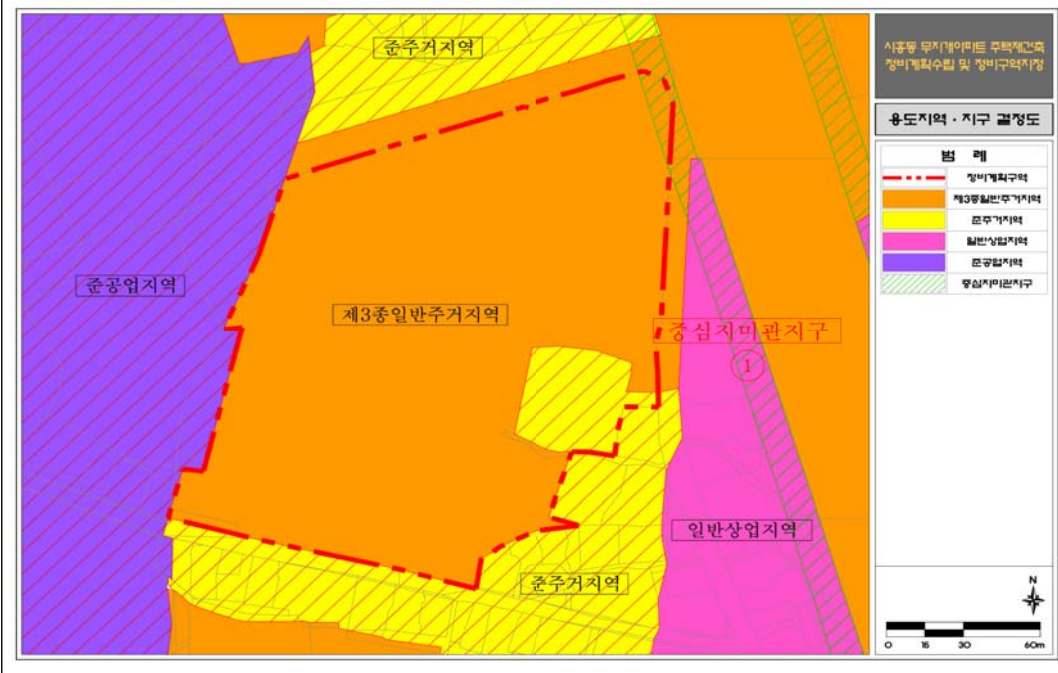
5.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공동 주택과(☎02-2133-7142) 및 금천구 주택과(☎02-2627-1612)에 관련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ultn.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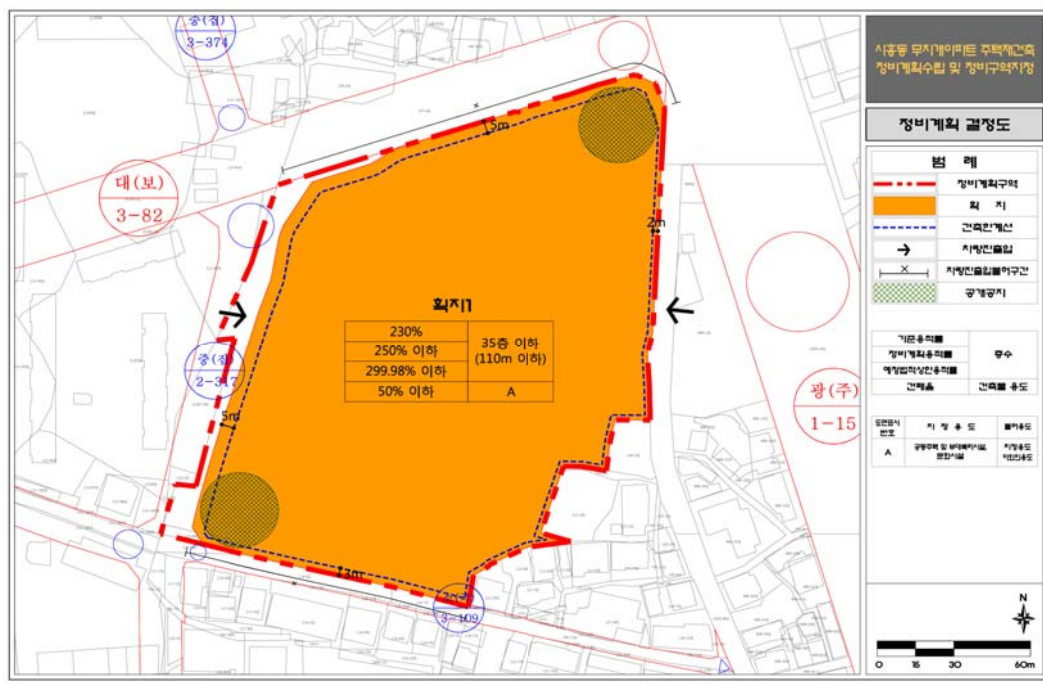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정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고시

제정 : 2002.08.20.

전면개정 : 2017.02.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27(2002.8.20.)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지침이 수립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 에서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절차와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교통영향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 신속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법·령·「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조례·「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시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이란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및 조례 제3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변경심의"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영 제13조의8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개선대책"이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주변가로와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배치·구조를 변경·보완하거나 유·출입 통행방식의 조정, 교통시설의 운영대책, 건물의 배치 및 진·출입구의 위치를 조정,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교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말한다.
4. "교통지표"란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경제지표 중에서 교통수요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인구증가율, 자동차보유대수 증가율, 경제성장률, 도로율 등의 기초적인

교통관련 자료를 말한다.

5. "교통영향평가 지표"란 제4호의 교통지표 중 교통영향평가의 기준이 되는 통행발생량, 교통수단별 분담률, 시간대별 유·출입분포율, 교통유발 원단위, 교통량, 주행속도 등을 말한다.
6. "교통유발 원단위"란 건축물의 각 용도별 일정한 단위시간(일반적으로 24시간)과 단위지표(단위인구, 단위면적, 단위통행자)를 토대로 통행량을 추정하거나 현황조사를 통하여 실측한 자료를 말한다.
7. "보고서"란 사업자가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한 교통영향평가서를 말한다.

제2장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제4조(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사업자는 별표 1에서 정한 내용항목의 순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의 범위산정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에 따른 값을 기준으로 한다.

③ 사업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대상사업별 중점분석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지역적 여건 등이 특수하여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영향평가 시간적·공간적 범위) ① 교통영향평가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목표년도까지로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물의 준공 후 1년, 3년

2. 택지,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준공 후 1년, 5년

② 교통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의 시행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이내 교차로(이 경우 교차로는 중앙선으로 분리된 양방향 2차로 이상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을 말한다)가 각 호에서 정한 교차로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 부터 가장 가까운 교차로(비 신호교차로 및 분기점을 포함한다) 및 그 범위 이내의 가로

가.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미만 :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4개 교차로 이상

나.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 8배 미만 : 반경 1.5킬로미터 이내 8개 교차로 이상

다.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8배 이상 :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12개 교차로 이상

라. 보행분석은 사업대상지 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하되, 보행자 중심시설 이용경로, 인접 대중교통 이용경로 등 보행영향권에 따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철도건설(도시철도를 포함한다)사업 : 여객 및 화물을 취급하는 역의 각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 이내의 가로

3.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도로건설(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도로

- 를 포함한다)사업 : 해당 도로와 접속하는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및 그 범위 이내의 가로
4.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지구로 부터 가장 가까운 교차로 및 그 범위 이내의 가로
- 가.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2배 미만 :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4개 교차로 이상
- 나.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 :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8개 교차로 이상
- 다.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4배 이상 : 반경 4.0킬로미터 이내 12개 교차로 이상
- 라. 보행분석은 사업대상지 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하되, 보행자 중심시설 이용경로, 인접 대중교통 이용경로 등 보행영향권에 따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공간적·내용적 범위 설정 시 유의사항) 제5조에 따른 공간적 범위는 해당 사업을 중심으로 각 방향별 교차로와 가로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구의 주변 가로망 체계·토지이용상황 등이 특수하여 공간적 범위를 각 방향으로 고르게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①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은 (제5조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자료는 심의완료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조사 자료에는 조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는 삭제한다), 조사 일시 및 시간, 조사내용, 조사자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최근 조사자료(보고서 작성완료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조사되고 공간적 범위 이내의 분석대상 교차로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를 인용하는 경우와 교통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DB시스템"이라 한다)에 구축한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철도·철도·터미널·공항 및 항만의 설치 운영 현황, 도로의 차로 운영 현황, 차도 및 보도의 폭원, 횡단보도, 버스베이 및 택시베이, 교통안전시설,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도로, 기타 도로의 부속시설 등 교통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하되 교통시설 설치 현황은 주변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계획 등과 비교할 수 있도록 가로망도(圖)에 제시하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현황은 가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시설의 종류 및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고, 현장사진을 첨부한다.
2.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신호주기 및 현시를 조사한다.
3. 사업지구로부터 도보권 내(도보권내에 주용도의 규모가 유사한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도보권외 최근접 거리)에 있는 주용도의 규모가 유사한 건축물의 주차시설 개요, 평균 주차시간 및 주차장의 규모를 조사한다.
4. 교통수단 분담률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발표한 자료이거나 유사한 건축물의 교통수단 분담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중로 이상의 가로(개별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지구와 인접한 소로 이상의 가로를 포함한다)와 교차로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3개 이상 차종별 교통량을 기준으로 조사하되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분하여 조사할 수 있다.

- 가. 승용차
나. 버스(12인승 미만, 12인승 이상)
다. 화물(2.5톤 미만, 2.5톤 이상)
6. 분석대상 교차로의 평균지체도와 가로구간의 차량 평균통행속도
 7. 평균 재차인원과 평균 적재톤수(화물통행 수요를 유발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조사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상위계획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8. 대중교통수단(개별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지구로부터 도보권내에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의 운영현황을 조사하되 노선번호, 기·종점, 운행간격, 사업지구엔 인접한 정류소의 침두시 평균 승·하차인원 수, 침두시 대기행렬, 버스전용차로제 실시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9. 지역별·유형별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다발지점 현황을 조사한다.
 10. 보행자 중심시설(학교, 공원 등) 최적 이용경로, 대중교통 최적 이용경로, 사업지 인근 버스정류소 대기공간, 유효보도폭원의 연속성 등을 보행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한다.
 11. 자전거 통행량과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 자전거거치시설의 조사와 문제점을 조사한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현황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록하되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자료 및 DB시스템에 구축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수성으로 현황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하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교통시설 현황조사 : 조사범위, 조사 대상시설,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2. 교통량 조사 : 가로와 교차로 교통량, 보행자 수,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3. 대중교통 이용실태조사 : 대중교통 현황, 정류소 수,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4. 주차시설 및 이용실태조사 : 조사대상 주차장 수, 주차실태, 주차장 이용행태,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5. 보행 : 유효보도폭, 보행자 중심시설 이용경로, 대중교통 이용경로,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6. 자전거 : 자전거도로 현황, 자전거불법주차실태,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교통량조사는(공간적 범위 이내의 가로와 교차로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력 또는 장비를 활용하여 조사하되 대상사업의 침두일(1주일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을 말한다)오전 침두시(침두일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단위를 말한다) 및 오후 침두시 각 1시간 이상의 교통량을 조사한다. 이 경우 침두일 및 침두시는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하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지구로부터 최근접 거리에 있는 주요 간선도로 또는 교차로의 1개 이상을 사전 조사하여 결정하고 교통량 조사결과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1.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1일 이상 조사가 필요한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에너지개발, 대학·대학교의 설립, 공동주택, 공공업무시설, 통신시설의 설치, 의료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건설기계시설을 포함한다), 공장,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2. 일요일을 포함하여 2일 이상 조사가 필요한 사업
관광단지의 조성,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시

설, 관광휴게시설

3.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3일 이상의 조사가 필요한 사업

공항의 건설,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건설(화물터미널의 건설을 포함한다), 철도의 건설(도시 철도의 건설을 포함한다),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4. 기타 사업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사업의 특성과 유사한 사업을 적용

5.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주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 이상을 말한다) 또는 2개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거나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사업

- 제1호 내지 제3호의 분류 중 조사기간이 많은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

④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지구가 속한 블록(교통흐름을 달리하는 대로(大路) 이상의 간선도로로 구분되는 블록을 말한다) 내의 이면도로와 교차로에 대한 용량분석, 서비스수준 분석 등 현재와 장래 교통여건을 포함하여 조사·분석하되 이를 토대로 기하구조 개선이나 신호 또는 비신호 운영여부 결정 등의 신호화 계획, 최적 신호시간 계획, 보행소통 및 안전 등에 대한 현황 등을 조사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토지이용현황·계획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① 토지이용현황은 교통유발수요 및 교통처리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의 주요 지형, 건물 및 도시기반시설(이 경우 가로와 교차로의 형태를 함께 제시한다)
2. 사업지구가 소재한 블록과 인접블록의 건축물(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2호에서 정한 최소규모의 5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의 주용도, 층수, 면적, 주차규모, 주차방식, 전·출입구의 위치 등 건축물현황

②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개발계획은 장래교통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현황
2. 공간적 범위 이내에 있는 다른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별 건축연면적, 주차대수, 유발교통량
3.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기반시설계획
4. 고시 또는 공고된 인구 및 주택계획

제9조(교통시설의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계획) ① 교통시설의 설치계획은 주요도로, 교차로, 철도, 도시철도, 공항, 항만, 여객·화물터미널 및 도로의 차선, 폭원, 기타 도로부속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교통관련계획은 사업지구와 관련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여러 교통계획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각 계획의 내용을 비교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영향평가 지표) ①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교통수요예측의 기본지표가 되는 교통영향평가 지표를 설정하기 전에 관련 상위계획, 주변개발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계획, 교통시설의 설치계획 등에서 제시된 사회·경제지표에 대한 비교 분석
2. 신규 사업 또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유사 사업 또는 유사 건축물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관련 교통지표의 적정성 여부 확인
3. 기존 사업 또는 기존 건축물을 확장·증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현황조사를 통하여 교통지표의 적정성 여부 확인

② 평균 재차인원 및 평균 승·하차인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평균 재차인원은 사업지구 또는 유사 건축물에 대한 1개소 이상의 현황조사 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가중 평균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평균 재차인원을 산출할 수 없거나 생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평균 승차정원의 50%를 평균 재차인원으로 한다.
3. 통행 발생량에 대한 교통수단별 소요차량 대수의 예측은 평균 승·하차인원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4. 대중교통수단의 평균 승·하차인원은 첨두시를 기준으로 한다.
5. 제4호에 따른 평균 승·하차인원을 조사·분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평균 재차인원의 20%를 해당 지점에서 승·하차하는 것으로 본다.

③ 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차량 규모별로 구분하여 화물차량 통행량 조사를 하여야 한다.
 - 가. 소형 : 1.0톤 미만
 - 나. 중형 : 1.0톤 이상~8.0톤 미만
 - 다. 대형 : 8.0톤 이상, 세미트레일러 및 트레일러
2. 차량 규모별 일반적인 평균 적재능력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평균 적재능력을 이와 달리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차량규모별로 운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차량규모별 평균 적재능력을 변경할 수 있다.
 - 가. 소형 : 1.0톤
 - 나. 중형 : 4.5톤
 - 다. 대형 : 8.0톤
3. 유사 건축물의 화물차량 소요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평균 적재화물량 및 공차 운행률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서 산정한다. 다만,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균 적재화물량은 제2호 각 목에 따른 평균 적재 능력의 50%와 공차 운행률은 50%를 각각 적용한다.
 - 가. 1개 이상의 실측 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가중 평균한 조사자료
 - 나. 3개 이상의 실측 자료를 가중 평균한 조사자료

제11조(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① 교통수요예측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의 가로와 교차로에 대하여 실시하되 사업미시행 시와 사업시행 시로 구분한 후 해당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내용 또는 교통지표를 활용하여 장래교통수요를 예측한다. 이 경우 교통지표는 교통영향평가 목표연도에 맞추어 보정하여야 한다.

- ② 사업미시행 시의 교통수요예측은 해당 지역의 인구증가율, 자동차보유현황과 전망, 차종별 보유대수 증가율, 차량의 평균 운행률 및 주변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과 타당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제1호에 따른 개발사업은 4단계 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하고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교통유발 원단위를 활용한 직접수요예측기법을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블록 내의 연결도로와 교차로를 포함하여 사업미시행 시 및 사업시행 시의 교통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비스수준은 사업미시행 시, 사업시행 시, 교통개선대책 이행 시로 각각 구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제12조(교통유발 원단위) 교통유발 원단위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1개 이상의 실측자료와 3개 이상의 관련 자료(DB시스템에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이거나 3개 이상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실측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1. 교통유발 원단위는 해당 지역에 있는 동일용도·유사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 자료를 우선한다.
2. 해당 사업지구의 지역실정에 맞는 용도별 교통유발 원단위를 새로이 조사하고 이에 대한 교통여건(터미널, 지하철 정차장, 대로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 등으로부터의 거리 등 교통입지를 말한다)을 요약하여 수록한다.
3. 제2호에 따라 조사한 교통유발 원단위가 현실성과 대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사 건축물을 다시 조사하여야 한다.
4. 교통유발 원단위는 침두시를 구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1일 활동인구를 조사하여야 한다.
5. 교통유발 원단위의 현황조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에 따른다.
 - 가. 유사 정도여부 판단·분석
 - (1) 해당 도시 규모의 유사 정도 및 동일 용도지역인지 여부
 - (2) 조사대상 건축물과 수립 대상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 비교
 - (3) 도로·도시철도·항만·공항 등과의 인접성
 - (4) 도시설계 등 가로망 정비지역 여부
 - (5) 기타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 등 주변 교통여건의 비교
 - (6) 조사대상 건축물과 수립 대상 건축물의 가로망에서 위치 비교 등
 - 나. 조사시기 : 조사기간, 침두일 및 침두시 판단내용 제시 등
 - 다. 조사방법 : 현황조사, 사진촬영, 도서자료에 따른 조사, 기타 혼합방법 등
 - 라. 조사내용요약 : 용도별, 시간대별, 요일별 구분
6. 교통유발 원단위는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조사 일수를 준용한 요일별, 시간대별로 조사하여 복합용도 건축물의 종합교통유발정도, 침두일 및 침두시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교통유발 원단위 인용 자료는 조사시점기준 3년 이내의 자료를 인용하되 자료의 출처와 교통여건을 제시한다.

8. 교통영향평가 시 인용되는 교통유발 원단위는 조사시점 대비 보고서 작성 기준년도로 보정하되 보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9. 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한 통행발생량 산정 시에는 각 용도별 교통유발 원단위의 합산에 따른 중복통행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70%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 등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조사한다.
10. 제9호에 따른 중복통행량을 산정하는 경우 유사한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복합용도에 따른 상승효과 또는 추가 교통유발 원단위를 분석한다.

제13조(교통수단 분담률) 교통수단 분담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사업지구를 이용하는 활동인구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이용인구와 상근인구를 구분한다. 이 경우 교통수단 분담률은 도보권 내에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사업지구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사업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람통행과 화물통행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다.
 - 가. 사람의 통행을 위한 승용차, 택시, 소형승합차, 대형승합차 등 교통수단의 차종별 통행 비율
 - 나. 화물의 통행을 위한 중·소형, 대형화물차 등 교통수단의 규모별 통행비율
3. 조사된 교통량이 조사대상 지점 또는 구간이 공사 중이거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하여 평상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평상시 상태로 보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분담률을 설정함에 있어서 각 지역별·사업지구의 위치별 특성을 고려하여 버스 및 지하철 분담률을 설정한다.
5. 제4호에 따른 버스 또는 지하철 분담률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달리 산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가. 사업지구의 위치가 도시철도의 정거장 또는 버스정류소로부터 도보권 이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 분담률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거리에 있는 3개 이상의 유사 건축물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가중 평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나. 사업지구의 위치가 도시철도의 정거장과 버스정류소로부터 도보권 밖에 위치할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상의 지하철 및 버스분담률을 택시·승용차 및 기타 차량의 분담률에 포함시키되 이와 다른 분담률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목 단서를 준용한다.
 - 다. 버스수단 분담률은 도보권 이내의 승·하차인원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14조(첨두일 및 첨두시) 사업시행 시의 첨두일 및 첨두시는 제12조에 따른 조사·분석한 해당 건축물의 교통유발량(복합용도의 건축물은 각 용도별 교통유발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교통유발량을 말한다)과 제7조제3항에 따라서 조사된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량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15조(주차수요예측) ① 주차수요 원단위는 각 용도별로 산출하되 1개 이상 유사 건축물의 현지 조사결과와 3개 이상 관련 자료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

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 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동 계획상의 원단위, 연평균증가율, 이용효율 등 그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주차수요예측기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단위법에 따라야 하며 이와 다른 주차수요예측기법을 도입할 경우에는 그 기법의 내용과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주차수요 예측 시 원단위법에 따른 조사는 현황조사 자료를 우선하여 적용하되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조사 또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동일하고 그 규모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설문 또는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용도별로 주차수요를 구분한다.

⑤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평가대상사업 범위의 10배 이상 범위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의 내용 중 각 블록별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확정할 수 없는 개발사업으로서 개별 건축물 건축 시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별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수요의 예측은 제외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주차수요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차수요 예측은 그 근거가 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각 블록별 개별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주차수요예측이 필요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노외 주차수요(향후 신·증축되는 건축물의 법정 주차규모를 초과하는 주차수요와 통과교통의 우발적 주차수요를 말한다)는 교통영향평가 목표연도 별로 예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외 주차수요는 향후 신·증축 예정인 개별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3. 노외주차장 부지면적은 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최종 목표연도의 노외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의 설치 위치는 단지 내의 지역별 노외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하되 각 노외주차장 부지의 면적은 주차빌딩의 설치가 가능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단독주택단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제6항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최종 목표연도의 노외 주차수요와 주변 주차시설 등 교통여건을 반영하여 적정 규모 이상을 확보하되 도시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하기 편리하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연장은 기·중점부를 포함하며 지선도시철도가 동시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동 구간을 포함한다.

⑧ 주차상한지역의 주차수요예측은 주차상한지역의 주차규모를 근거로 작성한다.

⑨ 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한 주차수요 예측 시에는 복합용도 건축물 전체의 침두시간대를 결정하고, 원단위법과 누적주차수요 예측기법을 병행하여 건축물 전체의 침두시 주차수요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용도별로 주차장 출입구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계획을 감안하여 최대 주차수요를 산정한다.

제16조(서비스수준 분석 및 승용차 환산계수) 교통량의 서비스수준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하되 그 결과와 승용차 환산계수는 최근년도의 도로용량편람의 기준에 따라 제시한다. 다만, 승용차 환산계수 등에 대하여 도로용량편람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가로구간 분석 : 구간별 진행방향, 차로 수, 차로폭, 구간거리, 최대 허용용량, 침두시 교통량, 교통량 대(對) 용량비(이하 "V/C"라 한다), 평균통행속도, 서비스수준
2. 신호 및 비신호 교차로 분석 : 교차로명·진행방향을 구분한 교통량 및 신호주기 등을 토대로 산출한 평균 지체도
3. 대중교통 분석 : 혼잡도, 환승체계, 노선 수 및 운행간격, 평균 승하차 인원, 버스베이 규모, 대기공간
4. 엇갈림분석 : 엇갈림구간의 형태, 엇갈림 강도계수, 엇갈림구간의 총 차로 수, 엇갈림 교통량, 엇갈림 구간의 총 교통량, 엇갈림구간의 길이, 엇갈림/비엇갈림 교통류의 평균속도
5. 보행분석 : 보행교통유율, 점유공간, 밀도, 보행속도, 서비스 수준(보행자도로, 대기공간, 신호횡단보도)
6. 자전거통행 분석 : 도로 폭, 상충횡수, 방향별 교통량, 지체도를 감안한 서비스 수준

제17조(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도출) ①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은 교통수요 예측결과와 상위계획, 법령내용과 서비스수준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도출을 회피하거나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은 관련자료, 현황조사결과, 및 교통수요 예측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을 대상사업과 항목별로 구분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한 후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축물

- 가. 주변가로 및 교차로
- 나. 진·출입동선
- 다. 대중교통
- 라. 보행
- 마. 자전거도로 교통체계
- 바. 주차(관광버스 수요 유발시설은 관광버스주차 별도분석)
- 사. 교통안전 및 기타
- 아.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10배 이상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한다)
- 자. 교통수요관리계획 수립(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 교통수요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개발사업

- 가. 사업지구의 외부(주변가로 및 교차로)
- 나. 사업지구의 내부(가로 및 교차로)

- 다. 대중교통
- 라. 보행
- 마. 자전거도로 교통체계
- 바. 주차
- 사. 교통안전 및 기타
- 3. 도로사업
 - 가. 진·출입지점(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로별로 수립한다)
 - 나. 진·출입지점과 연결되는 주변가로 및 교차로
 - 다. 대중교통
 - 라. 보행(고속도로는 제외)
 - 마. 주차(휴게소 등)
 - 바. 교통안전 및 기타
 - 사. 전체노선에 대하여 지역분리 극복방안(작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4. 철도사업
 - 가. 정거장 내부(외부 ↔ 대합실, 대합실 ↔ 승강장, 승강장, 환승역은 환승통로, 환승시설 진·출입동선)
 - 나. 정거장 외부(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보행)
 - 다. 주차(환승 주차장 동선, 화물 하역 공간 및 주정차 공간)
 - 라. 교통안전 및 기타
 - 마. 전체노선에 대하여 지역분리 극복방안(작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④ 교통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가.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지침
 -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 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의 교통시설계획에 관한 기준
 - 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
- ⑤ 외부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사업시행의 전·후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뮬레이션(simulation)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 1.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8배 미만 : 해당 사업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1개 교차로 이상
 - 2.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8배 이상 : 해당 사업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2개 교차로 이상
- ⑥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건설기술심의, 설계자문회의, MP(Master Planner)제도 등에서 사전 검토된 경우에는 그 내용(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교통개선대책의 수요관리 등 준공 후 운영계획) ①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교통수요관리계획 및 주차장 운영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주차상한제 해당 건축물은 주차수요 감축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에 따라 주변지역에 특히 영향이 많은 시설(주용도가 교통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등)은 준공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통개

선대책의 개선효과를 분석한다.

- 제19조(교통개선대책 종합 및 개선효과 분석)** ① 교통개선대책의 효과분석은 각 교통개선대책별 분석과 종합분석으로 구분한다.
- ② 각 교통개선대책별 분석은 종합개선안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전·후 서비스 수준 변화정도를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법 등에 따른 지표(별표 7)를 이용하여 비교·제시하고 교통처리용량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 ③ 비계량화 효과분석은 보고서상의 비계량화 효과분석표(별표 8) 내용의 적정성을 교통영향 분석·개선 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다.
- ④ 별표 8에서 정한 비계량화 효과분석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는 항목별 검토기준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제20조(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 수립)** ① 교통영향평가 수립범위의 10배이상인 사업은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다.
- ②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시행계획은 그 시행계획의 내용(규모), 시행시기, 개선비용, 시행주체, 비용부담주체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되 다수의 이행의무자(각각 사업을 달리하는 개별 사업자를 말한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이행분담률을 제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과교통 또는 자연적인 교통유발 등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본다. 다만, 이행분담률에 대하여 모든 이행의무자가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본문 전단에도 불구하고 정량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 시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 등을 시뮬레이션(Simulation) 기법 등에 따른 지표(별표 7)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하여 승인관청에게 취득을 요청하는 경우 승인관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토지 등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승인관청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⑥ 사업지구 외부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관련지역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수립되어 있는 대책에 사업지구로 인한 추가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행분담을 할 수 있으며, 이행분담에 따른 교통량등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21조(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①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은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소통의 장애로 인접 지역에 미치는 과급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각 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다만,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에 대하여 별도로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건축물의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에 대하여는 진·출입구와 공사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교통처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참고자료의 정리 및 수록) ① 교통량의 조사 자료는 교차로와 가로를 구분하여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조사 대상규모 및 조사 분석결과 등을 종합·정리하여 보고서 부록에 제시한다.

② 교통유발 원단위, 수단분담률, 침투율, 보정계수, 평균 승차인원, 중복률 및 상승효과, 시간대별 유출입분포 등 현황조사와 관련자료 조사결과를 제시한다.

③ 보고서의 본문에 수록되는 인용자료는 자료명, 출판년도, 저자, 인용내용, 해당 인용내용의 발생시기 및 쪽수 등 그 출처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인용내용은 필요한 내용만을 요약 정리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기재한다.

⑤ 보고서(보완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⑥ 보행량의 조사자료는 조사지점, 조사시기, 조사방법, 조사 분석결과 등을 종합·정리하여 보고서 부록에 제시한다.

제23조(약식 교통영향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제1호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공원
2.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제2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가. 종교시설 중 교회, 성당을 제외한 건축물
 -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을 제외한 건축물
 - 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 마. 묘지관련시설
3.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개별 건축물
4.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 비고 제5호 가목, 나목 및 영 제13조의8에 따른 변경심의 대상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사업이 완료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나. 확장 또는 증축규모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수차에 걸쳐 약식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확장·증축된 규모가 합산하여 수립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립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5.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② 약식 교통영향평가 실시방법과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간적 범위는 제5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목표연도까지로 한다.
 - 가. 건축물 : 건축물의 준공 후 1년
 - 나. 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준공 후 1년, 3년
2. 공간적 범위는 제5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범위 이내로 하되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가. 건축물 :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교통에 영향을 많이 받는 2개 이내 교차로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와 직접 접하거나 연결되는 도로의 교차로 범위에 한한다)
 - 나. 개발사업 :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영향을 많이 받는 4개 이내 교차로
3.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등 교통환경의 조사분석은 제7조 내지 제11조에 불구하고 국

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현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교통유발 원단위는 제12조에 불구하고 3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자료가 모두 최근 3년 이내의 실측한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1개 이상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③ 교통개선대책은 사업지구의 내부보다는 진·출입 동선,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 가로, 교차로의 소통 및 교통안전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보고서의 규격 등) ① 보고서는 별표 11에서 정한 보고서 표지양식으로 한다.

- ② A4용지를 좌절로 편집하고 글씨는 좌에서 우로 가로쓰기로 한다.

- ③ 사업의 개요 항목에는 해당 사업 및 시설의 인·허가 관련 법규, 사업명, 위치, 사업시행자(연락처), 사업기간, 도시계획사항, 실제용도, 건축개요(대지면적, 건축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규모), 복합용도일 경우 Swa값, 주차시설(법정, 수요, 계획대수 및 비율 : 기계식 및 자주식 구분 기재, 장애인, 여성, 경차 주차, 관광버스 주차 등), 발생교통량(목표년도별 사업지 및 주변가로 침두시, 1일), 사업지 진출입구 수를 필히 기재한다.

- ④ 건물의 층별 상세 도면에 Swa값 및 원단위에 대한 계수 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가능토록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한다. (예: 면세점을 판매시설로 기재하지 말고 면세점으로 기재)

- ⑤ 통계표와 도면은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접어서 제1항의 크기와 편집방향으로 통일한다.

- ⑥ 도면은 축척, 방위각 등을 표시하되 축소 또는 확대한 경우 이에 맞는 축척을 표시하여야 하며 종합개선안과 토지이용현황은 색상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⑦ 종합개선안 도면에는 대지경계선, 지상과 지하를 구분한 건축경계선, 도로단면도, 개념도, 범례, 사업지구 전체 구간의 폭·길이 및 보도·공개공지 등의 간격을 표시하며 지형여건에 따라 등고차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개선안에 계획고를 표시하고 대지 중·횡단면도, 구조물계획의 평면도를 제시한다. 이 경우 도로는 기하구조 기준, 횡단구성 제원, 평면도, 표준중·횡단면도를 제시한다.

- ⑧ 보고서의 겉표지에는 평가대행자와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이하 "평가대행업체"라 한다)를, 보고서의 제출문에는 평가대행업체(등록번호·등록일·책임자를 포함한다)와 보고서 제출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⑨ 보고서 끝문에는 평가 대행용역의 수행기간, 평가 대행용역 시 참여전문인력, 보고서 인쇄업체, 구상용역의 수행업체, 평가 대행업체·사업자 주소 및 전화번호,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가격 산출근거와 용역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⑩ 제9항에 따른 평가대행용역 참여전문인력 명단은 규칙 별표 1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과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등록하지 못한 기술인력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명단에는 성명, 소속, 직책, 근무기간, 개인별 작업일정표, 자격명·자격번호 및 참여정도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 ⑪ 제10항에 따른 참여정도의 구분은 책임자, 교통환경의 현황조사, 관련자료의 수집, 교통영향평가 시 지표의 설정, 교통수요예측, 문제점 도출·분석 및 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등으로 구분한다.

- ⑫ 모든 현황조사 자료는 조사개요, 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한다.
- ⑬ 보고서는 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평가 대행업체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과 평가 대행업체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3장 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 등

- 제25조(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 ① 승인관청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심의기관(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승인관청은 보고서를 접수(보완접수를 포함한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송부하여 사전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보고서가 이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사업자가 마련한 교통개선대책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심의에 대한 사전검토는 변경심의 사항에 한한다.
-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사전검토내용에 대하여 수용 또는 미수용(부분수용)여부를 판단하되 미수용(부분수용)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승인관청은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시한 사전검토 의견을 심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검토 의견 중 미수용과 부분수용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전검토에서 제시되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여 심의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 ⑥ 위원장은 별지 2호 서식 내지 별지 5호 서식의 심의결과에 서명한 후 승인관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26조(보고서 집중관리) ① 승인관청은 보고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황조사표, 현황조사 참여인력명단 및 조사비용의 지출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아 보고서를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의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산출가격의 60% 이하로 평가 대행계약이 체결된 경우
 2.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다른 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거나 조사자료가 다른 보고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지구의 주변 교통시설현황이 사실과 다르고 이를 토대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
 2. 고시 또는 공고되어 외부에 알려진 사업지구와 관련 있는 중요한 교통계획·개발계획·도시계획도로 등을 누락시키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수록하고 이를 토대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3. 교통개선대책이 실현 불가능한 계획임에도 이를 임의로 구상하거나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높인 경우

4. 중·단기 교통개선대책의 규모·위치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장래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근거로 교통문제를 도출하지 아니한 경우
 6.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7. 대상사업의 교통유발 등 현황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한 교통조사 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경우
 8. 교통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제시한 교통개선대책이 주변의 가로와 교차로에 교통난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한 경우
 9.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10. 공간적 범위 이내의 교차로와 가로의 교통량 현황조사 결과가 조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주변지역의 신규 사업 또는 계절적 변동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공간적 범위 이내 구간선 도로에서 30% 이상의 오차가 발생된 경우
- ③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집중관리 대상자료를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시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보고서 심의 및 심의내용 통보) ① 승인관청은 매월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하거나 3인 또는 4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제5호에 대하여는 2명의 위원에게 자문(검토)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매월 심의건수가 1건인 경우
 2. 제23조에 따른 약식 교통영향평가의 심의
 3. 제27조 제7항에 따른 보완내용 심의
 4. 제29조 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5.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개선대책(변경심의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포함한다)의 내용이 경미(輕微)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 ② 위원장은 보고서를 심의할 때에는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도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의결 :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을 원안대로 수용하는 경우
 2. 수정의결 : 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제시하는 경우
 3. 보완 : 제2호에 따라 수정 또는 추가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여 이를 보완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보완(소위원회 상정) :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여 이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이때 소위원회 심의위원은 소위원회 기간동안 동일한 심의위원으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음
- ④ 승인관청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와 승인부서에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원안의결된 때에는 의결서 정본을, 수정의결된 때에는 의결 내용을 반영한 교통개선대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최종 심의의결 보완서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승인관청은 보완 내용을 확인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업명 및 사업자
 2. 사업기간 및 평가대행자
 3. 사업위치, 용도
 4. 사업규모(부지 면적, 건축 연면적, 용적률)
 5. 사업형태
 - 가. 건축물은 지상·지하의 층·동, 진출입구 수
 - 나. 개발사업은 개발형태·진출입구 수
 6. 목표연도별 첨두시 교통량 유발 대수
 7. 주차시설(면수), 진출입동선, 주변가로와 교차로, 보행시설, 교통안전시설, 대중교통시설 및 기타 심의사항
 8. 첨부하여야 할 사항
 - 가. 종합개선안도(배치계획, 동선계획 포함)
 - 나. 차량동선체계도, 보행동선체계도, 주차동선체계도 (각 주동선·부동선 체계 구분)
 - 다. 용도별 면적표 또는 토지이용계획표
 - 라. 건축물의 배치계획
 - 마. 교통개선대책 변경 대비표(변경심의의 경우)
 - 바.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
 - 사. 별지 6호 서식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
 - 아. 기타 심의 시 추가 또는 보완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계획 및 관계 도면
- ⑥ 제5항에 따라 사업자가 수정의결한 내용을 충족하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관청은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용할 수 있으나 이를 판단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⑦ 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보완내용을 송부 받은 때에는 이를 보완한 후 승인관청에게 다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관청은 보완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완내용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⑧ 위원장은 제7항에 따른 보완내용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등

제28조(변경심의 대상) ①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제29조제1항 별표4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등 영 제13조의8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통소통 또는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

가. 주요한 차량 또는 보행 동선체계상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 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나. 진·출입구의 위치가 주변 교차로에 가까워진 경우

다. 진·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 또는 주차장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

라.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마. 진·출입구의 위치 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출입구와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바. 진·출입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2.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가. 중로 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도로의 위계가 변경된 경우

나. 노외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터미널의 위치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위계가 다른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

다. 진·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라. 동일한 진·출입허용구간 이내에 진·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제29조(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 대상) ① 영 제13조의8 제2항 제4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내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상사업의 규모를 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미만으로 축소한 경우

3.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교통개선사업 등 공익사업(관계 법률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으로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도시계획도로의 확폭, 도로의 선형 변경 등으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5. 해당 사업의 심의내용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다른 사업의 시행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6. 산업단지에서 진·출입로 개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7. 토지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시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9.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교통

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위원회 위원 등 교통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
10.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경찰서)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제30조(변경심의 보고서의 작성 등) ① 제28조에 따른 변경심의 및 제29조에 따른 변경신고 보고서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이 작성하되 변경심의 사유에 따라 내용항목을 가감(加減)할 수 있으며 제2장에서 정한 교통수요 예측, 주차수요예측 등 교통영향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교통개선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①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내용의 이행여부 확인을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그 이행여부 확인을 별표 9의 양식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보고서의 공정성 확보방안) ①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는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는 사업시행에 따라 교통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익을 증진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구상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그 사업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실시설계 등 구상용역을 수립한 업체는 해당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보고서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DB시스템 등록 등) ① 사업자는 DB시스템에 심의절차 단계별 추진현황 및 그 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에 대한 자료 등록이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0호 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승인관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기관(부서) 담당자는 최종 심의 완료 후 사업자 등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 최종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에는 자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료가 허위 또는 거짓 등으로 조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자료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때에는 21일 이내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승인관청은 제4항의 적정성 검토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부적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자료를 보완·재분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사후변경 수리 기준) ①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설물(령 제13조의2 별표1 제2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내용이나 그 유지·관리·운영방법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승인관청은 다음 기준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1. 기존 교통시설의 노후 등으로 전면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기존 교통시설의 설계불량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3. 당초 계획된 주차시설의 규모가 실제 운영결과 과다하여 축소 또는 조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게 되어 교통시설을 새로운 용도시설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주차장 이동 동선이 불량하여 일부 주차면적을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6. 기존 시설물의 증축 등으로 새로운 시설과 연계하여 교통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7. 준공 후 사회적 변화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교통시설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8. 출입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인하여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9. 보행전용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변경으로 인하여 보행환경에 불편이 크지 않을 것
10.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묘지관련시설 등 교통유발이 적은 시설로서 변경 내용으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1. 소속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등 2인 이상 관련 전문가의 자문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공동주택 등 당해 시설물의 입주자 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주변 교통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3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 고시 「교통영향평가 지침」이 재검토 되어 고시되는 시점마다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02. 8. 20〉

이 작성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7. 00. 0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고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협의·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보고서는 이 지침에 따라서 작성 중인 보고서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내용과 다른 그간의 지침 및 지시내용은 이 지침 시행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내용 항목(제4조 제1항 관련)

1. 서 론

가. 사업의 개요

나. 교통영향평가 사유 및 시기의 적정성

다. 교통영향평가 범위(시간적·공간적 범위 및 중점분석 항목)

라. 교통영향평가 결과 요약

(1) 중점분석 항목별 분석결과

(2) 교통영향분석 및 문제점

(3) 종합개선안

2. 교통환경조사 분석

가.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현황

나. 토지이용현황·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개발 계획

다. 교통시설의 설치계획 및 교통관련 계획

3.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가. 사업 미시행 시 수요예측

나. 사업시행 시 수요예측

다. 주차수요예측

4.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 경우 대상 사업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건 축 물	일반 개발사업	도로사업	철도 건설사업
가. 주변가로 및 교차로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나. 진출입 동선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다. 대중교통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라. 보행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마. 자전거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바. 주차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사. 교통안전 및 기타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아.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 개선(수립 대상 사업 범위의 10배 이상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한다)	가. 사업지구의 외부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나. 사업지구의 내부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다. 대중교통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라. 보행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마. 자전거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바. 주차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사. 교통안전 및 기타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가. 진출입지점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나. 진출입지점과 연결 되는 주변가로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다. 대중교통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라. 보행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마. 자전거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바. 주차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사. 교통안전 및 기타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아. 지역관리 극복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가. 정거장 내부 (외부↔대합실, 대합실↔ 승강장, 승강장, 환승역은 환승 통로, 환승시설 진·출입동선, 보행동선)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나. 정거장 외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자전거, 보행)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다. 주차 (환승주차장 동선, 화물 하역 공간 및 주정차 공간)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라. 교통안전 및 기타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마. 지역관리 극복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5. 교통개선대책안의 시행계획
 - 가. 사업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비용부담주체
 - 나.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 다. 준공 후 모니터링(해당 시)

6. 참고자료
 - 가. 교통량 조사자료
 - 나. 원단위 조사자료
 - 다. 기타 교통영향평가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

[별표 2]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의 제반 문제점 도출 및 교통개선대책수립 내용 (제4조제3항 관련)

1. 총괄

- 가. 모든 교통의 제반 문제점은 교통수요 예측결과, 상위계획 및 법령내용을 토대로 도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은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블록 내의 연결도로와 교차로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나. 사업시행 시의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교통문제점의 도출을 회피하거나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모든 교통의 제반 문제점은 관련자료, 현황조사결과, 교통수요 예측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 라. 가로소통과 교차로 상의 문제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기한다.
- (1) 분석대상 교차로의 용량산정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도로조건 : 도로의 기능구분, 차로 수, 구배, 도로폭원, 곡선반경 등
 - (나) 교통조건 : 교통량, 중차량 비율, 방향별 교통량, 시간대별 교통변화, 버스정류장 및 주·정차, 횡단보도 등
 - (다) 운영조건 : 신호주기, 현시, 연동값 등
 - (2) 서비스 수준 결정에 이용하는 효과 척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신호교차로 : 차량당 평균제어지체(초/대)
 - (나) 도시 및 교외간선도로 : 평균통행속도(km/시)
 - (3) 단속류 시설의 교통운영특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신호교차로 기하구조 특성 : 신호교차로 접근로의 차로유형, 차선폭, 구배, 좌·우회전 회전반경
 - (나) 도시 및 교외간선도로 기하구조 : 신호교차로 간격, 차선 수, 버스정류장 수, 노측가로 수
 - (4) 기타 가로소통과 교차로 상의 문제점 분석을 위해 다음 항목을 검토한다.
 - (가) 교차로 설치 간격
 - (나) 좌회전 차로 산정 방법
 - (다) 가로 상의 불법 주·정차 방지대책
 - (라) 사업 및 시설의 개발 계획 시 진·출입구 운영 방식 및 개소 수 산정기준
 - (마) 산업단지 내 내부도로 설계기준
- 마. 진·출입 동선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교통류의 적정여부와 일방통행제·가변차로제·우선통행제·수요관리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기한다.
- 바. 대중교통의 문제점은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지하철 또는 경전철 등의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문제, 개인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의 수단분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기하고, 버스정류장은 설치 유형, 설치 간격, 정차용량(길이), 전용차로 설치기준, 편의시설 설치 등을 고려하여 제기한다.
- 사. 보행의 문제점은 교통약자의 통행과 자전거통행, 오토바이통행, 차량통행과의 상충여부 등을 활동인구 장래예측과 연관시켜 제기하고, 주요 보행축, 보도 및 차도 분리기준, 이면도

로 진·출입 접속부 처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제기한다.

아.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점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현황과 미비된 곳 또는 신설이 필요한 지점별로 분석하여 사고유발 가능성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자. 교통정온화 계획은 신호기 설치기준, 비보호좌회전 설치기준, 회전교차로, 스쿨-존 설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제기한다.

차. 주차계획은 주차장 이용차량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함께 고려하며, 관광버스 수요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관광버스주차장을 고려하여 제시한다.

2. 진·출입동선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가. 진·출입 동선체계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 (1) 진·출입구의 위치와 운전자의 시거확보 여부
- (2) 최근접 가로 및 교차로와 진·출입구 간의 거리, 첨두시 진·출입 통행량 처리 가능 여부
- (3) 가로 첨두시 및 사업지구 첨두시의 진·출입 통행량과 동선체계
- (4) 진·출입구로부터 사업부지 내의 차량 대기공간과 첨두시 진·출입 통행량 간의 적정성 여부 및 가로에의 부하 정도
- (5) 진·출입구 수 및 차로 수와 유발교통량 간의 교통처리 인과관계
- (6) 진·출입구의 폭원 및 진·출입 방식과 교통처리용량 제고 정도와의 관계
- (7) 진·출입동선체계 상 운전자의 진행 목적방향별 운행 가능 여부
- (8) 주차장의 진·출입구 및 요금정산소와 진·출입구 간 거리의 적정성 여부
- (9) 사업지구의 진·출입 시 주요차량의 규모에 적합하게 최소 회전반경의 확보를 위한 가각 정리 가능 여부
- (10) 진·출입동선 상의 엇갈림 및 합류분석과 허용 가능 구간
- (11) 사업지구의 주변 이면도로와 사업지구의 진·출입동선과의 상충 여부
- (12) 진·출입구의 가·감속차로 설치 규모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하되 도시지역은 진·출입의 교통량예측에 따른 대기공간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가·감속차로 설치
- (13) 기타 지형조건 및 상위 동선체계와 부합되는지 여부

나.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광역적인 진·출입 동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1) 유효한 상위계획 상의 교통계획과 연계
- (2) 교통관련 주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계획과의 연계
- (3) 사업지구와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체계는 연계수송 및 도시순환 또는 우회기능에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구성
- (4) 광역교통망체계 구축 시 가급적 기존 교통시설의 이용효율을 제고하도록 하되 적은 투자로 대량교통처리가 가능하도록 확정된 관련 교통계획이나 진행 중인 관련 교통계획과 연계시켜 구성

3. 가로와 교차로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가. 가로와 교차로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 (1) 교차로 면적의 최소화유도
- (2) 평면교차로는 4지 이하로 구성되도록 하여 개선유도
- (3) 5지 이상 교차로에서 일부도로를 폐지하여 4지 이하로 개선하기 위하여 이면도로의 접속 위치를 교차로 외부로 변경할 경우에는 동 이면도로에 출입하는 차량이 개선하고자 하는 교차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치로 이설하는 동시에 필요한 교통통제를 검토
- (4) 일방통행, 좌회전 금지 등의 교통규제를 도입하여 교통류를 단순화하는 경우 규제대상이 되는 차량은 다른 경로를 통해 목적방향으로 운행하도록 배려
- (5) 교차로의 신호현시 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개선방안 검토
- (6) 엇갈림 교차로는 +자형 또는 T자형이 되도록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거나 교통규제 실시 및 신호현시 개선
- (7) 변칙교차로에서는 주교통의 진행방향이 명확히 되도록 도로의 선형개선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상 도로선형의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주교통방향의 교통량에 맞추어 교차로 부근의 차선 수 증가 또는 녹색신호시간의 배분을 고려
- (8) 예각교차로(X형 또는 Y형)는 교차각이 직각에 가깝게 개선하여 +자형 또는 T자형으로 하되, 교차각 개선은 원칙적으로 중도로를 대상으로 함
- (9) 교차로 유입부와 유출부의 차로수는 원칙적으로 교통량을 고려하되 가급적 다음 관계가 충족되도록 고려

$$(\text{유입부의 차로수}) \leq (\text{유출부의 차로수})$$
- (10) 대로 이상의 주간선도로가 교차로에 접속된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의 감속을 위한 우회전 차선 설치 고려
- (11) 교차로 유입부에서 좌회전 교통이 있는 경우에는 좌회전차로 설치 고려
- (12) 좌회전차로 설치로 직진차량이 우회전차로에 진입되지 않도록 다른 차로와 독립된 부가 차선으로 설치하되 좌회전 교통이 주교통류이거나 2차선 이상의 좌회전 차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방의 충분한 거리에서 차로마다 방향 표시
- (13) 좌회전 차로는 중앙선의 선형변경 및 차로폭원 축소, 중앙분리대의 삭제, 정차대의 삭제 등 최대한 도로폭원을 이용하여 설치
- (14) 교차로 내 통과차량의 파행적 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로 설치
- (15) 교차로 내에서의 주행위치 파악, 교차로 면적의 축소, 횡단보행자의 편의 도모 등과 교차로의 형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통섬 또는 도류대 설치
- (16) 교통섬은 주행궤적에 맞추되 운전자가 인식하기 쉽도록 7m²이상으로 설치
- (17) 차량정지선은 교차로 상 좌·우회전 차량의 주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주행궤적에 따라 도로중심선에 대하여 직각으로 설치
- (18) 횡단보도는 우회전차량의 대기에 따른 후속차량에의 영향, 운전자의 보행자 식별 정도, 보행자의 동선체계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하되 가급적 차도에 직각으로 설치
- (19) 2차선 도로의 추월시거 확보를 위한 선형 개량
- (20) 진행방향 추월가능 및 대향방향 추월금지 차선 표시
- (21) 교차로 교통량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신호등이나 회전차로 설치
- (22) 중차량 구성비 20% 이상, 양방향 교통량이 400대/시 이상, 추월가능구간 30% 이하일 경우 양보차로 설치여부 및 설치 길이 검토

- (23) 가로 및 교차로의 경우 가변차로, 일방통행, 능률차로, 신호연동화방안 도입 여부를 검토
- (24) 협소한 도로의 차선 재조정
- (25) 4차로 이하 도로의 경우 교통사고,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비보호 좌회전신호 운영방안 우선 검토
- (26) 횡단보행량 또는 입지여건을 고려한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검토
- (27) 교통소통과 안전을 고려하여 교차로 설치간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중 최대치를 적용하여 간선도로에서의 교차로 최소 간격을 결정한다.
- (가) 설계속도와 차로 수를 고려한 교차로 최소간격
- (나) 양측 교차로의 최대 좌회전대기차로 길이의 합계
- (다) 교차로 신호 사전인지를 위한 최소거리
- (28)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접속되는 교차로 간 최소거리는 간선도로의 설계속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 (29)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 내 도로에 대한 교차로 설계 시에는 교차로별로 좌회전 허용 여부를 명확히 계획하여야 하며,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차로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 전 · 출입만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
- (30) 수송 또는 배송화물 등에 따른 가로변 불법 주·정차 방지대책 등을 검토한다.
- (31) 전 · 출입구 개소 수 검토
- (가) 도시개발 등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단일획지당 사업지의 침두시 중방향 발생교통량이 시간당 400대 이상이거나, 주택이 800세대 이상인 경우 전 · 출입구 차로 수를 편도 2개차로 이상 설치하거나 전 · 출입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 (나) 건축 등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지의 침두시 중방향 발생교통량이 시간당 400대 이상일 경우에는 전 · 출입구 차로 수를 편도 2개 차로 이상 설치하거나, 전 · 출입구 2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 (32) 도시지역에서 좌회전 대기차로의 적정길이는 $L \geq 1.5 \times N \times S$ 까지 적용한다.
- L = 좌회전 대기차로의 길이,
- N = 좌회전 자동차 수(신호교차로에서는 침두시 1주기당 도착한 차량 수. 비신호 교차로에서는 1분당 도착한 차량 수)
- S = 대기하는 자동차의 길이
- (33) 교차로의 좌회전 차로는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을 준용하여 설치하되, 좌회전 교통량이 많은 단지 내 집 · 분산도로 이상에는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고, 좌회전 교통량이 적은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과 유·턴 등의 우회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좌회전차량의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 (34) 산업단지 개발 시 내부도로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 단지 내부도로 구분에 따라 산업단지 특성에 적합한 설계기준 자동차를 선정하여 회전반경을 결정하고, 같은 규칙 제10조의 일반도로 설계속도에 따른 차로의 최소폭을 적용한다.
- 나. 기존 교차로에 대한 개선대책은 도로용량편람에 따른 교차로의 운영분석을 하고 교통사고의 원인 · 교통체계관리대책 등을 종합 · 분석하여 제시하되 교통시설관리청이 동 대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다. 사업지구예의 전 · 출입을 위한 신설교차로에 대하여는 교통신호 등 설치여부, 기하구조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제시한다.

- (1) 신호주기당 대기차량 대수(사업지구의 진·출입 차량과 통과교통량 구분) 판단
 - (2) 교통류 진행 주방향에 적합한 횡단보도 위치 및 교통섬의 형태 적정 여부
 - (3) 방향별 차로 수가 대응이 되도록 차선배분설계 및 운영계획 제시
 - (4) 교차로 면적의 최소화 방안과 보행동선 단축방안의 상충여부 비교분석
 - (5) 도로위계의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
 - (6) 가·감속차로의 설치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되 도시지역 및 개발사업지구는 교통량 예측결과에 따른 계량적 분석을 통하여 가·감속차로를 조정·설치
 - (7) 가·감속 완화차로 및 능률차로 도입 전후 교통개선효과
- 라. 개발사업은 대상사업의 침두시 교통유발량이 진·출입구 또는 접근로와 접한 주변가로의 1개 차로 도로용량의 50%를 초과할 경우 상위계획의 조정보완 건의안을 작성할 수 있다.

4.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가.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 (1) 사업지구를 효율적인 대중교통(도시철도, 버스전용차로, 경량전철 등)망 체계로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2) 도시철도, 철도역, 버스정류장, 환승센터 주변에 교통유발이 많은 건축물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나.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 (1) 버스정류장은 교차로의 유출부 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베이 방식으로 유도
- (2) 주변 교차로와 이격정도 및 사업지구의 지형여건 등을 고려한 버스베이 설치 위치의 적정성 여부
- (3) 버스정류소의 위치변경에 따른 다른 교통수단과의 합류 및 상충 정도 비교 분석
- (4) 버스베이의 적정규모 산정은 대중교통수요가 밀집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예측하고 버스정차대 및 택시정차대 설치방안을 강구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가) 해당 사업지구와 인구 고밀도지역 또는 대량교통유발시설이 유치될 지점 간의 거리
 - (나) 해당지역 주민의 도보권 거리구간
 - (다) 개인 교통수단 대비 이용편의성 제고
 - (라)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빈도
 - (마) 기타 지형 및 교통여건
- (5) 택시베이 위치, 규모 및 택시 주·정차 공간의 적정성 검토
 - (가) 대규모 환승센터, 철도 및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대규모 유통시설 등 택시이용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또는 시설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하고, 적정규모의 택시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변도로 교통소통 및 버스정차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운행 현황
 - ② 유사시설에서의 택시 주정차 실태조사(1개소 이상 현장 조사 및 2개소 이상 관련 자료 참조 가능)

- (나) 택시의 주·정차 수요가 많아 주변도로의 교통소통 또는 버스정차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택시 승강장 이외에 별도의 장소에 택시 주·정차 공간을 마련하고, 택시가 순차적으로 승강장으로 이동하여 승객이 승차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다.
- (6) 지하철 또는 경전철 등 대중교통과의 환승시설 설치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유도
- (7) 지하철 또는 경전철 등과의 환승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대중교통 노선망 구축
- (8) 버스전용차로제 도입가능여부 검토
- (가) 대도시권역(특별시, 광역시)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
- ① 편도 3차로 이상인 도로를 대상으로 한다.
 - ②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시간당 편도 버스통행량이 50대 이상이거나, 시간당 편도 버스이용객이 1,200명 이상인 경우에 도입을 검토한다.
 - ③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시간당 편도 버스통행량이 100대 이상이거나, 시간당 편도 버스이용객이 2,000명 이상 또는 버스전용차로 도입에 따른 경제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도입을 검토한다.
- (나) 대도시권역(특별시, 광역시)을 제외한 지역은 버스전용차로 도입에 따른 타당성이 확보되거나, 당해 지역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당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도입을 검토한다.
- (9) 기존 버스정류장의 유무 및 해당 사업지구의 전·후 버스정류장과의 최소 간격
- (가) 도시형 버스정류장은 400미터 이상 이격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 (나) 마을버스는 도시형 버스정류장과 공동이용을 권장하며, 교통량이 적은 집·분산도로에서 별도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노면정류장 설치를 권장한다.
- (10) 노선버스의 운행회수, 본선 차로 수, 이용인구 수
- (11) 도로의 기능, 교통체계, 토지이용 여건에 따라 버스정류장 위치 또는 형식을 결정한다.
- (가) 버스정류장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종 류	평면도
① 버스분리 정류장	
② 버스베이 정류장	
③ 버스확장 정류장	
④ 버스돌출 정류장	
⑤ 버스노면 정류장	

- (나) 버스정류장은 유효보도폭, 완충녹지 또는 자전거도로 등이 가능한 한 잠식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다) 도로 등급에 따라 버스정류장의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왕복6차로 이상)는 버스베이정류장 설치를 검토하되, 버스정차로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본선의 서비스 수준이 “C” 이하로 양호한 경우에는 버스베이정류장 설치를 지양한다. 다만, 교차로와 근접(75미터 이내)하여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가능한 버스베이정류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 ②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왕복4차로 이하)는 버스베이정류장 설치를 지양하고, 버스정차로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본선 서비스수준이 “D” 이상으로 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버스베이정류장을 설치한다.
- (12) 버스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정류장 편의시설(쉼터) 설치를 권장하며, 쉼터 설치 폭을 제외한 보도 유효폭은 2미터(불가피한 경우 1.5미터) 이상 되도록 계획한다.
- (13) 환승시설의 검토는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5. 보행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가. 보행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 (1) 가로 및 교차로의 보도, 차도 분리 여부
- (2)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개설 필요 여부
- (3) 교통광장설치 필요 여부
- (4) 보행동선체계 구축 필요 여부
- (5) 필요한 유효보도폭원 확보 여부
- (6) 보행자신호(보행자 작동 신호기 포함) 설치 필요 여부
- (7) 도로횡단시설의 설치필요 및 적정 시설 여부 :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 등
- (8) 기존 횡단시설 유무 및 전후 횡단시설과의 관계
- (9) 보행계획은 보행권역, 보행통로, 통행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10) 보도의 설계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및 서울시의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1) 이면도로 진·출입 접속지점은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진·출입 통행량에 따른 진·출입로 유형 및 접속부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진·출입로 유형	왕복 차로 수	이면도로 (진·출입로) 폭원	경계선 곡선반경	접속부 처리	비 고
A	3 이상	15m 이상	6 ~ 12m	차도 포장	도류화(마킹), 보행신호
B	2 ~ 3	9m ~ 15m	3 ~ 6m	보 도	고원식 횡단보도
C	2	7m ~ 9m	3 ~ 6m	보 도	고원식 횡단보도

* 진·출입로 유형별 차량통행 대수

- A형 : 중방향 교통량 시간당 400대 이상
- B형 : 시간당 100~400대

- C형 : 시간당 100대 이하

- (12) 생활권 이면도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계획 시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보행자 안전 및 교통복지 환경개선을 위해 교통정온화 방안을 적극 활용한다.
- (13) 횡단보도의 설치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4) 교통약자를 고려한 개선방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15) 장애활동인구를 감안하여 사업지와 주변의 보도폭, 보행동선 등 보행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한다.
- (16) 사업지와 사업지 주변 집산도로 이하에 대하여 속도제한^㉔을 검토하고 속도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17) 주차장 내부 및 대형보행유발시설, 환승시설의 경우 건축물 내부의 보행동선 제공여부 및 문제점을 조사한다.
- (18) 보행동선체계는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보행동선을 포함한다.
- (19) 보도 및 공개공지에 불법주차, 시설물 설치를 금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6. 자전거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가. 자전거 교통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1) 자전거도로 개설 필요 여부
- (2) 자전거동선체계 구축 필요 여부
- (3) 자전거도로 유효폭원 확보 여부
- (4) 자전거신호등 설치 필요 여부
- (5) 자전거 횡단시설(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 등)의 설치 필요 및 적정 시설 여부
- (6) 자전거 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 필요 여부
- (7) 환승센터(철도 정거장, 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보관소 설치
- (8) 자전거 도로망 계획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9)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한다.
 - (가) 자전거 전용도로
 - (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다) 자전거 전용차로
- (10) 자전거 주차장 설치
 - (가) 자전거 주차방식, 사업부지의 형상과 면적, 계획주차대수, 주출입구와 대중교통 정류장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나) 자전거 정비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검토한다.
 - (다) 일반인의 관측이 용이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조명시설과 자전거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 (라) 대중교통 역사, 환승센터 등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거장 외부출입구 가까운 곳에 설치를 권장하며, 가능한 출입구로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도록 한다.

7. 교통안전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가. 교통안전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1)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사고원인별 개선대책의 강구

- (가) 교통조건에 부적합한 도로구조 : 차로폭의 재조정, 노면표시 설치 또는 개량, 오르막차로 설치, 중앙분리대 설치, 노상주차 등의 장애요인 제거, 도로 정보판 설치 등
- (나) 선형불량 : 노면시설에 따른 선형표시, 곡선부 예고표지 설치, 시선유도표지 설치, 도로의 재설계 등
- (다) 시거불량 : 장애물 제거, 예고표지 설치, 시선유도표지 설치 등
- (라) 노면의 미끄러움 : 노면 재포장, 미끄럼방지 포장, 배수시설의 재조정, 미끄럼주의표지 설치 등
- (마) 안전시설의 미비 : 가드레일, 방호책, 안전지대 등 안전시설 설치 또는 보완 등
- (바)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시설 또는 보행자 편의시설 : 횡단보도위치의 재조정 또는 개량, 횡단보도 노면표시 신설 또는 개량, 보행자 안전지대 설치, 입체횡단시설의 설치 또는 위치 조정 등
- (사) 야간사고 : 시선유도표지 설치 또는 개량, 가로조명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 (아) 기타원인 : 버스정차대 위치 및 규모 조정, 철도 건널목의 입체교차시설 설치, 도로부속 구조물의 위치 및 규모 조정 등

(2) 도로 평면선형의 안전성 : 곡선반경, 곡선길이, 곡선부 편구배와 확폭, 완화구간, 시거, 반사경 설치 등

(3) 도로 종단선형의 안전성 : 구배, 구배길이, 시거

(4) 도로횡단면의 안전성 : 차로폭, 횡단구배, 부가차선, 길어깨 폭, 중앙분리대폭 등

(5) 교차로부의 안전성 : 최소시거, 회전차로 또는 변속차로의 변이구간 적정성 등

(6) 기타 안전대책 : 도로안전표지, 교통신호기 유무, 조명시설 밝기정도에 따른 안전성 여부 검토 등

8. 교통정온화 대책

가. 교통정온화 대책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신호기 설치

- (가) 신호교차로 설치는 경찰청의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 (나) 신호교차로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정온화기법이 요구되는 교차로는 회전교차로를 검토하되, 무신호교차로로 운영하는 방안과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 (다) 점멸신호등 운영 시에는 안전성과 시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비보호 좌회전 설치기준

- (가) 녹색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나) 비보호 좌회전 운영 시 좌회전 차량의 대기를 위한 좌회전 전용차로를 설치한다.

(3) 회전교차로 설치기준

- (가) 교통량이 적은 지점 등은 회전교차로 설치를 권장하며 신호대기 시간을 단축시키고,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 (나) 다음과 같은 교차로에서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검토한다.

- ① 교차로 접근속도를 감속하는 등 교통정온화가 요구되는 교차로
 - ② 좌회전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 ③ 원활한 유·턴이 요구되는 교차로
 - ④ 비신호 교차로로 운영 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
- (4) 스쿨-존 설정기준
- (가)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 정구간에 설정하며, 스쿨-존 권역 내에는 집산도로 이하의 가로망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나) 스쿨-존 내부도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차량들이 주행하는 소로로 구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고속의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에 스쿨-존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속도변이구간 등 통행속도 감속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주차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가. 주차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1) 개인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을 연결시키는 환승주차장 필요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입·출고 시 최소·최대·평균 소요 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확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3) 기계식주차장에는 제(2)호에 따라서 산정한 최대입고 시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기주차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장애인 주차공간은 지상층의 사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5) 사업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정산소의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 정산소는 침두시 교통량을 기준으로 최근접 교차로의 교통신호의 한 주기에 해당하는 대기차량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구로부터 대기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 (6) 주차관제 및 주차정보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교통편 의 제공을 위해 공공에 실시간 주차가능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차정보 연계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며 공공의 표준연계 송수신 규격에 따른다.)
- (7) 사업자가 건축물의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지상에 적정규모의 셔틀버스 주·정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8) 사업자가 단체 관광객으로 인한 관광버스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적정규모의 관광버스 주·정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9) 사업자가 건축물의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지상에 적정규모의 셔틀버스 주·정차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10) 노외주차장의 진·출입동선체계는 각 노외주차장별로 사업지구 내 가로 및 교차로의 배치상태를 고려하여 이를 구축하여야 한다.
- (11)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가) 부속 주차시설에의 진·출입 램프 대기공간 확보 여부
 - (나) 주차램프의 적정구배 여부
 - (다) 진·출입 차량크기를 감안한 최소회전반경, 적정 램프폭원 확보 여부

- (라) 주차공간 내에서의 적정 시거 및 동선체계 구축 여부
- (12)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지상부는 보행 및 자전거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 (13) 지하주차장 램프 설치 시 경사로의 차로너비는 연석을 포함하여 직선구간 3.3미터(2차로의 경우 6미터) 이상, 곡선구간 3.6미터(2차로의 경우 6.5미터) 이상 확보한다.
- (14) 주차장 출입구 개수는 주차장 침두시 이용차량의 중방향 교통량이 400대 이상일 경우 출·입구 차로 수를 각각 2개 차로 이상 설치를 검토하고, 램프와 인접하여 주차요금 징수 시에는 램프차로에 대기행렬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 출입구 또는 램프를 계획한다.
- (15) 지하주차장 램프 구간에는 지붕, 차단막, 캐노피 등을 설치하여 눈과 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여야 한다.
- (16) 조업차량이 유발되는 판매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기타 근린생활시설 등에는 조업주차면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시 서울시의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조업주차면 설치위치
 - (나) 조업주차면 적정 설치규모
 - (다) 조업주차 진·출입을 감안한 최소회전반경 크기
 - (라) 조업주차 진·출입을 감안한 최소 통과높이
 - (마) 조업주차 진·출입을 감안한 램프 폭원
- (17) 광역시 등 대도시 권역의 경우의 계획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의 1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하는 것을 권장하며, 그 이외의 지역의 계획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만, 권장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건축물이 아닌 지구별 주차수요는 건축물 건축 시 주차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별표 3]

대상사업별 중점 분석 항목(제4조제3항 관련)

1.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사업
 - 가. 사업지구의 가로와 교차로에 대한 용량의 적정성 여부
 - 나. 사업지구의 내부도로 교차지점에 대한 도로위계의 적정성 여부 및 교차방식의 적정성 여부
 - 다. 사업지구의 내부도로와 외부도로 간 연결 적정성 및 유발 교통량과 통과 교통량의 처리문제의 적정성 여부
 - 라. 사업지구의 내부 통행거리 및 통행수요 적정성 여부
 - 마. 대중교통수단 및 도시철도·경전철 등 신교통수단 도입 필요성 여부 및 운영 가능성 여부
 - 바. 도시 성장 가능성 및 개발 잠재력, 지형조건 등을 고려한 광역교통망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되 해당 사업의 중장기 목표년도의 예측 교통량 수용 여부 포함
 - 사. 각종 교통개선대책의 적용 및 응용한계의 설정
 - 아. 상가,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등과 연결되는 차량 진입·출입구의 위치, 단지 내 연결 또는 내부도로의 폭원, 블럭별 필요주차규모,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의 연결 형태 등 향후 소블럭별 개발 시 적용될 교통개선대책의 지침 설정
 - 자. 유발교통량의 분산처리를 위한 연결도로의 신설여부
 - 차. 사업지구의 주변 이해관계인의 교통장애요인 발생 여부 분석 등
2. 지구단위계획, 대지조성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주변 공간계획이 비교적 구체화된 중간규모 블록단위사업
 - 가. 각 블럭별 차량의 진입·출입허용구간 분석 및 가·감속 완화차로 설치 적정성 여부
 - 나. 사업지구의 외부에 있는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 다. 사업지구의 공공 노외주차장의 규모, 배치위치, 진입·출입방식의 적정성 여부
 - 라. 사업지구의 보행공간 및 보행동선체계 구축의 적정성 여부
 - 마. 사업지구의 이면도로 활용의 적정성 여부
 - 바.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와 인접하는 교차로의 교통처리방식의 적정성 여부
 - 사.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시설 설치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
 - 아.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위치의 적정성 여부
 - 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상의 교통계획이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상충되는지 여부
 - 차. 유발 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한 진입·출입구 또는 연결도로의 개설 여부
 - 카. 사업지구의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장애요인 발생 여부에 관한 분석 등
3. 도시철도, 철도, 고속철도 등 건설사업
 - 가. 수송계획상 교통수요예측의 적정성, 이용인구의 행태분석, 화물이동 유형 분석
 - 나. 대합실, 통로, 보도, 차도 등을 포함한 해당 시설의 이용가능인구 처리능력 한계분석, 수송수단 운영계획 검토
 - 다. 상·하역시설, 차량의 대기공간, 부지 내 통로 등을 포함한 해당 시설의 화물처리능력 한

계분석, 수송수단운영계획 검토

- 라. 다른 교통수단과의 교통수요 역할 분담 및 연계수송처리 방안 강구
- 마. 주변도로에의 교통패턴 변화분석
- 바. 해당 사업의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분리 극복방안의 강구
- 사. 해당 사업의 건설에 따라 주변 교통시설 및 다른 교통수단에 미치는 교통수요의 변화 분석
- 아. 해당 사업의 건설에 필요한 연결 및 인입도로의 개설 필요성
- 자. 필요한 적정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위치의 적정성 여부
- 차. 사업지구의 주변 교통장애요인의 발생 여부에 관한 분석 등

4. 도로건설사업

- 가. 수송계획상 교통수요예측의 적정성, 이용인구의 행태분석, 화물이동 유형 분석
- 나. 보도, 차도 등을 포함한 해당 시설의 이용가능인구 처리능력 한계 분석
- 다. 다른 교통수단과의 교통수요 역할 분담 및 연계수송처리 방안의 강구
- 라. 주변도로에의 교통패턴 변화분석
- 마. 해당 사업의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분리 극복방안의 강구
- 바. 해당 사업의 건설에 따라 주변 교통시설 및 다른 교통수단에 미치는 교통수요의 변화 분석
- 사. 해당 사업의 건설에 필요한 연결 및 인입도로의 개설 필요성
- 아. 필요한 적정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위치의 적정성 여부
- 자. 사업지구의 주변 교통장애요인의 발생 여부에 관한 분석 등

5. 터미널, 항만, 공항 등 건설사업

- 가. 수송계획상 교통수요예측의 적정성, 이용인구의 행태분석, 화물이동 유형 분석
- 나. 대합실, 통로, 보도, 차도 등을 포함한 해당 시설의 이용가능 인구 처리능력 한계분석, 수송수단운영계획 검토
- 다. 상·하역시설, 차량 대기공간, 부지 내 통로 등을 포함한 해당 시설의 화물처리능력 한계 분석, 수송수단운영계획 검토
- 라. 다른 교통수단과의 교통수요 역할 분담 및 연계수송처리 방안의 강구
- 마. 주변도로에의 교통패턴 변화분석
- 바. 해당 사업의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분리 극복방안의 강구
- 사. 해당 사업의 건설에 따라 주변 교통시설 및 다른 교통수단에 미치는 교통수요의 변화 분석
- 아. 해당 사업의 건설에 필요한 연결 및 인입도로의 개설 필요성
- 자. 필요한 적정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위치의 적정성 여부
- 차. 사업지구의 주변 교통장애요인의 발생 여부에 관한 분석 등

6. 업무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종교시설, 학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자동차시설, 통신시설 등 개별 건축물

- 가. 사업지구 주변가로의 교통상황에 대비한 진·출입구의 위치 적정 여부
- 나. 침두시 유발교통량의 처리를 위한 완화차로의 규모 적정성 여부
- 다. 진·출입교통량의 분산처리를 위한 진·출입구 수의 적정성 여부

- 라. 개별 건축물의 용도 복합정도에 따른 교통유발 원단위의 가중 또는 보정 여부
- 마. 사업지구 주변가로의 통행패턴 분석 및 사업지구의 유발교통량 간 상충방지를 위한 진·출입동선체계 구축
- 바. 주변가로와 교차로의 교통처리 한계능력의 분석
- 사. 적정 주차규모의 판단과 합리적인 주차장의 형태 제안
- 아. 사업지구의 주변 교통장애요인의 발생 여부에 관한 분석 등
- 자. 이용자(인구)의 교통이용 유형 및 행태 분석
- 차.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의 상충분석
- 카. 보행동선 연속성 판단과 합리적인 동선체계 제안
- 타. 자전거도로의 설치 가능여부 검토
- 파. 관광버스 주·정차공간을 확보여부 검토

[별표 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 범위 (제29조제1항)

1. 건축물

항목		변경허용 인정범위	기타
가. 가 로 (街 路)	도로 신설	- 연장 또는 10%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차로당 30cm 이하 축소	- 교차지점 신설 시 및 차로수의 축소 시는 제외 - 다만, 최소 차로폭 3.0m 이상 유지(좌회전 2.75m 이상) - 도로의 부속시설 및 입체교차 시설은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변경 가능
	도로 확폭	- 연장 또는 길이의 10%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교차로의 운 영	- 차로폭 10% 이하 축소 - 가각의 회전반경 5% 이하 축소 - 좌회전포켓 연장 또는 10% 이하 축소	- 다만, 최소 차로폭 3.0m 이상 유지(좌회전 2.75m 이상) - 좌회전 또는 우회전 전용차로의 폐지 불가 - U-Turn, P-Turn체계변화 불가 (다만, 사업지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신호등은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진 출 입 동 선	진·출입구	- 위 치 : 10m 이하 변경 - 폭 원 : 10% 이하 축소 또는 25 % 이하 확폭 - 가각부 : 5% 이하 축소	- 다만, 교차로 가각부축으로 변경 불가 - 십자교차로의 위치 변경의 경우 제외
	진·출입로 (진·출입구~주차 장 간 연결로)	- 위 치 : 10m 이하 변경 - 폭 원 : 10% 이하 축소 - 가각부 : 5% 이하 축소	
	진·출입 동선체계		- 통행체계 변경 불가(일방↔양방, 방향전환 등)
	완화차로	- 길이 : 10% 이하 축소 - 폭원 : 10% 이하 축소	- 위치 변경 불가
다. 주 차 장	주차면수 (면 적) 추 가	- 심의·의결대수의 10% 이하 증가	- 다만, 규모 증가 비율 적용 가능
	주차면수 (면 적) 제 거	- 심의·의결대수의 5% 이하	- 다만, 규모 감소 비율 또는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법정주차대수 감소인 경우 제거 가능
	주차동선	- 주차통로폭 : 5% 이하 축소 - 주차통로위치 : 10m 이하 변경 - 회전반경 : 5% 이하 축소	- 다만, 주차장법상 최소 통로폭 이상 - 진·출입구 추가 설치 불가 - 통행체계 : 변경 불가(진·출입동선체계와 동일) - 종단구배 : 주차장법 범위 내 변경 가능
	램프 설치		- 램프회전방향 변경 불가 - 램프형태 변경 불가(직선→원형) - 다만, 램프끝단에서 5m 이내는 변경 가능 - 램프 진·출입방향 변경 불가
	기계식 및 자주식 비율	- 자주식 비율증대 또는 10% 이하 축소	

항목		변경허용 인정범위	기타
라.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설치	- 길이(Taper포함) : 10% 이하 축소 - 폭(Taper포함) : 10% 이하 축소 - 위치(Taper포함) : 20m 이하 변경	- 다만, 가감속 완화구간 내에 중복설치 불가하되 각각 최소길이 이상 확보 시 제외 - Set-Back 시는 기존 보도 폭 유지 - 위치는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택시정류장 설치		
마. 보행 및 자전거도로	보도 설치	- 연장 또는 길이의 10%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 위치 : 20m 이하 변경	- 위치 변경 불가
	보도 확폭		
	보행동선체계		- 단절 불가
	횡단보도 신설	- 폭원 : 10% 이하 축소 - 위치 : 20m 이하 변경	-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의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자전거도로 설치	- 연장 또는 길이의 10%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 위치 : 20m 이하 변경	-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바. 안전	자전거 보관소 설치	- 계획면수의 10% 이하 축소	- 위치 변경 가능
	과속방지턱 시설	- 연장 또는 길이의 10% 이하 축소	- 심의 시 부여된 시설의 설치의무 변경 불가(단,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은 가능) - 각종 교통안내 및 교통안전시설은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미끄럼방지 시설		
	각종안내판 시설		
	각종경고등 설치		
	노면마킹, 표지병		
	기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2. 개발사업

항목		변경허용 인정범위	기타
가. 가 로 (街 路)	도로 신설	- 연장 또는 15%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차로당 30Cm 이하 축소	- 교차지점신설 및 차로수의 축소 시는 제외 - 다만, 최소 차로폭 3.0m 이상 유지(좌회전 2.75m 이상)
	도로 확폭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 도로의 부속시설 및 입체교차 시설은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변경 가능
	교차로의 운영	- 차로폭 15% 이하 축소 - 각각의 회전반경 5% 이하 축소 - 좌회전포켓 연장 또는 15% 이하 축소	- 다만, 최소 차로폭 3.0m 이상 유지(좌회전 2.75m 이상) - 좌회전 또는 우회전 전용차로의 폐지 불가 - U-Turn, P-Turn체계변화 불가 (다만, 사업지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신호등은 관찰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진 출 입 동 선	진·출입구	- 위 치 : 30m 이하 변경 - 폭 원 : 20% 이하 축소 또는 25% 이하 확폭 - 각각부 : 5%이하 축소	- 다만, 교차로 각각부측으로 변경 불가 - 십자교차로의 위치 변경의 경우 제외 - 중로2류 이하의 가로에 접한 공동주택 진·출입구는 제외
	진·출입로 (진·출입구~주차장 간 연결로)	- 위 치 : 30m 이하 변경 - 폭 원 : 15% 이하 축소 - 각각부 : 5% 이하 축소	
	진·출입 동선체계		- 통행체계 변경 불가(일방↔양방, 방향전환 등)
	완화차로	- 길이 : 15% 이하 축소 - 폭원 : 15% 이하 축소	- 위치 변경 불가 - 다만, 진·출입구 위치 변경의 경우 제외
다. 주 차 장	주차면수 (면 적) 추가	- 심의·의결대수의 15% 이하 증가	- 다만, 규모증가비율 적용 가능
	주차면수 (면 적) 제거	- 심의·의결대수의 5% 이하	- 다만, 규모감소비율 또는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등에 따른 법정주차대수 감소인 경우 제거 가능
	주차동선	- 주차통로폭 : 5% 이하 축소 - 주차통로위치 : 10m 이하 변경 - 회전반경 : 5% 이하 축소	- 다만, 주차장법상 최소 통로폭 이상 - 진·출입구 추가설치 불가 - 통행체계 : 변경불가(진·출입동선체계와 동일) - 종단구배 : 주차장법 범위 내 변경 가능 - 램프회전방향 변경 불가 - 램프형태 변경 불가(직선→원형) 다만, 램프끝단에서 5m이내는 변경 가능 - 램프 진·출입방향 변경불가
	램프 설치		
	기계식 및 자주식 비율	- 자주식 비율증대 또는 10% 이하 축소	

항목		변경허용 인정범위	기타
라.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설치	- 길이(Taper포함) : 15% 이하 축소 - 폭(Taper포함) : 15% 이하 축소 - 위치(Taper포함) : 30m 이하 변경	- 다만, 가감속 완화구간 내에 중복 설치 불가하 되 각각 최소 길이 이상 확보 시 제외 - Set-Back 시는 기존 보도폭 유지 - 위치는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택시정류장 설치		
마. 보행 및 자전 거 도 로	보도 설치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15% 이하 축소 - 위치 : 30m 이하 변경	- 위치 변경 불가 - 다만, 기존 보행동선체계의 단절이 없고 동일폭 원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보도 확폭		
	보행동선체계		- 단절 불가
	횡단보도 신설	- 폭원 : 10% 이하 축소 - 위치 : 30m 이하 변경	-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 설에 한함 - 횡단보도, 신호등은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 라 변경 가능
	자전거도로 설치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15% 이하 축소 - 위치 : 30m 이하 변경	-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 설에 한함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바. 안 전	자전거 보관소 설치	- 계획면수의 10% 이하 축소	- 위치 변경 가능
	과속방지턱 시설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 심의 시 부여된 시설의 설치의무 변경 불가 - 각종 교통안내 및 교통안전시설은 관할관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미끄럼방지 시설		
	각종안내판 시설		
	각종경고등 설치		
	노면마킹, 표지병		
	기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별표 5]

변경심의 보고서 작성(제30조제1항 관련)

1. 최초심의 심의결과 요약

가. 사업의 개요

나. 교통영향평가 내용

다. 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종합개선안

라. 사업자, 평가대행자, 심의기관 등

2. 변경심의 사유(내용항목별로 작성한다)

3. 변경심의를 따른 교통개선대책(안)(내용항목별로 작성한다)

4.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 및 구체적인 개선효과

[별표 6]

변경신고 보고서 작성(제30조제1항 관련)

1. 최초 심의결과 요약

가. 사업의 개요

나. 교통영향평가 내용

다. 사업자, 평가대행자, 심의기관 등

2. 변경신고 사유 및 근거(내용별 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변경신고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내용

4. 참고자료(필요 시 첨부)

[별표 7]

교통개선대책 시행효과(계량화 부분)분석 지표
(제19조제2항, 제20조4항 관련)

1. 연간 시간 절감효과 = $\sum_{i=1}^{24} (\text{교통량}i \times \text{지체 개선분}i) \times 365\text{일} \times 1\text{대당 통행시간 가치}$
(원)
2. 연간 CO2 배출 저감효과 = 배출계수(g/km) × 연간 주행거리(km) × 1톤당 탄소 잠재가격(원)
3. 1대당 통행시간 가치, 배출계수 및 탄소 잠재가격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공표한 가장 최근 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 비 고

- i = 1시간
- 지체 개선량(hr) : 개선대책 시행으로 인해 개선되는 시간별 1대당 지체시간 개선량(hour)
- 1대당 통행시간 가치(원) : 통행 목적별 1인당 통행시간 가치에 탑승인원을 곱하여 계산한 1대당 통행시간 가치
- 배출계수(g/km) : 차종별 · 속도별 1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gram)
- 연간 주행거리(km) : 개선안 시행으로 인해 감소되는 연간 차량 주행거리의 합계
- 1톤당 탄소 잠재가격(원) : 이산화탄소 1톤의 한계감축비용*
- * 이산화탄소(CO2) 1톤을 추가로 감축시키는 데 필요한 총비용의 증가분

[별표 8]

교통개선대책 시행효과(비계량화 부분)점검표(제19조제3항 관련)

교통개선대책 항목		검토기준	검토기준의 적정 여부에 대한 평가의견
대중교통 및 BRT	버스베이 설치	○ 버스노선 수, 도착대수에 따른 공간 확보 정도 평가 ○ 택시이용자의 이동권 확보가 편리한 위치 설치 여부 평가 ○ Shelter 설치 여부 평가 ○ BIS 설치 여부 평가 ○ 버스이용자의 정류장 접근성 및 편의성 확보 정도 평가 ○ 통과교통 흐름에 지장 여부를 고려하여 설치 여부 평가	
	택시베이 설치		
	정류장 편의시설(셸터 등) 설치		
	버스정류장 이전		
	대중교통 노선조정/추가 건의		
보행자 및 자전거	환승시설	○ 환승수단 간 이용 편의를 위한 안내판 설치 여부 평가	
	보도 신설(유효폭 확보)	○ 보행량 및 동선 연계에 따른 설치 여부 평가 ○ 보행량 및 노상시설을 고려한 폭원 확보 정도 평가 ○ 보행동선의 단절 없이 설치 여부 평가 ○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보행축 확보 정도 평가	
	보도 확폭		
	보행동선 조정		
	보행축 확보(지구단위계획)		
	육교/지하보도 설치	○ 교통량과 보행량을 고려한 입체시설 설치 여부 평가	
	자전거 횡단로 설치	○ 자전거 동선의 연계를 고려한 자전거 횡단로 설치 여부 평가 ○ 자전거 통행량에 따른 설치 여부 평가 ○ 자전거 주차대 수를 고려한 자전거 보관소 공간 확보 정도 평가 ○ 이용의 안전성 및 쾌적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평가 ○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 연계 및 안전성 확보 정도 평가 ○ 보행 및 자전거 동선의 연계 및 안전성 확보 정도 평가 ○ 설치기준의 적정 여부 평가	
	자전거도로 설치(유효폭 확보)		
	자전거 보관소 설치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공기주입기, 샤워시설 등)		

교통개선대책 항목	검토기준	검토기준의 적정 여부에 대한 평가의견
자전거 신호등 설치		
자전거도로 및 보행동선체계 연계성		
교통약자의 편의시설물 설치 (점자블럭, 음향신호기, 보도턱 낮춤 등)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 전기자동차 이용의 편의성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 정도 평가	
첨단 주차안내시스템 설치	○ 주차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PIS 설치 여부 평가	
반시경 설치	○ 시계를 고려한 설치 위치 평가	
조업주차공간 확보	○ 조업주차 설치 위치 및 공간의 확보 정도 평가	
램프 진·출입부 평탄부 확보	○ 대기차량 대수를 고려한 평탄부 확보 정도 평가	
회차공간 확보	○ 회차공간의 설치 위치 평가	
자주식 주차비율	○ 주차장 운영방식을 고려한 자주식 주차 비율 확보 정도 평가	
장애인, 경차, 확장형 주차, 화물주차, 버스주차장 확보	○ 해당 시설 이용 차량의 주차공간 및 설치 비율의 적정성 평가	
주차장 이용정보의 공공제공 (교통센터, 인터넷 등)	○ 정보 제공을 위한 주차정보센터의 설치 여부 평가 ○ 주차 이용 편의를 위한 공공에 주차정보 · 제공여부 평가	
주차장 지하화-지상부 open-space 확보	○ 폐적성을 위해 주차장 지하화 및 open-space 확보 여부 평가	
주차 차량 동선과 보행 및 자전거 교통과 상충 분리	○ 주차 동선의 상충 분리 정도 평가	

교통개선대책 항목	검토기준	검토기준의 적정 여부에 대한 평가의견
교통안전	장애이전용 주차구역	○ 장애이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확보 비율 평가 ○ 장애이전용 주차구역의 위치 및 크기 평가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장애이전용 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및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보행안전통로의 폭원 및 연계 정도 평가
	점자블록	○ 접근로의 보행장애물 제거 여부 평가
	보도턱 낮춤	○ 설치 위치 및 통행방향 유도 연속성 여부 평가 ○ 설치 위치 및 연속성 여부 평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통신호기	○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설치 형태 여부 평가
	안전펜스/방호벽 설치	
	안전표지판 설치	
	과속방지턱(Hump) 설치	
	충격흡수시설 설치	
	델리네이터/표지병 설치	
	블라드 설치	○ 설치 기준의 적정 여부 평가
	규제봉 설치	
	도로반사경 설치	
	미끄럼 방지포장/Rumble Strip	
	교원식 교차로 설치	
	중앙분리대 설치	
	교통신호기 설치	○ 신호기 설치 기준의 적정 여부 평가
	횡단보도 설치	○ 보행자 동선 확보 여부 평가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 횡단보도행자의 안전성 확보 여부 평가
	기타	○ 기타 시설의 설치 적정 여부 평가

[별표 9]

교통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보고서 작성(제31조제2항 관련)

1. 사업개요
 - 가. 사업지구 위치
 - 나. 사업개요(단계별 교통개선대책 변경내용 포함한다.)
2.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 사항
 - 가. 심의결과
 - 나. 최종 종합개선안(외부 및 내부 교통개선대책 내용)
 - 다. 주차장 개선안
3. 교통개선대책 이행여부 확인 사항
 - 가. 이행여부 확인사항(총괄표)
 - 나. 이행사항 확인사항(교통개선대책 항목별)
4. 참고자료

[별표 10]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등의 비공개 요청서(제33조제1항 관련)

1. 사 업 명 :

2. 비공개요청 대상

보고서 (최초, 변경 ○차)	사전검토 보완서	심의의결 보완서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

3. 비공개 요청 사유 및 범위

구 분	내 용	비 고
비공개 사유		
비공개 범위	○ 전부 비공개 () ○ 일부 비공개 () - 비공개 대상범위 :	

년 월 일

승인관청 (인)
사 업 자 (인)

(주) 작성방법

1. “사업명”은 보고서에 제시한 사업명을 기재
2. “비공개요청 대상”란은 비공개하고자 하는 보고서에 “○”표시
3. “비공개 요청 사유”는 해당 사업의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4. “비공개 요청범위”란은 해당 부분에 “○”표 하고, 일부 비공개의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

[별표 11]

교통영향평가서 표지양식(제24조 제1항 관련)

1. 보고서의 표지에 기재하는 접수번호, 관리번호, 사업명, 심의종류, 심의진행여부, 연도·월, 평가기관명, 평가책임자, 사업자명은 전면 및 측면에 기재한다.

가. 심의종류 : 신규(생략가능), 변경(변경횟수 포함하여 기재), 약식

나. 심의진행여부

- 본보고서 : 최초접수
- 사전검토 보완서 : 사전검토의견 있을 시 보완후 제출한 보고서
- 심의의결보완서 : 원안의결, 수정의결에 따른 심의결과 보고서
- 보완심의 보고서(횟수) : 심의결과가 보완일 경우 재심의를 위한 보고서

다. 평가책임자 : 평가책임자가 여러 명일 경우 총괄책임자 표시

2. 보고서의 표지색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본보고서 : 최초 - 파란색, 변경 - 녹색

나. 사전검토보완서, 보완심의보고서 : 흰색

다. 심의의결보완서 : 주황색

※ 참고	<측면표시>		<전면표시>	
	접수번호		접수번호	사업명 교통영향평가(심의정류)
	관리번호		관리번호	
	사업명			
	심의 진행여부		<심의진행여부>	
	연도, 월		연도, 월	
	사업자명		평가기관 : ○○○	
			평가책임자 : ○○○	
			사업자명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별지 제1 호서식]

교통영향평가 분석표(제22조제5항 관련)

1) 개요

연 도	평가업체 및 책임자
사 업 명	
분석년도	기 준
	단 기
	장 기

2) 교통수요예측

① 활동인구 분석

영도 구분	면적 (㎡,세대)	발생원단위(인/)						총 활동인구						계		
		상 근			방 문			상 근			방 문					
		기 준	단 기	장 기	기 준	단 기	장 기	기 준	단 기	장 기	기 준	단 기	장 기			
총 계																
	1															
	2															
	3															
	4															
	5															
	6															
7																

210mm×297mm [백상지 80g/㎡]

② 수단분담률 분석

용도구분	승용차			택시			버스			전철			기타		
	기준	단기	장기	기준	단기	장기	기준	단기	장기	기준	단기	장기	기준	단기	장기
1															
2															
3															
4															
5															
6															
평균 재차인원															

주) 상고, 이용 구분된 경우는 상고를 용도구분에서 별도 구분하여 기재한다.

③ 유발교통량

구분	계		승용차		택시		버스		기타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첨두 교통량 (대)	유입									
	유출									
사업지구	유입									
	유출									
첨두시간대		주변가로		사업지구						

210mm×297mm [백상지 80g/㎡]

④ 주차수요 원단위

용도 구분	면적(㎡)	주차원단위(대/㎡)			이 용 옹		주차수요(대)	
		기 준	단 기	장 기	호	올	단 기	장 기
총 계								
1								
2								
3								
4								
5								
6								
원 단위 자료출처								

⑤ 주차수요 예측결과 및 확보 내역

주차수요 분석 방법별 분석결과				구 분	주 차 대 수
분석 방법	단 기	장 기			
원단위법				법 적 대 수	
P 요 소 법				건 축 계 획	
누적 주차법				분 석 대 수	
기 타				적 용 방 법	

210mm×297mm [백상지 80g/㎡]

3) 교통영향평가 내용(정량분석표 : 내용항목은 별표 1에서 정한 대상 사업별로 내용항목으로 작성한다.)

항목 및 효과	교통영향평가(안)	건 수	연 장 (m)	폭 원 (m)	면 적 (㎡)	시 행 주 체	공 원 년	개선비용 (백만 원)
가 로 및 교 차 로	도로신설							
	도로확폭							
	기하구조 개선							
	좌회전포켓, 차선 수 조정, U턴							
	교차로 신호등 설치		-	-	-			
진 출 입 통 선	교차로 신호주기 조정		-	-	-			
	신설							
	확폭, Set-back							
	완화차선							
	위치조정		-	-	-			
주 차	운영개선(일방통행 등)		-	-	-			
	가각정리		-	-	-			
	주차면수 추가		-	-	-			
	주차면수 제거		-	-	-			
	진출입구 신설, 위치구조조정		-	-	-			
대 중 교 통	버스정류장 신설							
	택시정류장 신설							
	정류장 위치조정							
	대중교통노선조정, 추가		-	-	-			

210mm×297mm [백상지 80g/㎡]

항목 및 효과	교통영향평가(안)	건 수	연 장 (m)	폭 원 (m)	면 적 (㎡)	시 행 주 체	완 도 년	개선비용 (백만 원)
보 행	보도신설							
	보도확폭, Set-back							
	보행동선조정, 보행전용		-	-				
	횡단보도 신설, 위치조정		-	-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	-				
안 전	과속방지턱 시설							
	미끄럼방지 시설							
	각종 안내판 시설		-	-	-			
	각종 경고등 시설		-	-	-			
	노면마킹, 표지병							
	자전거 관련시설							
	기타, 방음벽 등							
소 계 (백만 원)								
시간 절감 분석	인접 4개 교차로 개선 전후의 시간절감 효과 (단위 : 시간, 백만 원/년)	(1번교차로 : 교차로명)					시간 / 년	
		(2번교차로 : 교차로명)					시간 / 년	
		(3번교차로 : 교차로명)					시간 / 년	
		(4번교차로 : 교차로명)					시간 / 년	
소 계 (백만 원)								
합 계 (백만 원)								
주 : 교통영향평가에 기여한 부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기타 교통영향평가 비용은 실제로 투입한 비용을 적용한다. 시간가치의 적용은 버스 및 승용차로 구분하고 수단별 표준시간 가치를 적용한다.								

비고) 활동인구, 수단분담률 및 주차수요, 원단위상의 용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비고) 활동인구, 수단분담률 및 주차수요, 원단위상의 용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210mm×297mm [백상지 80g/㎡]

구분내역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영도구관	
주거 1 주거 2 주거 3 주거 4 주거 5 주거 6 주거 7 주거 8	주거 50㎡ 이하 주거 64㎡ 이하 주거 85㎡ 이하 주거 115㎡ 이하 주거 165㎡ 이하 주거 230㎡ 이하 주거 230㎡ 이상 단독주택
영도구관 주거 1 주거 2 주거 3 주거 4 주거 5 주거 6 주거 7 주거 8	예식장, 영화관, 공연장 근린상가, 아파트 부속상가 호텔, 여관 사무실, 오피스텔 공공청사, 금융 채용관, 스포츠센터, 각종 운동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백화점, 상가, 시장, 일반판매
영도구관 주거 1 주거 2 주거 3 주거 4 주거 5 주거 6 주거 7 주거 8	학교, 연구소, 도서관, 학원, 유치원 - 공원, 유원지 병원 교회, 성당, 사찰 - 교통관련시설
부대시설	주차장, 부대시설
기타 부속	관리실, 노인정, 사회복지(아파트)
상용통영	- - -

주) 상고, 통고, 통학은 일부 보고서 구분내용을 수용하기 위해 설정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별지 제2호서식]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건축물) 통보서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나. 심의일시:
다. 사업규모:
라. 사업기간:
마. 사 업 자:
바. 대 행 자:

2. 심의내용 : (원안, 수정, 보완)

구 분	심의 내용(구체적으로 제시)	비고
주변가로 및 교차로		
진 · 출입 동선		
대중교통 및 보행		
주 차		
교통안전 및 기타		
사업지구 외부 교통개선*		

*교통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별지 제3호서식]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개발사업) 통보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나. 심의일시:
다. 사업규모:
라. 사업기간:
마. 사 업 자:
바. 대 행 자:

2. 심의내용 : (원안, 수정, 보완)

구 분	심의 내용(구체적으로 제시)	비고
사업지구의 외부 (주변가로 및 교차로)		
사업지구의 내부 (주변가로 및 교차로)		
대중교통 및 보행		
주 차		
교통안전 및 기타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별지 제4호서식]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도로건설사업) 통보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나. 심의일시:
다. 사업규모:
라. 사업기간:
마. 사 업 자:
바. 대 행 자:

2. 심의내용 : (원안, 수정, 보완)

구 분	심의 내용(구체적으로 제시)	비고
진·출입 지점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로 등)		
진·출입 지점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로 등)과 연결되는 주변 가로 및 교차로		
대중교통 및 보행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주 차 (휴게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교통안전 및 기타		
지역분리 극복방안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별지 제5호서식]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철도건설사업) 통보서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나. 심의일시:
다. 사업규모:
라. 사업기간:
마. 사 업 자:
바. 대 행 자:

2. 심의내용 : (원안, 수정, 보완)

구 분		심의 내용(구체적으로 제시)	비고
정거장 내 부	외부↔대합실		
	대합실↔승강장		
	승강장		
	환승통로 (환승역)		
	환승시설 진·출입 동선		
정거장 외 부	다른 수단과의 연계		
	보행		
주 차	환승주차장 동선		
	화물 하역 공간 및 주정차 공간		
교통안전 및 기타			
지역분리 극복방안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별지 제6호서식]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자	
심의위원회		심의 일시	
사업 기간		평가대행자	
위 치		용 도	
사업 규모		사업 형태	
교통유발량			

2. 교통개선대책

구분	내 용	시 행 계 획		
		시행주체	시행시기	비용부담
항 목 (교통영향평가 지침 [별표 1] 교통 영향평가의 내용 항목 4.대상사업별 개선대책 항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개선대책 개선필요사항을 송부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4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기능이 상실된 어린이공원을 주변 환경 및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문화공원으로 변경결정

2.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공원	어린이공원	서교동 359	2,218	감)2,218	0	건설부고시 제299호	홍익어린이공원
신설	공원	문화공원	서교동 359	0	증)2,230.1	2,230.1	-	공부상 면적반영 (12.1㎡)

나. 지형도면 : 불임참조

※ 불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19) 및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 3153-9354)에 각각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 임 : 지형도면]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5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조합의 총회등 의사진행 시 적용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의 성격과 목적]

- 본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조합이 사업 추진 시 이를 참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의사진행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의 활용방법]

- 본 규정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조합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삭제·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 있다. 다만, 도시정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반되게 해서

는 안 되며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합의 의사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도정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도정법령”이라 한다), 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1. “조합등”이라 함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말한다.
2. “조합장등”이라 함은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을 말한다.
3. “조합원등”이라 함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을 말한다.
4. “대의원회등”이라 함은 추진위원회와 대의원회를 말한다.
5. “대의원등”이라 함은 추진위원과 대의원을 말한다.
6. “정관등”이라 함은 조합정관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말한다.
7. “회의”라 함은 조합등에서 개최하는 추진위원회, 대의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를 말한다.
8. “총회”라 함은 주민총회 및 조합총회를 말한다.
9. “의장”이라 함은 회의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
10. “회의진행보조자”라 함은 회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을 도와 회의 진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회의자료”라 함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 의결에 필요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말한다.
12. “의결권자”라 함은 조합원등으로서 참석자명부에 기재된 자를 말한다.
13. “의사정족수”라 함은 도정법령 및 정관등에서 규정한 회의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조합원등 수를 말한다.
14. “의결정족수”라 함은 도정법령 및 정관등에서 규정한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조합원등 수를 말한다.
15. “신분증명서”라 함은 주민등록증 등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에 준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16. “방청인”이라 함은 당해 조합원등으로서 회의참석을 요청하여 제13조에 따른 방청허가권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17. “투표감독관”이라 함은 투·개표절차의 모든 절차를 감시·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8. “투·개표참관인”이라 함은 회의개최 당일 투·개표상황을 참관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조합등의 회의 진행방법에 관하여 도정법령 및 정관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규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서는 도정법령 및 정관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대의원회등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의결권 등)

- ① 의결권은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조합원등으로서 참석자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는 의결권을 위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석자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 1인에게 의결권이 있다. 이 경우 참석자명부 열람기간 내 대표소유자 또는 대표조합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등은 참석자명부에 추가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참석자명부 열람 기간 내에 위임장·대리인 지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등은 이를 참석자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조합원등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제 2 장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 ① 조합등은 이 규정에 따라 조합장등이 제안한 최초 안건(안건명, 제안설명, 관련근거 및 첨부자료(별지 4-1호, 4-2호 서식))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받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업무집행을 위한 회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조합장등, 이사, 대의원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5인 이내로 대의원회등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하고, 그 선임방법은 대의원회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회의안건을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 ④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⑤ 조합장등은 회의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설명 또는 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조합등 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또는 설계자 등 조합등과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3. 외부전문가
 4. 그 밖에 조합장등이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운영위원회의 업무 등) 조합장등은 도정법령, 정관등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이사회 또는 추진위원회 회의소집통지 전까지 제5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안건을 검토

토하고 검토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이사회, 추진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 ① 조합장등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운영위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제 3 장 참석자명부 등

제8조(참석자명부의 작성)

- ① 조합등은 총회 개최를 위하여 참석자명부(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 ② 참석자명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구역의 총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참석자명부에는 의결권자의 성명, 물건지주소, 생년월일, 투표용지 수령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2. 참석자명부는 총회소집 공고일까지 작성해야 한다.
 3. 참석자명부는 총회의 열람, 회의당일 투표용으로 작성하되 예비용으로 2부를 작성한다.

제9조(참석자명부 열람 및 정정)

- ① 조합등은 참석자명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조합원등이 3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등 게시판 및 클린업시스템에 공고하고, 해당 조합원등에게 개별통보 해야 한다.
 1. 열람기간
 2. 열람장소
 3. 열람방법
 4. 열람내용
 5. 이의신청방법
 6. 그 밖에 조합등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 ② 조합원등이 참석자명부를 열람할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 ③ 조합원등은 참석자명부의 기재사항에 누락, 오기 또는 명의이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별지 제9호 서식)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조합등은 이를 확인하여 즉시 참석자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등은 소유물이 양도·양수 및 증여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등 권리변동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총회당일 투표종료 전까지 조합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의소집 절차 등

제10조(회의소집 절차 등) 조합등의 회의소집절차는 도정법령 및 정관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합이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기재한 공고문(별지 제2호 서식)을 조합 게시판 및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고 각 이사에게 등기우편으로 기재한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와 회의자료(별지 제4-1호, 제4-2호 서식)를 발송·통지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추진 상 시급히 이사회 심의를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2일 전에 유선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2. 조합등이 대의원회등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공고문(별지 제2호 서식)을 조합등 게시판 및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고 각 대의원등에게는 등기우편으로 기재한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와 회의자료(별지 제4-1호, 제4-2호 서식)를 발송·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추진 상 시급히 대의원회등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전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3. 조합등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공고문(별지 제2호 서식), 총회 세부자료 등을 조합등 게시판 및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하고 각 조합원등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추진위원회의 경우 회의개최 10일 전)에 등기우편으로 기재한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와 회의자료(별지 제4-1호, 제4-2호 서식)를 발송·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참석대상자 자격확인

제11조(조합원등 본인 출석) 총회에 출석하려는 조합원등은 접수처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참석자명부와 대조·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대리인 출석)

- ① 조합원등이 총회에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위임장·대리인 지정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회당일 투표종료 전까지 조합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대리인의 본인확인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방청인 출석)

- ① 조합원등 또는 대리인이 대의원회등을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방청요청권(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조합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방청허가권(별지 제14호 서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단, 방청인의 수는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장등이 정할 수 있다.
- ② 방청인에게는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즉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6 장 회의운영 일반기준

제14조 (의장의 의무 및 권한)

- ① 회의의 의장은 조합장등으로 하며, 다만 관련법령 및 정관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의장은 전반적인 회의진행을 총괄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등 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또는 설계자 등 조합등과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퇴장조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정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 경고 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할 경우 퇴장조치 할 수 있다.

1. 조합원등 또는 대리인 자격이 없는 자가 출석한 경우
2.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을 2회 이상 하여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제 7 장 개회 등

제16조(개회)

- ① 예정된 개회시각이 되면 의장은 개회를 선언한다. 다만, 개회시각에 도정법령 및 정관등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직접참석자 수에 미달한 때에는 참석한 조합원등의 동의를 구하고 개회시각을 늦출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의사정족수 및 직접참석자 수에 미달한 때에는 참석한 조합원등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회의의 불성립을 선언하여야 한다.
- ③ 회의가 불성립된 경우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등을 준용한다.

제17조(성원보고)

- ①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에 출석한 조합원등에게 최초 성원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안건심의 후 투표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회의에 출석한 조합원등에게 최종 성원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8 장 회의 진행방법 등

제18조(회의 진행방법 설명)

- ① 의장은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안건을 개별상정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거쳐 개별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결(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한 조합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회의 진행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방법은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한다.
1. 의장 또는 출석한 조합원등이 복수의 안건을 일괄상정할 것을 제안한 경우
2. 의장 또는 출석한 조합원등이 표결(의결)을 거수 또는 기립의 방법으로 할 것을 제안한 경우

3. 의장이 서면결의서 개표시기를 정하여 제안한 경우
 4. 의장 또는 출석한 조합원등이 회의종료 전 먼저 귀가요청으로 인해 선투표를 제안한 경우
 5. 회의진행보조자 등 의장 외의 사람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6. 기타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의장이 제안한 경우
- ② 회의에 출석한 조합원등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회의 진행방법에 따라 회의에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경과보고 및 제안설명 등)

- ① 의장은 안전심의에 앞서 조합등의 업무추진과 관련한 경과보고사항 등을 설명한다.
- ② 의장은 상정된 안전에 대하여 조합원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적·기술적 지식이 필요할 경우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질의응답)

- ① 의장은 안전심의를 위한 질의응답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
 1. 조합원등은 발언권을 요청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 발언하여야 하며, 그 순서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조합원등은 먼저 물건지주소와 성명(또는 상호)을 밝히고 발언하여야 한다.
 3. 조합원등으로부터 질의를 받은 경우 의장이 설명한다. 다만, 전문적·기술적 지식이 필요할 경우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조합원등의 발언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1. 조합원등은 해당 안전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발언하되, 발언시간은 의장이 10분 이내에서 결정한다.
 2. 조합원등은 동일 안전에 대하여 중복하여 발언할 수 없다.
 3. 조합원등이 안전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의장은 즉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와 그 밖에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을 하는 경우 제15조를 준용한다.
- ③ 의장은 조합원등의 질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명을 거절할 수 있다.
 1. 조합원등의 질의사항이 회의의 목적에 현저히 반한 경우
 2.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

제 9 장 의사결정

제 1 절 서면결의서

제21조(서면결의서에 의한 투표)

- ① 조합등은 정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등에 직접참석 할 수 없는 조합원등의 의결권

보장을 위해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회의소집 공고 및 통지시 서면결의서 제출 및 철회 등의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등이 제1항에 따라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경우 조합등에서 송부 받은 서면결의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한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의개최 전일 18시까지 조합등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등은 참석자명부에 서면결의 투표자로 표시한다.

④ 조합등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즉시 투표함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서면결의서 투표함의 봉인)

① 서면결의서 투표함은 조합등이 제작한 투표함으로 하되, 투·개표 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 확인한 후 시건·봉인한다. 감독관 선임방법은 대의원회등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서면결의서 투표함의 보관장소는 조합등 사무실로 한다.

③ 서면결의서 투표함을 보관장소에 보관, 반출 또는 투표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독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④ 서면결의서 투표함은 투표개시 전 투·개표 장소로 감독관이 이송한다.

제23조(서면결의서 철회 등)

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등이 총회 당일 참석이 가능하여 의결권을 투표로서 행하고자 할 경우 서면결의서 철회 확인증(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고 서면결의서를 철회하여야 한다. 단, 철회는 총회 당일 안건상정 전까지 가능하다.

②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등이 의사표시 제작성 또는 오기 등으로 서면결의서를 재작성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서면결의서 철회확인증(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 및 시기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서면결의서를 철회 또는 재작성하는 경우 조합등은 이를 확인하여 서면결의서 철회대장(별지 제11호 서식) 및 서면결의서 교체대장(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고 즉시 참석자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④ 서면결의서 제출 후 철회를 하지 않고 회의당일 참석하는 조합원등은 직접참석자 수에 포함되, 의결권은 서면결의서로 갈음한다.

제24조(서면결의서 개봉시기) 서면결의서 투표함은 회의당일 투표가 종료되고 개표가 개시된 이후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당일 출석한 조합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 2 절 투 · 개 표 등

제25조(투표방법)

① 투표는 투표용지(별지 제13호 서식)를 이용한 기표방법으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출석한 조합원등의 제안이 있을 경우 제18조를 준용한다.

- ② 참석자명부에 기재된 조합원등 또는 대리인 1인이 1표로 직접 투표한다.
- ③ 투표소 투표관리를 위해 감독관을 둘 수 있다.
- ④ 조합등 회의의 의결방법은 도정법 및 정관 등에 따른다.

제26조(투·개표 참관인)

- ① 조합등은 투·개표참관인(이하 “참관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하며, 참관인 선임방법은 대의원회등에서 정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투명한 개표 진행을 위해 적정 인원을 고려하여 회의 출석자를 개표에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감사가 회의에 참석한 경우 감사는 개표를 참관하여야 한다.
- ③ 참관인은 투·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7조(투표)

- ① 투표소는 회의장 내 적정한 장소에 비밀투표가 보장되도록 설치한다.
- ② 투표는 감독관이 감독하며,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할경찰서에 경찰공무원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투표소에는 투표를 위한 의결권자, 감독관, 투표사무원,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단, 공공지원자 및 공증변호사 등 조합등이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④ 투표는 회의당일 안전심의를 종료하고 의장의 투표 개시선언 후 진행한다. 다만, 의장 또는 출석한 조합원등의 제안이 있을 경우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8조(개표)

- ① 개표소는 투표소와 같은 장소로 한다. 단, 장소협소 등 동일 장소에서 개표하기가 어려울 경우 인접한 장소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개표는 감독관이 감독하며,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 경찰공무원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개표소에는 감독관, 개표사무원, 참관인, 조합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단, 공공지원자 및 공증변호사 등 조합등이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④ 개표는 의장의 개표 개시선언 후 진행하며, 투표종료 후 즉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개표는 안전별로 구분하여 집계하며, 집계가 완료되는 즉시 의장이 공표한다.

제29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투표감독관의 서명(날인)이 없거나 조합등이 정한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기표가 되지 않은 경우
3. 기표가 불확실한 경우
4. 서면결의서가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조합등에 도착한 경우
5. 서면결의서가 밀봉되지 않은 경우
6. 기타 감독관, 개표사무원, 참관인, 조합등이 인정하는 경우

제30조(별도규정) 위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투·개표 관련 규정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20호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 10 장 폐 회

제31조(폐회) 의장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다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한다.

제 11 장 의사록 작성 등

제32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조합등은 회의등의 의사록(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록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주요논의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2. 의사록은 조합등 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등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는 도정법령 및 정관등에 따른다.

제 12 장 보 칙

제33조(타법의 준용)

본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도정법령 및 정관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르며, 의사진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의사진행의 일반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제34조(이사회회의 준용)

본 운영규정은 대리인·서면결의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사회에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은 정관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대의원회등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안전 검토 보고서(예시)

[운영위원회 회의]

□ 운영위원회 회의 목적 : 최초 안전(안전명, 관련근거 및 첨부자료
(별지 4-1호, 4-2호 서식))에 대한 검토

□ 회의 안전

- 제1호 안전 : 안전내용
- 제2호 안전 : 안전내용
- 제3호 안전 : 안전내용
- 제4호 안전 : 안전내용

□ 검토내용

- 제1호 안전 : 검토내용
- 제2호 안전 : 검토내용
- 제3호 안전 : 검토내용
- 제4호 안전 : 검토내용

□ 검토의견

-

※ 운영위원외 참석자가 있는 경우 참석자 기재

조합장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

공고 제 호

회의 소집 공고문(총회 예시)

20 년 월 일 실시하는 ○○정비사업 조합등 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조합원등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합원등에게는 개별 우편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20 년 월 일

○○ 정비사업 조합등 조합장등 인

1. 회의목적 :
2. 회의일시 : 20 년 월 일() 시
3. 회의장소 :
4. 회의안건
 - ① 제1호 안건 : 안건내용
 - ② 제2호 안건 : 안건내용
 - ③ 제3호 안건 : 안건내용
 - ④ 제4호 안건 : 안건내용
5. 참석대상 : 조합원등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이해관계자
6. 구비서류 : 신분증명서, 회의자료,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7. 서면결의서 제출방법등
 - 가. 서면결의서 제출방법
 - 1) 우편에 의한 제출
 - 2) 조합등 사무실로 밀봉하여 제출
 - 3) 회의개최 전일 18시까지 조합등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함
 - 나. 서면결의서 철회 :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등이 총회 당일 참석이 가능하여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당일 안건상정 전까지 가능하며, 서면결의서 철회확인증을 작성하고 철회하여야 합니다.
 - 다. 서면결의서 재작성 :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등이 의사표시 재작성 또는 오기 등으로 서면결의서를 재작성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일 18시까지 기존에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서면결의서 철회 확인증을 작성한 후 서면결의서를 재작성 하셔야 합니다.

8. 참석자명부 열람등

- 1) 열람기간 : 20 년 월 일() 시부터 총회당일 투표종료 전까지(0일간)
- 2) 열람장소 : 조합등 사무실(총회당일 열람자의 경우 총회장소)
- 3) 열람방법 : 신분증명서 지참 후 열람
- 4) 열람내용 : 본인확인
- 5) 안내사항

가) 의결권은 당해구역 조합원등으로서 참석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에게 있으며, 등재되지 아니한 사람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 이의신청방법

- (1) 참석자명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오기·명의이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 (2) 제출서류 : 이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

다)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조합원등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

- (2) 제출서류 :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대표자 및 위임자 신분증명서 사본 등

라)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 (1)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원등은 위임장·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등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 법인인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 (2) 제출서류 : 위임장·대리인 지정서, 신청인(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신청인(위임자)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마) 참석자명부는 본인(선임된 대표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에 해당되는 정보에 한하여 열람 가능하고, 복사하거나 촬영할 수 없으며, 인터넷을 통한 열람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안전별 세부적인 자료는 클린업시스템에 등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회의 소집 통지문(총회 예시)

20 년 월 일 실시하는 ○○정비사업 조합등 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조합원등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 정비사업 조합등 조합장등 인

1. 회의목적 :
2. 회의일시 : 20 년 월 일() 시
3. 회의장소 :
4. 회의안건
 - ① 제1호 안건 : 안건내용
 - ② 제2호 안건 : 안건내용
 - ③ 제3호 안건 : 안건내용
 - ④ 제4호 안건 : 안건내용
5. 참석대상 : 조합원등 및 회의진행에 필요한 이해관계자
6. 구비서류 : 신분증명서, 회의자료,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7. 서면결의서 제출방법등
 - 가. 서면결의서 제출방법
 - 1) 우편에 의한 제출
 - 2) 조합등 사무실로 밀봉하여 제출
 - 3) 회의개최 전일 18시까지 조합등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함
 - 나. 서면결의서 철회 :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등이 총회 당일 참석이 가능하여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당일 안건상정 전 까지 가능하며, 서면결의서 철회확인증을 작성하고 철회하여야 합니다.
 - 다. 서면결의서 재작성 :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등이 의사표시 재작성 또는 오기 등으로 서면결의서를 재작성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일 18시까지 기존에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서면결의서 철회 확인증을 작성한 후 서면결의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
8. 참석자명부 열람등

- 1) 열람기간 : 20 년 월 일() 시부터 총회당일 투표종료 전까지(0일간)
- 2) 열람장소 : 조합등 사무실(총회당일 열람자의 경우 총회장소)
- 3) 열람방법 : 신분증명서 지참 후 열람
- 4) 열람내용 : 본인확인
- 5) 안내사항

가) 의결권은 당해구역 조합원등으로서 참석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에게 있으며, 등재되지 아니한 사람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 이의신청방법

(1) 참석자명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오기·명의이전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중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서류 : 이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

다)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조합원등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

(2) 제출서류 :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대표자 및 위임자 신분증명서 사본 등

라)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1) 다음에 해당하는 조합원등은 위임장·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등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에서 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 법인인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2) 제출서류 : 위임장·대리인 지정서, 신청인(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신청인(위임자)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마) 참석자명부는 본인(선임된 대표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에 해당되는 정보에 한하여 열람 가능하고, 복사하거나 촬영할 수 없으며, 인터넷을 통한 열람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안전별 세부적인 자료는 클린업시스템에 등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붙임 : 1. 회의자료 및 서면결의서 1부.
2. 관련서식 1부. 끝.

【별지 제4-1호】

회의자료(예시)

[1] 일반적인 안전

제○호 안전 ○○의 건(안전제목)

1. 안전주문

- 통지한 안전을 상정함.

2. 제안설명

- 상정한 안전과 관련하여 제안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3. 관련근거

- 도정법령 및 조합등 정관등 관련규정 제시

4. 의결내용

- 상정된 안전에 대해 의결할 내용을 기술

※ 붙임 : 세부적인 첨부자료 1부. 끝.

(※ 첨부자료가 방대할 경우 클린업시스템 게시 후 요약자료 제시 가능)

【별지 제4-2호】

회의자료(예시)

[2] 업체 선정관련 안건

제○호 안건 ○○의 건(안건제목)

1. 안건주문

- 통지한 안건을 상정함.

2. 제안설명

- 업체선정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입찰방법(일반/지명/제한), 평가방법등 입찰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술

3. 관련근거

- 도정법령 및 조합등 정관등 관련규정 제시

4. 의결내용

-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할 내용을 기술

※ 붙임 : 1. 입찰공고문등 1부.

2. 입찰참여 업체 평가결과 비교표 1부.

3. 회사소개서등 1부. 끝.

(※ 첨부자료가 방대할 경우 클린업시스템 게시 후 요약자료 제시 가능)

【별지 제5호】

서 면 결 의 서(예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름·주소 등을 포함하여 공개됩니다.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소 유 지 번	서울특별시 구 동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시에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바, 조합등으로부터 회의 관련 일체의 사항을 상세하게 통보받아 본 서면결 의서로 회의의 참석을 갈음하며,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아 래 -

안건	안 건 내 용	안건내용 확인	의사표시	
			찬성	반대
제1호	일반 안건	(O,X 표시)	(지장 또는 서명)	(지장 또는 서명)
제2호	업체 선정의 건 (※기호 1, 2번 중 한 개 업체에만 의사표시)	기호1번	(지장 또는 서명)	
		기호2번	(지장 또는 서명)	
제3호	업체 선정의 건 (※기호 1, 2번 중 한 개 업체에만 의사표시)	기호1번	(지장 또는 서명)	
		기호2번	(지장 또는 서명)	
제4호	일반 안건	(O,X 표시)	(지장 또는 서명)	(지장 또는 서명)
제5호	일반 안건	(O,X 표시)	(지장 또는 서명)	(지장 또는 서명)

- 의사표시란에 본인 자필로 서명 또는 지장 날인하시기 바라며, 다른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서면결의자(조합원등)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정비사업 조합등 귀중

【별지 제6호】

위임장·대리인 지정서(총회예시)

신청인 (위임하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인 (위임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시에 개최되는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제5항에 따라 대리인에
게 총회 출석 및 모든 의결권을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 붙임 : 1. 신청인(위임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신청인(위임자)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정 비 사 업 조 합 등 귀 중

【별지 제7호】

서면결의서 회송용 봉투(예시)

【앞 면】

보내는 사람	우표
받는 사람	
※ 안내사항 뒷면 참조	

【뒷 면】

※ 안내 사항 1. 서면결의서 의사표시란에 지장 또는 서명하여 봉투에 넣고 봉투 앞면의 보내는 사람(서면결의서 제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서면결의서가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조합등에 도착하거나 밀봉이 되지 않은 경우 무효 표로 합니다.	※ 제출 방법 1. 우편에 의한 제출 2. 조합등 사무실로 밀봉하여 제출
--	---

【별지 제8호】

참 석 자 명 부(예시)

[illegible]

작성연월일 : 20 년 월 일

작 성 자 : (〇 〇 〇) (인)

확 인 자 : (조합장등) (인)

주 : 1. 참석자명부 기재방법

- ① 조합원번호란에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해당 조합원의 조합원번호(추진위원회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명부에 기재된 연번)를 기재한다.
- ② 성명란은 의결권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단, 대리인이 참석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한다.
- ③ 물건지주소란에는 참석자의 소유현황을 기재한다. ※ 아파트 등은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 ④ 공유지분일 경우 성명란에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소유주 전체를 기재한다.
- ⑤ 생년월일 란에는 숫자로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일곱번째까지 기재하여 성별을 구분한다.
- ⑥ 서면결의서 투표자란은 서면결의서 제출자를 표시(○) 한다.
- ⑦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등이 참석할 경우 총회 참석자란에 서명 또는 지장날인한다.
- ⑧ 참석자 중 투표용지를 수령한 자는 투표용지 수령자란에 서명 또는 지장날인한다.
- ⑨ 비고란의 기재와 참석자명부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총회당일 철회한 자는 서면결의 투표자란 표기(○)를 두 줄로 삭선하고, 비고란에 서면철회자로 기재한다.
 - 나. 이의·불복신청 또는 명부등재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 다. 서면결의서 교체대장을 작성하고 서면결의서를 재작성한 자는 비고란에 교체자로 기재한다.
 - 라. 참석자명부에 의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오기된 자를 발견 하는 때에는 이를 두줄로 삭선하고, 오기의 발견 시는 그 오기된 글자만 두 줄로 삭선하되, 각각 비고란에 그 사유(의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오기 등)와 연월일을 기재한다.

2. 참석자명부가 작성되면 조합장등의 직인을 날인한다.

【별지 제9호】

참석자명부 이의 신청서(예시)

1.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연락처 :)

2. 이의신청 내용 :

3. 증 병 서 류 :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정비사업 조합등 총회와 관련하여 열람한 참석자명부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정비사업 조합등 귀중

【별지 제10호】

서면결의서 철회 확인증(본인보관용)(예시)

성 명	생년월일	물건지주소	비 고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 동 -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시에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조합등으로부터 회의 관련 일체의 사항을 상세하게 통보받아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서면으로 출석 및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회의 당일 직접 출석이 가능하여 기존에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서면결의서 철회자(조합원등)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정비사업 조합등 귀중

.....
절 취 선

(간 인)

.....
절 취 선

서면결의서 철회 확인증(조합등 제출용)(예시)

성 명	생년월일	물건지주소	비 고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 동 -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시에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조합등으로부터 회의 관련 일체의 사항을 상세하게 통보받아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서면으로 출석 및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회의 당일 직접 출석이 가능하여 기존에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서면결의서 철회자(조합원등)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정비사업 조합등 귀중

【별지 제11호】

서면결의서 철회대장(예시)

- 회 의 명 :

- 회의일시 :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물건지주소	서면결의서 철회 확인(서명)	비 고

※ 철회한 서면결의서는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정비사업 조합등 조합장등 인

【별지 제12호】

서면결의서 교체대장(예시)

- 회 의 명 :

- 회의일시 :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물건지주소	서면결의서 교체 날짜	서면결의서 교체 확인(서명)	비 고

※ 서면결의서 교체대장 작성 시 기존에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정 비 사 업 조 합 등 조 합 장 등 인

【별지 제13호】

투 표 용 지(예시)

안건	안 건 내 용	의사표시	
		찬성	반대
제1호	일반 안건		
제2호	업체 선정의 건 (※기호 1, 2번 중 한 개 업체에만 의사표시)	기호1번	
		기호2번	
제3호	업체 선정의 건 (※기호 1, 2번 중 한 개 업체에만 의사표시)	기호1번	
		기호2번	
제4호	일반 안건		
제5호	일반 안건		

- 주) 1. 투표 시 투표소에 설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의사표시란에 기표합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투표감독관의 서명(날인)이 없거나 조합등이 정한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 기표가 되지 않은 경우 및 기표가 불확실한 경우

20 년 월 일

 절
 일련번호 취 선

○ ○ 정 비 사 업 조 합 등 조 합 장 등 인

【별지 제14호】

방청 요청권(예시)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동 -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 세)

방청요청회의 : 년 월 일() 시 〇〇정비사업 조합등 대의원회등

○○정비사업 조합등 대의원회등의 방청권을 요청합니다.

본인은 방청인의 제한 및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어길 시 퇴장 및 불이익을 당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방청권 요청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정비사업 조합등 귀중

(간 인)

절 취 선

방청 허가권(예시)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동 -

성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만세)

방청요청회의 : 년 월 일() 시 〇〇정비사업 조합등 대의원회등

방청요청인의 본 대의원회등의 방청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 정비사업 조합등 조합장등 인

【별지 제15호】

의 사 록(예시)

□ 회의일시 : 20 년 월 일() 시

□ 회의장소 :

□ 상정안건

- ① 제1호 안건 : 안건내용
- ② 제2호 안건 : 안건내용
- ③ 제3호 안건 : 안건내용

□ 의사경과 및 요령 :

[성원보고]

20 년 월 일() 시 조합등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함.

1차 성원보고 : 시 분 기준 조합원등 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자 포함 명 참석
의장은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함.

최종 성원보고 : 시 분 기준 조합원등 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자 포함 명 참석
의장은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투표개시를 선언함.

[회의진행 방법]

의장은 ○○정비사업 조합등의 회의개최경과 및 보고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회의진행방법 설명 및 조합원 동의를 득함(안전상정 및 심의방법, 표결(의결)방법, 서
면결의서 개봉시기 및 선투표시기 등)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하였음.

[안전상정 및 질의응답]

- 제1호 안건 : ○○의 건(안전제목)
- 안전상정의 상세한 경위 기술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 구체적으로 기술
- 표결결과 : 찬성 표, 반대 표, 기권 표, 무효 표
- 결의내용 : 구체적으로 기술
- 의장은 제1호 안건 ○○의 건(안전제목)이
조합원등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 제2호 안건 : ○○의 건(안전제목)
- 안전상정의 상세한 경위 기술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 구체적으로 기술
- 표결결과 : A업체 표, B업체 표, C업체 표, 기권 표, 무효 표
- 결의내용 : 구체적으로 기술

- 의장은 제2호 안건 ○○의 건(안건제목)이
총 표 중 표를 득하여 A업체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함.
- 제3호 안건 : ○○의 건(안건제목)
- 안건상정의 상세한 경위 기술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 구체적으로 기술
- **표결결과 : 찬성 표, 반대 표, 기권 표, 무효 표**
- 결의내용 : 구체적으로 기술
- 의장은 제3호 안건 ○○의 건(안건제목)이
조합원등 과반수 찬성 미달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함.

[폐회 선언]

의장은 상정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친 후 회의등 폐회를 선언함.

회의 종료 시각 : 시 분

주 : 구체적인 기재내용은 회의진행방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속기사가 회의에 참석하여 속기록을 작성하였을 경우 의사록은 생략가능

금번 회의 상정안건이 기재사항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확인함.

연번	직책	성명	생년월일	지장 및 자필서명	비고
	조합장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감사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감사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의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의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의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신도림복합도서관 건립을 위해 이용률이 저조한 소공원을 폐지하고, 소공원 폐지에 따른 대체공원을 오류역 인접지역에 신설.

2.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공원	소공원	신도림동 400-6 외 1필지	2,218	감)895	0	서고 제180호 ('10.5.13.)	-
신설	공원	소공원	오류동 332-36 외 1필지	0	증)895	895	-	대체공원

나. 지형도면 : 불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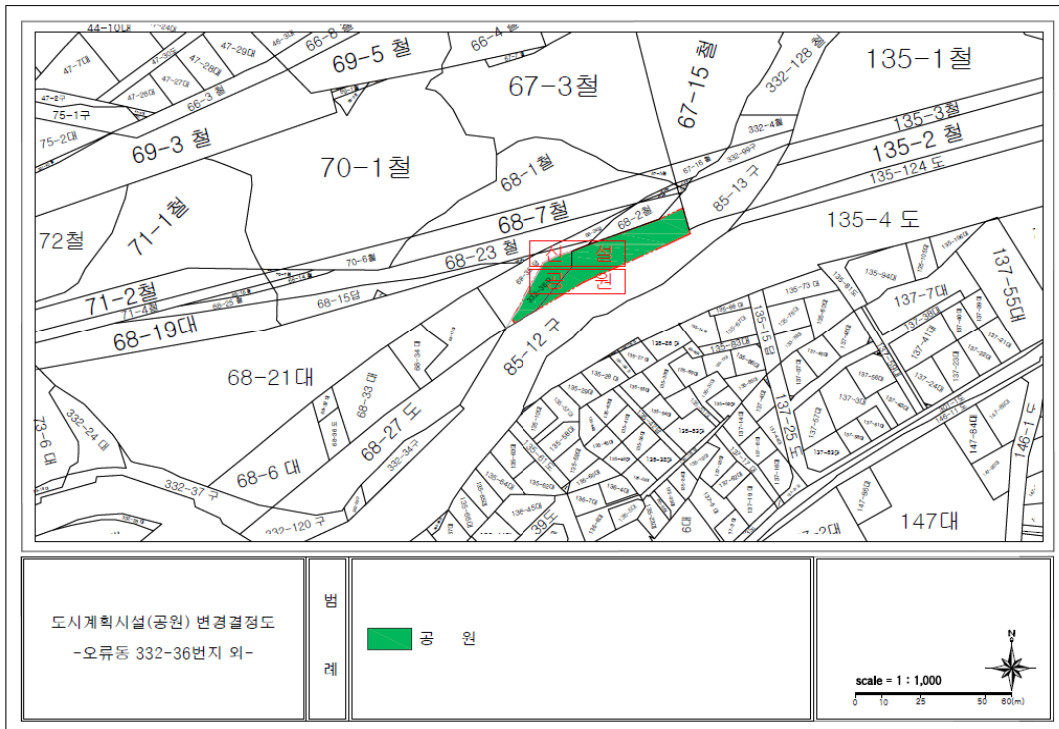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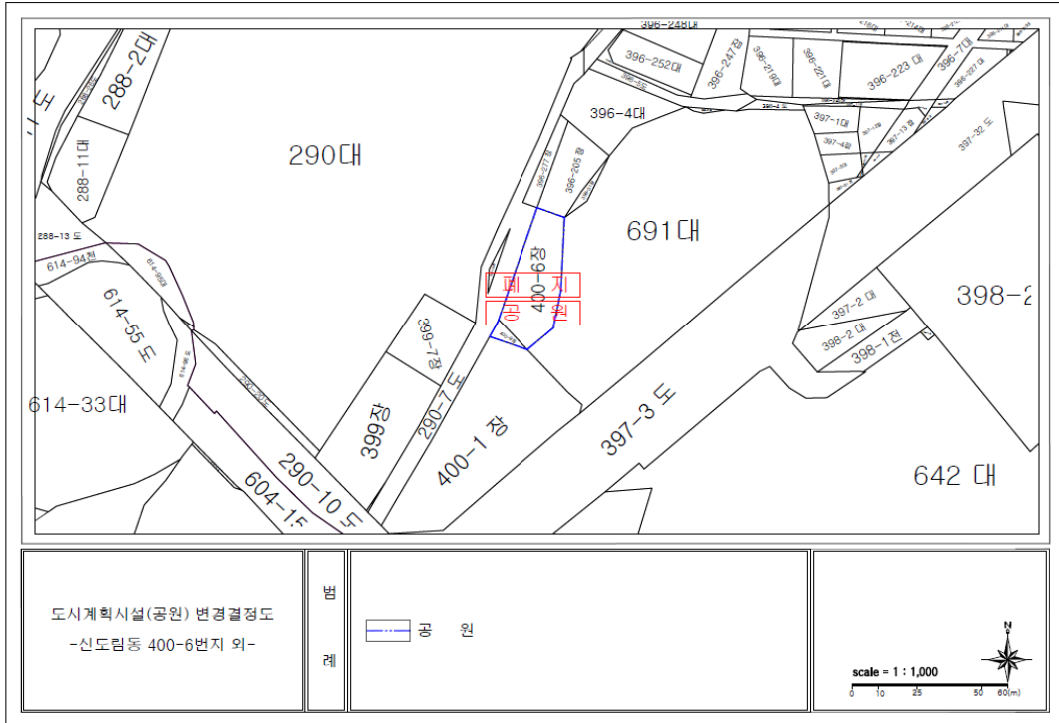
※ 불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19) 및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 860-2944)에 각각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 임 : 지형도면]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393호(2004.11.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서울특별시동작구 고시 제2004-107호(2004.12.27)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55호(2016.06.0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한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변경 계획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의 명칭: 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

2) 사업시행구간(변경 없음): 동작구 상도동 159-21~207-5(양녕로~상도동길)

3) 사업의 규모(변경 없음)

가) 도로확장: 폭 2차로→4~6차로, 길이 324m

(지하차도 확장: 폭 2차로→4차로, 길이 230m)

4)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사업의 기간(변경 없음): 2006.11.23 ~ 2018.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 조서

가) 토지·물건 조서의 일부 변경 및 추가: [붙임 조서]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가) 토지·물건 조서의 소유자 및 관계인 일부 변경: [붙임 조서]

8) 공공시설물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77),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02-3708-87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세목조서

[당초 고유번호 26~27]

고유 번호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지 분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경 26 번	211-447	대 3,216	395		한도순	서울시구로구경인로48-14, 103-203(오류동, 동부아파트)	63.60/3,216	경서노동협 등조합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977-20	근저당	가-1-101
					박병원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447 대광빌라가-102	63.60/3,216				가-1-102
					윤명숙	서울시동작구대방동503 대방2단지주공아파트 209-202	63.60/3,216				가-1-103
					김인현	서울서초구반포동994 반포아파트30동301호	63.60/3,216				가-1-104
					이정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7 은하마을 503-101	63.60/3,216				가-1-105
					김경란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447 대광빌라가동106호	63.60/3,216	이성규	인천 연수구 옥련동 634-1 삼성아파트 2-1601	근저당	가-1-106
					김용규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447 대광빌라가동107호	63.60/3,216	조흥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	근저당	가-1-107
					김희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16,가동 108호(상도동, 대광빌라)	31.80/3,216	우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근저당	가-1-108
					관용재		31.80/3,216				
					윤숙영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447 대광빌라가동109호	63.60/3,216	영등포농업 협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97-2	근저당	가-1-109
					조옥석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16,가동 110호(상도동, 대광연립)	63.60/3,216	외환은행 외 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	근저당	가-1-110
					최문진	전북익산시황등면 용산로 109-47	63.60/3,216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203	근저당	가-2-201
					박주경	서울시동작구상도동 361-135	63.60/3,216				가-2-202
					남양현	충남아산시도고면시전리518	63.60/3,216				가-2-203

토지 세목조서

[당초 고유번호 26~27]

공유 번호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지 분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경 26	211-447	대	3,216	395	신순복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8길 6	63.60/3,216			가-2-204
					이미자	서울시동작구양녕로20길64	63.60/3,216			가-2-205
					김동현	서울시동작구장승배기로4길9, 108-604(상도동,상도더샵아파트)	63.60/3,216			가-2-206
					김용기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447 대광빌라가동207호	63.60/3,216			가-2-207
					임주란	서울시노원구상계동633 주공아파트1420-304	63.60/3,216			가-2-208
					임돈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11-447대광빌라 가동 209호	63.60/3,216			가-2-209
					유지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16,가동 210호(상도동, 대광연립)	63.60/3,216	국민은행	서울시중구남대문로 84(을지로2가)	가-2-210
					장정숙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16,가동 301(상도동, 대광빌라)	63.60/3,216	우리은행	서울시중구소공로51 (회현동1가)	가-3-301
					박명자	광주시북구호동로53(문흥동)	63.60/3,216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66(을지로2가)	가-3-302
					노순자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11-447 대광빌라 가-303	63.60/3,216	외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81	가-3-303
					최다남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447 대광연립가동304호	63.60/3,216			가-3-304
					오태식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447 대광빌라가동305호	63.60/3,216			가-3-305
					이혜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암로22길 30,3층동303호(제기동)	63.60/3,216			가-3-306

토지 세목조사

[당초 고유번호 26~27]

고유 번호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지 분	성 명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변경 26	211-447	대	3,216	395	체기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26, 102-803(상도동, 아이파크상도동)	63.60/3,216	최상용 외 1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로 26, 212-305(대실역청아람2단지)	근저당	가-3-307
					이현규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11-447 대광빌라가동 308호	63.60/3,216				가-3-308
					한성준	인천서구 삼곡동 238-1태영아파트4-606	31.80/3,216				가-3-309
					이영주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11-447 대광빌라가동 310호	31.80/3,216				가-3-310
					정춘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16, 나동 101(상도동, 대광빌라)	63.60/3,216	우리은행 외 1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근저당	나-1-101
					서양선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11-447 대광빌라나동 102호	66.40/3,216	조흥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	근저당	나-1-102
					서효석	경기도 남양주시 외부읍 덕소로 67-14, 101-101(인정하이츠)	66.40/3,216	우리은행			나-1-103
					김영민	충청남도 아산시 득산동 392-2부영아파트 101-806	66.40/3,216				나-1-104
					임인숙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33-11 건영신림5차아파트 306호	66.40/3,216				나-1-105
					김수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10-169	66.40/3,216				나-1-106
					강순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뚝배기개발지구 제4-4블록 호수마을서해그린빌 1109-304	66.40/3,216				나-2-201
					최준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1길 115-8, 401호(상도동, 보람빌리지)	66.40/3,216				나-2-202

토지 세목조서

[당초 고유번호 26~27]

고유 번호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지 분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법정 26 동작구 상도동	211-447	대	3,216	395	김두재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16,나동 203호(상도동, 대광연립)	66.40/3,216				나-2-203
					박희목	서울시동작구상도동산65 -104대광빌라나동204호	66.40/3,216				나-2-204
					조애형	서울특별시구로구오류로8다길3,1동303호 (오류동, 우석빌라)	66.40/3,216	기업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	근저당	나-2-205
					이진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447 대광빌라나동206호	66.40/3,216				나-2-206
					장지호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63길12,비동22 3호(삼성동,엘지전통예를라트)	66.40/3,216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51(회현동1가)	근저당	나-3-301
					박연근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4-94	66.40/3,21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류	나-3-302
					유승묵	전남동광양시태인동1320-41 동광아파트102동210호	66.40/3,216				나-3-303
					강혁민	서울구로구 오류동342영풍마드레빌아파트 107-703	66.40/3,216				나-3-304
					오은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16,나동 305호(상도동, 대광빌라)	66.40/3,216	신한은행	서울시중구태평로 2가120	근저당	나-3-305
					임영순	서울시강동구천호동217-132 동아하이빌아파트103-1904	66.40/3,216				나-3-306
					조진근	충북청주시상당구사천동 229-1신동아아파트12-107	112.80/3,216	하나은행외4	서울시중구을지로66 (을지로2가)	근저당	다동 (상가)

고유 번호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지 분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 관계	
경 27 번	211-378 대 동작구 상도동		2,014	359	박옥순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378 정학빌라기동101호	87/ 2,014	국민은행	서울시중구남대문로27가19-1	근저당	가-1-101
					장은태	서울시동작구상도동208-17	87/ 2,014				가-1-102
					이신림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378 정학빌라기동103호	87/ 2,014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시중구남대문로57가6-1	근저당	가-1-103
					김제섭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78-41	87/ 2,014				가-1-105
					노홍우	서울관악구신림동1694신림현대아파트11 2-806	87/ 2,014				가-1-106
					이무엽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378 정학빌라기동107호	87/ 2,014	하나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66 (을지로2가)	근저당	가-1-107
					서문희	경기도안산시상록구정제1로59 (부곡동)	87/ 2,014	국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가-2-201
					이봉희	서울시동작구상도동159-111 메이저빌202	87/ 2,014				가-2-202
					김유배	서울특별시동작구양녕로212, 가동203호 (상도동, 정학빌라)	87/ 2,014				가-2-203
					나중영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211-378 정학빌라기동205	87/ 2,014	신한은행 외5	서울시중구대평로 27가20	근저당	가-2-205
					배윤희	서울영등포구당산동4가29	43.5/ 2,014				가-2-206
					유현준	한강아파트101-607	43.5/ 2,014				
					이시환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211-378 정학빌라기-207	87/ 2,014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소공로51 (회현동1가)	근저당	가-2-207
					송영광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19길20,401호 (상도동, 현대캐슬)	43.5/ 2,014	영등포노업 협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도신로194 (신길동)	근저당	가-3-301
					송영선		43.5/ 2,014	영등포노업 협동조합	서울시영등포구도신로194 (신길동)	근저당	

토지 세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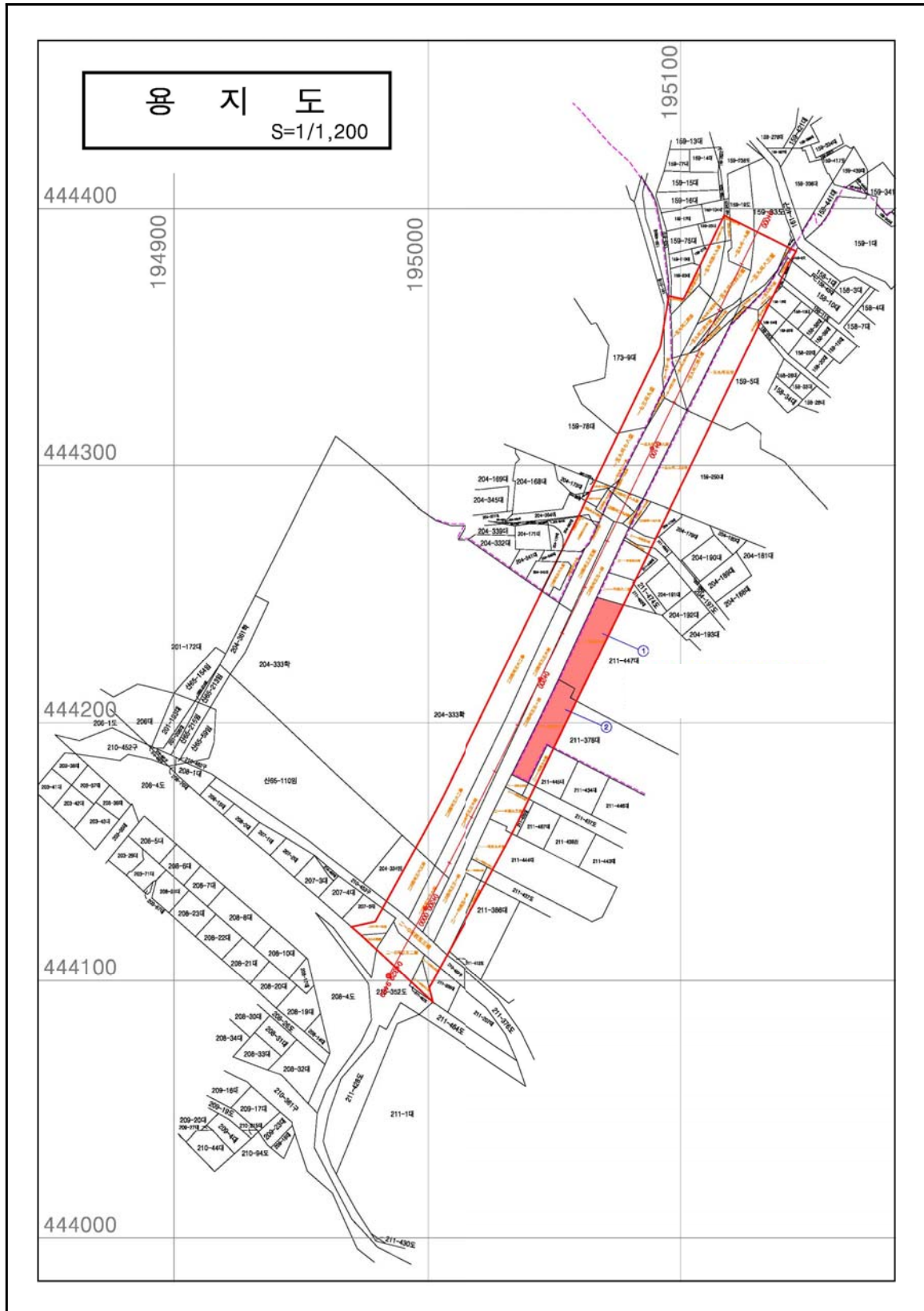
[당초 고유번호 26~27]

고유 번호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m ²)	면적면적 (m ²)	소 유 자		지 분	성 명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경 27	21-378 대	동작구 영등포	2,014	359	윤양로	인천연수구동충동918 조흥아파트102-102	43.5/ 2,014				가-3-302
					정태희	서울동작구대방동500 성원아파트103-1808	43.5/ 2,014				
					박청환	서울강남구도곡동963 역삼레이크아파트109-504	43.5/ 2,014	하나은행	서울시중구을지로66 (을지로2가)	근저당	가-3-303
					김상혜		43.5/ 2,014				
					박성용	서울강서구가양동1459 동신아파트104-403	87/ 2,014	신한은행	서울중구태평로2가120	근저당	가-3-305
					고광희	서울시동작구211-378 청학빌라에이동306호	87/ 2,014	영등포농업 협동조합			
					유춘자	서울시동작구211-378 청학빌라가동307호	87/ 2,014	조흥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	근저당	가-3-307
					김이준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동211-378 청학빌라나-101	74.66/ 2,014	서울신용보 증재단 외1	서울시마포구마포대로163 (연남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가압류, 근저당	나-1-101
					전원표	서울시동작구상동211-378 청학빌라나동102호	74.66/ 2,014				나-1-102
					이춘희	서울특별시동작구보라매로9가길15,102호 (신대방동)	37.33 /2,014				나-2-201
					신정용	서울특별시동작구영등포212,나동201호 (상도동, 청학빌리지)	37.33/ 2,014	신한은행 외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20(태평로2가)	근저당	
					조삼상	경기도남양주시별내면정학리409 청학주공아파트308-206	74.66/ 2,014				나-2-202

토지 세목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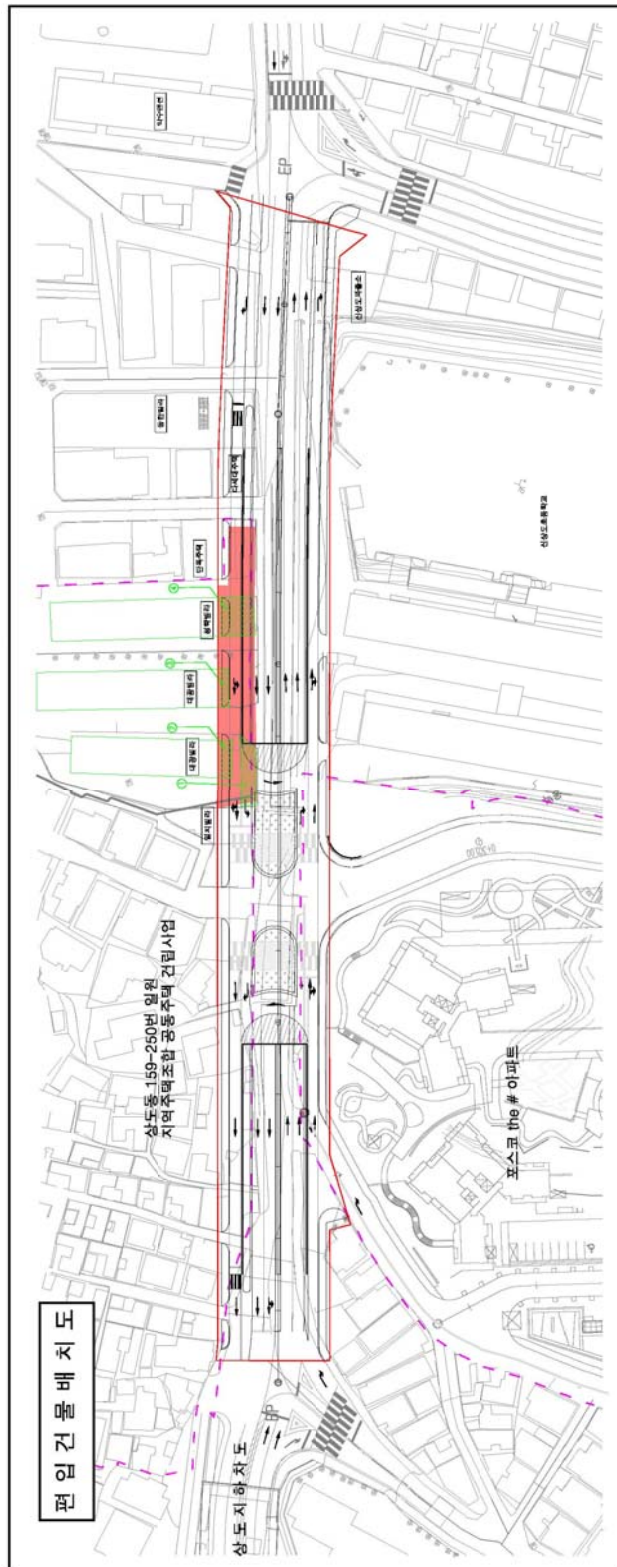
[당초 고유번호 26~27]

고유 번호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m ²)	평면면적 (m ²)	소 유 자		지 분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변경 27	동작구 상도동 211-378 대		2,014	359	이지현	경기도구리시인창동663-1주공아파트103-1104	74.66/ 2,014				나-3-301
					인필국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378 청학빌라나동302호	74.70/ 2,014				나-3-302
2필지	합 계		5,230	754							



별첨 조서

고유 번호	소재지	위치	지번	별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 적	건 물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추가 1	동작구 상도동	0km170 (좌)	211-447 대	상가	슬라브 (2층)	152	조진근	충북청주시상당구사천동229-1 신동아아파트 12-107 - (상가소유자)	효성유치원
추가 2		0km175 (좌)	211-447 대	빌라	슬라브 (3층)	123	서양선	서울특별시동작구양녕로216,나동101 (상도동, 대광빌라) - (101 호소유자)	대광빌라 나동
							최준용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백동동백택지개발지구4-4블럭호 수마을서해그랑블1109-304 - (201 호소유자)	
							장지호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63길12,비동223호(삼성동,엘지 선릉에클리트) - (301 호소유자)	
추가 3		0km190 (좌)	211-447 대	빌라	슬라브 (3층)	93	한도순	서울시구로구경인로48-14,103-203 (오류동,동부아파트) - (101 호소유자)	대광빌라 가동
							최운진	전북익산시황등면용산로109-47 (201 호소유자)	
							장정숙	서울특별시동작구양녕로216,가동30 1(상도동, 대광빌라) - (301 호소유자)	
추가 4		0km215 (좌)	211-378 대	빌라	슬라브 (3층)	327	박옥순	서울시동작구상도동211-378 청학빌라가동101호 - (101 호소유자)	청학빌라 가동
							서원희	경기도안산시상록구정제로59 (부곡동) - (201 호소유자)	
							송영광 외1인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로19길20,401호 (상도동, 현대캐슬) - (301 호소유자)	
4 건	합	계				695			



이
공
사
해
여
수
내
내
여
평
단
하
비
남
세
내
이
여
구
재
이
평
내
파
※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343호

소방시설업 폐업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의거 소방시설업 폐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7년 2월 16일

등록번호 (등록일)	업 종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폐업일
제 영등포2014-12호 (2014.10.28.)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기계)	(주)녹색전기엔지니어링	영등포구 양평로16 502호 (당산동6가)	2017.1.2.
제 종로2007-3호 (2007.11.20.)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전기)	삼양에코너지(주) (김윤희)	종로구 삼일대로461 102동 205호	2016.12.5.
제 광진2005-20호 (2005.8.26.)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한미설비(주) (김두성)	광진구 천호대로110길 104(능동)	2016.12.31.
제 서초2001-3호 (2001.7.24.)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전기)	주식회사 자영엔지니어링 (여준구)	서초구 방배중앙로 208(방배동), 4층	2017.1.10.
제 서초2010-13호 (2010.7.13.)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기계)	주성엠이씨 (김해성)	서초구 동산로 30 (양재동)	2017.1.17.
제 강동1999-1호 (1999.9.28.)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에이젯엔지니어링 (이황영)	강동구 천호옛12길 18 (성내동)	2016.12.31.
제2016-02-00081호 (2016.2.15.)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	(주)우리기연 (한상규)	서초구 명달로 118 (서초동)	2017.2.2.
제 서초1997-23호 (1997.10.31.)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기계)	고도기술사사무소 (김충환)	서초구 방배로15길 7 ,3층(방배동)	2017.1.31.
제 도봉2015-1호 (2015.3.16.)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전기)	주식회사 서울이에프씨 (서동현)	도봉구 도봉로 461.지하103호 (쌍문동, 우림빌딩)	2017.2.1.
제 광진2009-24호 (2009.12.17.)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영선전설 주식회사 (송영훈)	광진구 천호대로112길 10, 303호(능동, 동진빌딩)	2017.2.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354호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승인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

1. 승인일자 : 2017. 2. 7.
2. 관리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주요내용

시설명	사업시행자	위치	형질변경 면적(㎡)			건축 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삼육대학교 교사시설	학교법인 삼육학원	노원구 공릉동26-21	173,141	173,141	증감 없음	114,608	114,358.49	감 249.51

3.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2133-2040), 노원구 공원녹지과(2116-3972)
4. 열람기간 : 시보게재 다음일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359호

2016년 수도권(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16년 수도권(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

1. 승인일자 : 2017. 2. 6.
2. 관리계획 변경의 주요내용

시설명	시설의세분	사업시행자	위치	면적(㎡)		비고
				토지형질변경	건축연면적	
육군 제9703부대	국방군사시설	국방부장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쇠동 115-7번지 일원	605.02	3,454.80	
육군 제3697부대	국방군사시설	국방부장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340번지 일원	16,332.16	12,502.58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사 업 시행자	위 치	면 적(㎡)		비고
				토지형질변경	건축연면적	
육군 제2808부대	국방군사 시설	국방부장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산93번지 일원	4,921.00	6,797.00	
육군 제1596부대	국방군사 시설	국방부장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산100-14번지 일원	4,722.28	1,438.29	
육군 제6019부대	국방군사 시설	국방부장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산12-494번지 일원	49,735.00	11,312.00	

※ 국방군사시설의 세부내용은 열람을 제한할 수 있음

3.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2133-2040), 강서구 공원녹지과
(2600-4177), 은평구 공원녹지과(351-8022), 관악구 공원녹지과
(879-6543), 서초구 공원녹지과(2155-6892)
4. 열람기간 : 시보게재 다음일로부터 14일간
5. 관계도서 : 게재생략
6. 공고방법 : 서울시보에 게재하고, 해당 자치구 게시관에 게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384호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 개정 공고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조에 의거
운영중에 있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을 개정하고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 ①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기성 시가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시대적 가치가 남아 있는 건축물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
 3. 옛 정취 또는 스토리가 있는 골목길의 보존 또는 조성이 필요한 지역
 4.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서울 휴먼타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 전유면적 50㎡ 이하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한 지역
- ② 구역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건축물 동수가 전체 동수

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도록 정하였거나 예정인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구역지정 절차)

① 구역 지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1. 구청장은 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별표1]의 서식에 구역지정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사전 협의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라 협의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 구청장에게 의견을 통보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시장의 의견을 반영한 구역지정안을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14일간 구보에 열람공고한다.
4. 구청장의 주민의견 검토한 후 허가권자는 구역지정 결정공고를 한다.

② 열람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역명
2. 구역면적
3. 지정목적
4. 건축물 리모델링·보전(건축물 외관 디자인 포함)에 관한 사항
5. 골목길의 보전·개량 또는 조성에 대한 사항
6. 연면적 증가에 관한 사항
7. 구청장의 구역내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8.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허가권자의 구역지정 결정공고 후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지형도면(축척 1/500 ~ 1/1,500)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조①항4호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계획)에 대한 공청회 또는 열람공고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건축디자인계획 수립) ①구청장은 구역 지정 공고 이후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건축물 및 골목길 보전에 대한 건축디자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2조①항4호에 해당하는 지역(구역)에서 건축디자인 표준지침을 수립한 경우 건축디자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구역 및 계획의 정비) 구청장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후 3년 경과 시 구역 및 건축디자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시 시장과 협의를 거쳐 정비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2. 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리모델링 건축물의 연면적증가에 대한 심의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리모델링에 따른 연면적증가 기준)

- ①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호가목2)에 따른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연면적 증가는 연면적 합계 3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에서 정한다.
 1. 건축물 외관 계획(기존건축물 보전, 옥상 경관개선, 간판정비, 건축물 재료 및 색채 준수, 외부공간 디자인 준수(담장,문패,우체통), 창문 · 발코니 외관 및 형태 준수 등) : 20% 이하로 하되 건축디자인계획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구조보강 계획(구조 및 내진보강 등) : 10% 이하로 하되 구조기술사 확인
 3. 에너지 절약 계획(건축물 단열기준 준수, 건축물 에너지 절감(단열시공),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 10% 이하
 4. 골목길 조성 등 시와 자치구 정책에 관한 계획 : 20% 이하
- ② 구역 외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주택으로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 ③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연면적증가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10% 범위 내에서 정한다
- ④ 소형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하여 지정된 구역은 기존 건축물 전체 또는 연면적증가하는 면적을 전유면적 5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 등)

- ①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감리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항목이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완료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2. 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및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 (☎02-2133-7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7-386호
2017년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지원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2017년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업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대상기간 : 2016.1.1.~12.31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사업 또는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 8대 신성장동력산업 :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

○ 지원조건

-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기업

- 2016년 신규고용으로 증가한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이 전년도(2015년) 대비 10명을 초과한 기업(단, 2016년 신설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한 기업)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내국인을 대상으로 함

◆ 상시고용인원 :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인원(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②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신청일 현재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외국기업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비율은 제외함

-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2016년 신규 고용하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

☐ 지원금액

- 1기업 당 4억원 이내 (고용보조금 2억원 이내 + 교육훈련보조금 2억원 이내)
 - 신규고용 10인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하, 최대 6개월분
- 지원예산 : 480백만원
 - ※ 예산액에 비해 신청 기업이 많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2. 16. ~ 4. 28.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전화번호 : 02-2133-5356 (보조금 지원 담당자)
 - e-mail : ks.moon@seoul.go.kr
 - 주 소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투자유치과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붙임 별지 제2호 서식) 1부
 - 상시 고용현황보고서(붙임 별지 제3호 서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 최근 5년 이내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입금확인서 사본 1부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15.1월~12월분, '16.1월~12월분) 사본 1부
 -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 1부(신청일 현재 www.ei.go.kr에서 출력)
 - 사업장고용정보현황(고용현황, 퇴사자 2종류로 제출) 1부
(신청일 현재 total.kcomwel.or.kr의 사업장>정보조회>근로자고용
정보현황조회(20103)에서 고용상태 유형별(고용/고용종료)로 출력)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및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각 1부(신청일 현재 www.4insure.or.kr에서 출력)
 - 근로자명단('15.1월~12월분, '16.1월~12월분) 사본1부
 - ※ 입사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표시 요망
 -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 1부
 - 회사소개서(최근 5년 이내 외국인투자실적 및 향후 투자계획
(2019년까지) 포함)
 - 건물사용권 증명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교육훈련 실시내용 및 지출 증빙자료 1부
 - 보조금 신청자의 인적사항
 - 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전화번호(휴대폰 등), 외국인등록번호
 - 내국인 : 주민등록표(초본), 전화번호(휴대폰 등)
 - ※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이행사항

- 보조금의 수령 및 지출에 필요한 계좌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인건비(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수령 기업은 보조금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은 보조금 신청 전년도(2016년)의 상시고용인원 및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에 따른 보조금은 환수함
 - 상기 지급조건 위반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받은 경우
 - 사업장을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 기타사항

- 자세한 문의 사항은 투자유치과 담당자(☎02-2133-5356, ks.moon@seoul.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 1. 신성장동력산업 표준 분류 1부.
2. 보조금지원신청서 1부.
3. 상시 고용현황보고서 1부.

[별표 2]

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표준 분류

구분	업종코드 및 업종명
1. IT융합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6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2918 사무용 기계 및 장비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 및 구축서비스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2. 디지털콘텐츠산업	33402 영상 게임기 제조업
	58211 온라인,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구분	업종코드 및 업종명
	63910 뉴스제공업
	73901 매니저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공연단체
	90191 공연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3. 녹색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35119 기타 발전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38110 지정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120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38130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38210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3822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8230 건설 폐기물 처리업
	38301 금속원료 재생업
	38302 비금속원료 재생업
	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41224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42110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
	46791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구분	업종코드 및 업종명
4. 비즈니스서비스업	70 연구개발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2 비금융 지주회사
	7153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909 그 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57 교육지원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5. 패션·디자인	73201 인테리어디자인업
	73202 제품디자인업
	73203 시각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6. 금융업	64121 국내은행
	64122 외국은행
	64131 신용조합
	64132 상호저축은행
	64139 기타저축기관
	64201 자산운용회사
	64209 기타투자기관
	64911 금융리스업
	64912 개발금융기관
	64913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64991 기금 운영업
	64992 금융지주회사
	649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
	69400 무형재산권 임대업

구분	업종코드 및 업종명
	65110 생명 보험업
	65121 손해보험업
	65122 보증 보험업
	65131 건강보험업
	65139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65200 재보험업
	66121 증권중개업
	66122 선물중개업
	66191 유가증권관리 및 보관업
	66192 투자자문업
	66201 손해사정업
	66202 보험대리 및 중개업
	66209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7.관광컨벤션	55111 호텔업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대행업
8. 바이오메디컬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86101 종합병원
	86102 일반병원

(뒷 쪽)

[작성요령]

- ① 투자사업명란에는 “○○지역 사업장 신설(또는 증설)의 건”과 같이 기재합니다.
- ② 사업 또는 생산품목란에는 영위, 생산 또는 수행하는 사업 또는 생산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③ 보조금 신청인원은 내국인 신규 고용인원 또는 신규채용 교육훈련 인원에서 10명을 제외한 인원을 기재합니다.
- ※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제출된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보조금의 지원여부와 그 금액은 추후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통보되기 전에 실행된 투자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구비서류

- 1. 회사 소개서(향후 투자계획 포함) 1부
-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본
- 3.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입금 확인서 사본 1부
- 4. [별지 제3호] 상시 고용현황 보고서 1부
- 5.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별지 제3호에 해당하는 근무기간) 사본 1부
- 6. 근로자 명단(별지 제3호에 해당하는 근무기간) 사본 1부

※ 입사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표시 요망

- 7.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 (고용현황, 퇴사자 2종류로 제출) 1부
- 8. 교육훈련 실시내용 및 지출 증빙자료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해당)
- 9.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 1부
- 10. 건물 사용권 증명 서류 1부

[별지 제3호서식]

상시 고용현황 보고서

(단위 : 명)

외국인 투자 기업명			사업등록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고용 현황	전전년도 상시 고용인원	월별 상시 고용인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전년도 상시 고용인원	월별 상시 고용인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							

[작성요령]

- ※ 월별 상시 고용인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원으로서 내국인 근로자 수
- ※ 내국인 근로자 수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394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업 체 명 : (주)한국환경안전연구원
2. 대 표 자 : 이유억(1954.9.17)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에스케이테크노빌 1212(가산동)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13호
6. 등록일자 : 2017. 2.13.
7. 전화번호 : 02-3397-003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39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81호(2008.03.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08-193호(2008.03.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54호(2008.05.0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433호(2009.11.0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고시, 제2012-156호(2012.06.21.), 제2013-434호(2013.12.19.) 및 제2016-312호로 변경 고시한 『검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전화 02-2133-8087) 및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전화 02-3708-257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위치
 - 동대문구 회경동 회경여중고 ~ 중랑구 면목동 동일로 사거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사업의 명칭 : 검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32,996m^2$
- 사업의 규모
 - 본교량 : 폭 $18.24m$, 연장 $235m$
 - 접속교량 : 폭 $9m$, 연장 $160m$, 접속램프 2개소
 - 도로확장 : 폭 $20m \rightarrow 30m$, 연장 $750m$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울특별시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5. 사업기간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 2017년 1월 31일

구 고 시

◆ 용산구고시 제2017-15호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42호(2006.04.20)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6-49호(2006.10.26),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7-17호(2007.6.7),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53호(2007.7.26),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7-42호(2007.9.6),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9-15호(2009.4.3),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0-4호(2010.3.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0호(2010.12.2),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1-99호(20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2호(2012.5.10),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2-73호(2012.7.13),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2-97호(2012.9.27),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2-104호(2012.1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5호(2012.11.29),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2-130호(2012.12.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3호(2013.11.07),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3-140호(2013.12.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91호(2015.07.0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27호(2016.04.21.)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용 산 구 청 장

1. 정비구역 지정

- 가. 정비구역의 명칭 :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 나.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없음
- 다.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없음

2. 정비계획

-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4	53,066.1	4	30,393.4	한강로3가 63-70일원	주거복합 (주거,업무,판매 및 종교)	60이하	805이하	150이하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건립세대수		기 정	- 1,155세대(임대주택 197세대 포함)					당초 세대수의 1.3% 감소	
			변 경	- 1,140세대(임대주택 194세대 포함)						
	주거비율		- 70%이하(구역전체 주거비율 40%이하)							
심의완화 사항	기준용적률		- 246.18%							
	허용용적률		- 600%이하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량							
			구분		인센티브 항목				인센티브량	
			계획유도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권장용도,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70%이내	
	친환경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 빗물관리시설설치				30%이상			
상한용적률		- 805%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α × 가중치)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 간선변 : 업무·상업기능 배치 - 이면부 : 주거기능 배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한강로 및 서빙고로변 : 건축한계선 10m -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5m - 연결녹지변 : 건축한계선 3m							
대지내 통로계획			- 공공보행통로 : 3,801.9㎡(공개공지와 연계하여 24시간 일반에게 개방) - 당초 지상2층부 실내공공보행통로는 폐지							
차량출입불허구간			- 한강로변 : 불허 - 서빙고로변 : 차량출입구 설치에 따른 일부구간 출입 허용							
공공시설 등 부담계획			- 26.14%이상 - 건축물내 공공시설 10,048㎡(지상부 5,727㎡)이상 설치후 기부채납							

마.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기정	한강로3가 63-70일원	1,531	1	18,736.51㎡ (전용면적 8,060.09㎡)	197	40.84㎡ ~ 40.98㎡	•4구역 주거동내 197세대 건설 •부지면적은 향후 구체적인 실시설 계 수립시 변경될 수 있음
변경	한강로3가 63-70일원	1,653.47	1	19,286.85㎡ (전용면적 7,848.04㎡)	194	40.22㎡ ~ 40.68㎡	•4구역 주거동내 194세대 건설 •부지면적은 향후 구체적인 실시설 계 수립시 변경될 수 있음

바. 정비사업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변경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변경 지정일로부터 4년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861세대 - 기존 294세대 - 계획 1,155세대	846세대 - 기존 294세대 - 계획 1,140세대	해당없음	

3. 변경사유

- 2016. 9. 9 인가된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2016. 4. 21 정비계획 변경결정된 건립 세대수 계획이 사업시행계획과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고자 건축시설계획 및 임대주택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지형도면 및 정비계획결정도
 -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도서 참조

5.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용산구 도시계획과(☎2199-7412)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북구고시 제2017-2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2차)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67.12.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56호(2006.7.27)로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성북구고시 제2016-163호(2016.1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한성북구 성북동 226-65번지 일대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조성사업(2차)』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작성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2241-366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2월 16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개요(변경없음)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
- 사업의명칭 : 북악산도시자연공원(성북지구) 조성(2차)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6-65번지 일대
- 사 업 면 적 : 101,059㎡ 중 5,772㎡

나.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다.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16. 12. 1. ~ 2017. 12. 31.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변경) : 별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북구 공원녹지과(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2241-36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변경)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2차

연번	기정				변경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동명	지번								
1	성북	226-33	대	364	364	성북	226-33	대	364	364			국 (재정경제원)		
2	성북	226-36	대	400	400	성북	226-36	대	400	400			국 (재정경제원)		
3	성북	226-65	대	482	482	성북	226-65	대	482	482	성북구 성북로 31길 135(성북동)	유상수			
4	성북	226-68	대	353	353	성북	226-68	대	353	353		국(재무부)			
5	성북	226-69	대	1,028	1,028	성북	226-69	대	1,028	1,028		국(재무부)			
6	성북	226-109	임	734	734	성북	226-109	임	734	734	송파구 백제고분로23길 26,503호(삼전동)	김영노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삼선교지점)	노동협동 조합중앙회	근저당권 지상권
7	성북	226-122	임	50	50	성북	226-122	임	50	50	광주광역시 남구 서오충석탑1길 7-1(서동)	재단법인리인 문화재단			
8	성북	226-234	대	2,000	2,000	성북	226-234	대	2,000	2,000		서울시			

토 지 조 서(변경)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2차

연번	기정				변경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관리종류 및 내용
	동명	지번				동명	지번									
9	성북	226-242	대	30	성북	226-242	대	30		성북구						
10	성북	226-251	대	2	성북	226-251	대	2	송파구 잠실동 19 아파트 63동 403호	이종원						
									관악구 남부순환로248길 29(봉천동)	이복성						
11	성북	226-252	도로	18	성북	226-252	도로	18		국(재무부)						
12	성북	226-316	임	183	성북	226-319	임	183	부산 서구 시약로 122.1001호 (서대신동3가, 화인아트빌리지)	박경미						
13	성북	226-300	임	26	성북	226-300	임	26	송파구 백제고분로23길 26.503호(삼전동)	김영노						

토 지 조 서(변경)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2차

연번	기정				변경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관리종류 및 내용
	동명	지번				동명	지번									
14	성북	226-301	대	16	16	성북	226-301	대	16	16		국(재무부)				
15	성북	226-302	대	14	14	성북	226-302	대	14	14		국(재무부)				
16	성북	226-303	대	1	1	성북	226-303	대	1	1		국(재무부)				
17	성북	226-304	대	56	56	성북	226-304	대	56	56		국(재무부)				
18	성북	226-305	임	5	5	성북	226-305	임	5	5		박경미				
19	성북	226-306	임	10	10	성북	226-306	임	10	10	부산 서구 시암로 122.1001호 (서대신동3가, 화인아트빌리지)	박경미				

별첨 2 제 3395호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북악산도시자연공원 성북지구 조성) -2차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면적(㎡)		설계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측량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 종류 및 내용	
1	성북동 226-65 226-270	건물 (주택 및 부수시설)	세멘조	59.306052	54	주거	성북구 성북로 31길 135 (성북동)	유상수				기존무허가
			조립식		92	주거						기존무허가
				-	1	보일러실						신발생무허가
2	성북동 226-33 226-109	건물 (주택)	세멘조	39.6696	74	주거	성북구 하월곡동 60-160	최태양				기존무허가
3	성북동 226-33 226-122	건물 (주택)	세멘조	49.587	118	주거	성북구 성북동 226-33	백정자				기존무허가
4	성북동 226-36	건물 (주택)	세멘조 조립식 등	-	45	주거		미상				신발생무허가
			세멘조 조립식 등	-	81	주거		미상				신발생무허가

◆ 성북구고시 제2017-2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4호(2009.02.05.)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되고, 성북구고시 제2012-66호(2012.05.17.), 제2013-10호(2013.01.17.), 제2017-5호(2017.1.12.)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성 북 구 청 장

가. 변경 결정 취지

- L11 정거장 #5 출입구 구간의 보도폭 확폭에 의한 출입구 조정과 관련하여 보상면적 축소에 따른 일부 면적 조정이 필요하므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을 하기 위함.

나.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조서

가)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철도	도시철도 (L11)	성북구 동선동 1가 101-4번지 일대	1,614.9	감)3.4	1,611.5	서고 제2009-44 (2009.02.02.)	

다.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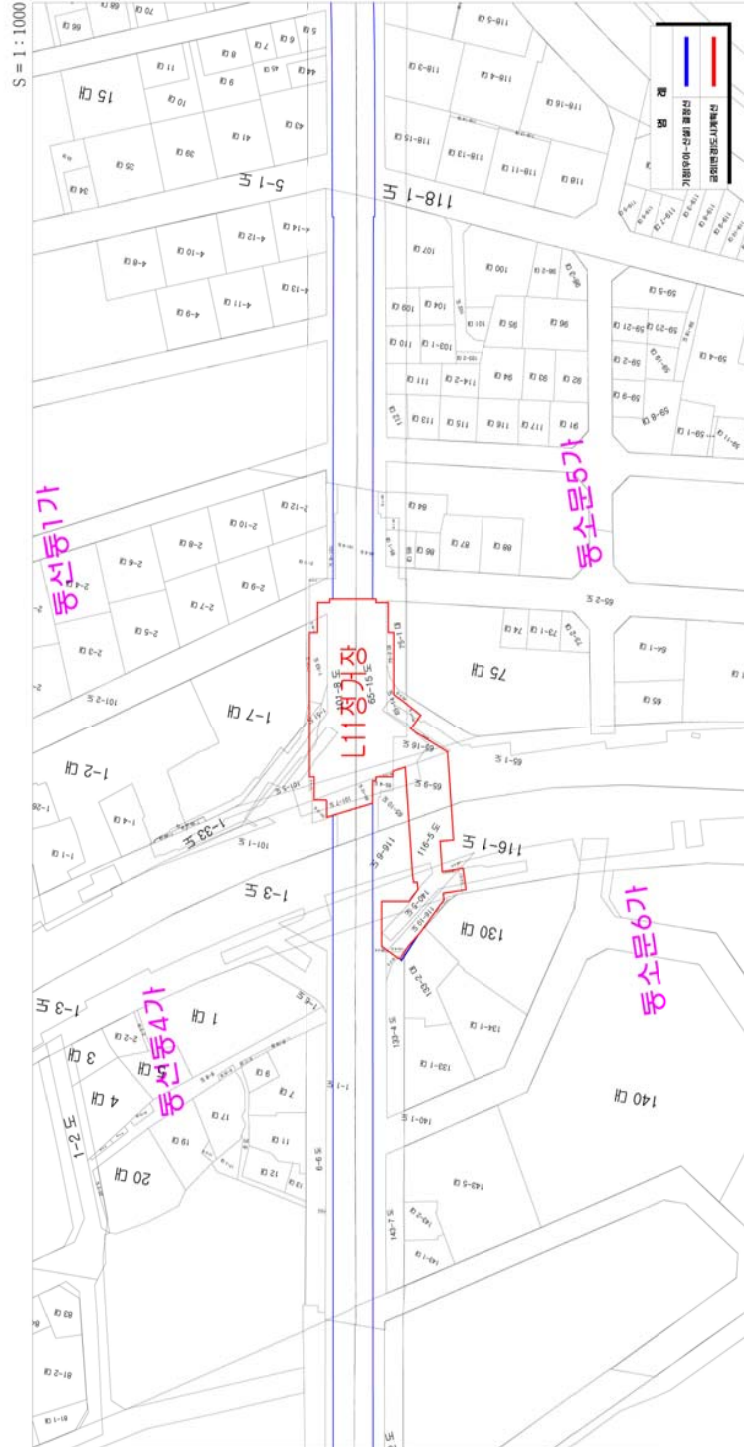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 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사업부(☎722-7189), 성북구청-도시계획과(☎2241-2764)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L11 정거장)



◆ 성북구고시 제2017-27호

동선지구중심외 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동선지구중심외 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고시 전까지 계획방향과 상충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지역환경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성 북 구 청 장

1. 제한구역

- 구역명 : 동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성북구 동선동1가 71번지 및 보문동5가 10번지 일대
- 면 적 : 189,529㎡(동선), 56,207㎡(보문)

2. 제한사유

- 상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계획방향과 상충하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 등 지역환경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3.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한 것으로 봄

4. 제한대상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
-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단,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사항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
- 건축법 제83조에 의한 옹벽 등의 공작물예의 준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 지적법 제19조에 의한 토지의 분할

5. 제한 예외대상

-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기착공된 사업

- 기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사항
- 성북구에서 발주하는 시설물의 건축 및 대수선
-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의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8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3개층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8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규모 이외의 건축물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① 화재, 천재지변에 따라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②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③ 건축하고자 하는 획지의 건축계획이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 및 수립 중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고 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④ 공공시설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6.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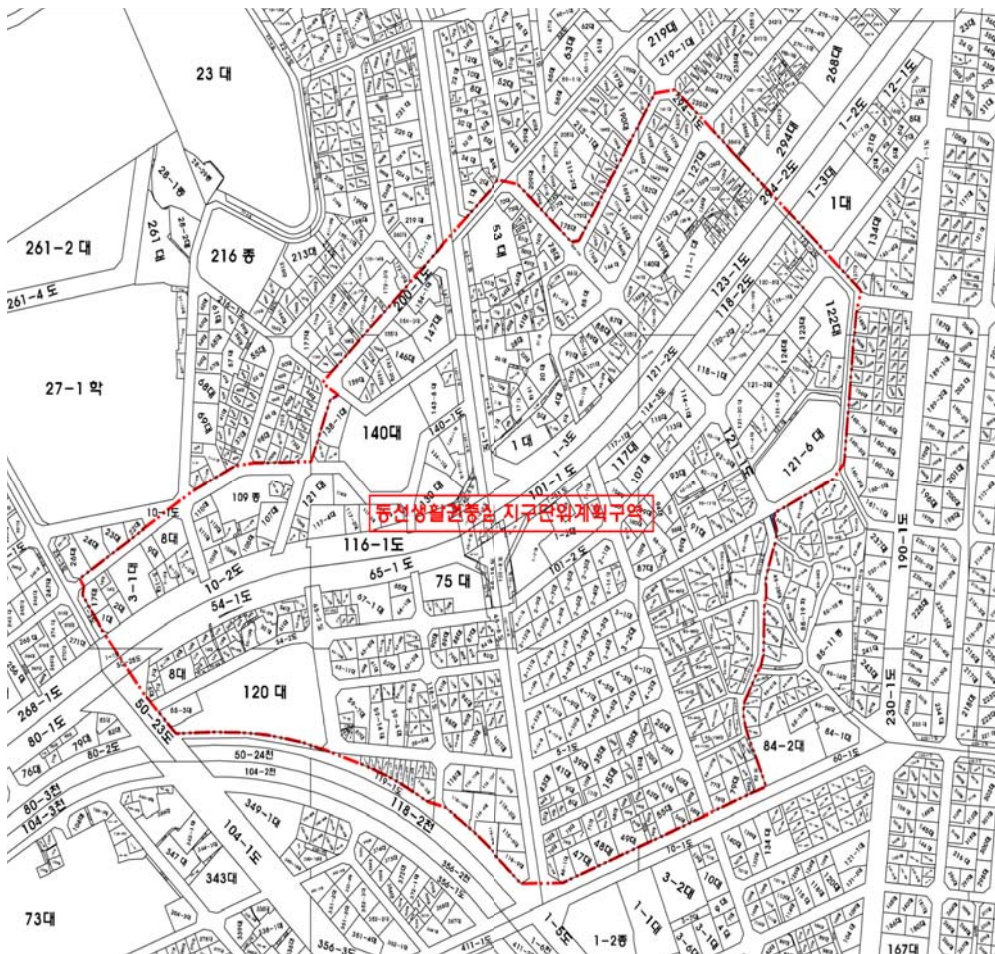
7. 본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재생디자인과(☎ 2241-2766)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선지구중심 외 1개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형도면

- 동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선지구중심 외 1개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형도면

- 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양천구고시 제2017-7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양천구 신정동 313-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서울남부지방법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건축과(☎2620-355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2월 16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3-1. 서울남부지방법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 명 칭 : 서울남부지방법원 별관 증축공사

다. 사업규모

- 대지면적 : 29,668.90㎡
 - 건축규모
 - 기정 :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33,890.04㎡
 - 변경(증축) :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42,387.25㎡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8,497.21㎡ 별관동)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7.07월/2018.08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불 임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대지위치	시설용도	면 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의 권리명세	
1	신정동 313-1	공공업무시설	29,668.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국)법무부/ (국)대법원	-	-	-	

◆ 동작구고시 제2017-8호

도시관리계획(원불교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84, 85호(2013.3.21.)로 용도지역 결정(변경), 지구단위 계획 및 계획결정 고시된 동작구 흑석동 1-3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대지 내 공개공지 위치 및 조성방법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동 작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원불교 100년 기념관 및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을 위한 서울시 건축위원회 자문 및 동작구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2. 지구단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사항

가. 기타사항에 관한 변경결정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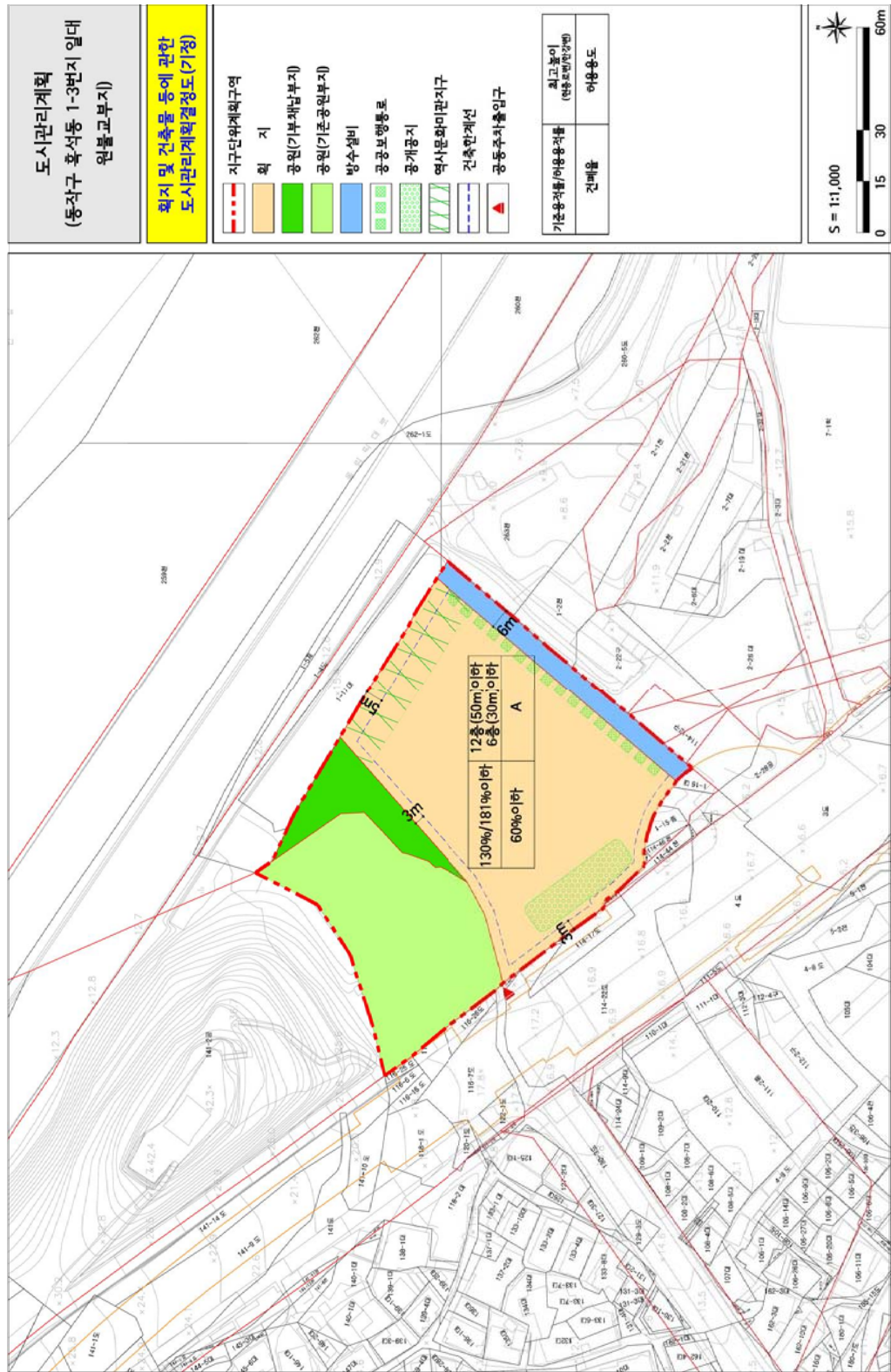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흑석동 1-3번지 일대	공개공지	기정	• 공개공지는 현충로변 전면공지 및 기 조성된 흑석역공원과 일체화한 형태로 계획하여 휴게공간과 보행공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보행에 지장이 없는 형태로 조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도로변(현충로변)에 접하여 공개공지를 조성한 것으로 봄 • 현충로변 공지, 건축물내부공지, 한강접근 공공보행통로를 연계 조성하여 개방감 확보 • 공개공지는 본 지침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서 규정한 조성방식에 의거하여 설치 - 폭10m 이상으로 조성하되, 다중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성하고, 야간조명 등을 설치 운영	결정도 참조
		변경	• 공개공지는 기 조성된 흑석역 공원과 일체화한 형태로 계획하여 휴게공간과 보행공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보행에 지장이 없는 형태로 조성 • 흑석역 공원, 건축물내부공지, 한강접근 공공보행통로를 연계 조성하여 개방감 확보 • 공개공지는 본 지침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서 규정한 조성방식에 의거하여 설치 - 폭10m 이상으로 조성하되, 다중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성하고, 야간조명 등을 설치 운영 • 공개공지가 건축물출입구 통로와 간섭이 되지 않게 순수 공개공지 구역 확보 - 공개공지의 조정, 식재는 자연지반, 인공지반 등을 고려하여 식재계획	결정도 참조

3. 관계도면 : 지형도면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경미한 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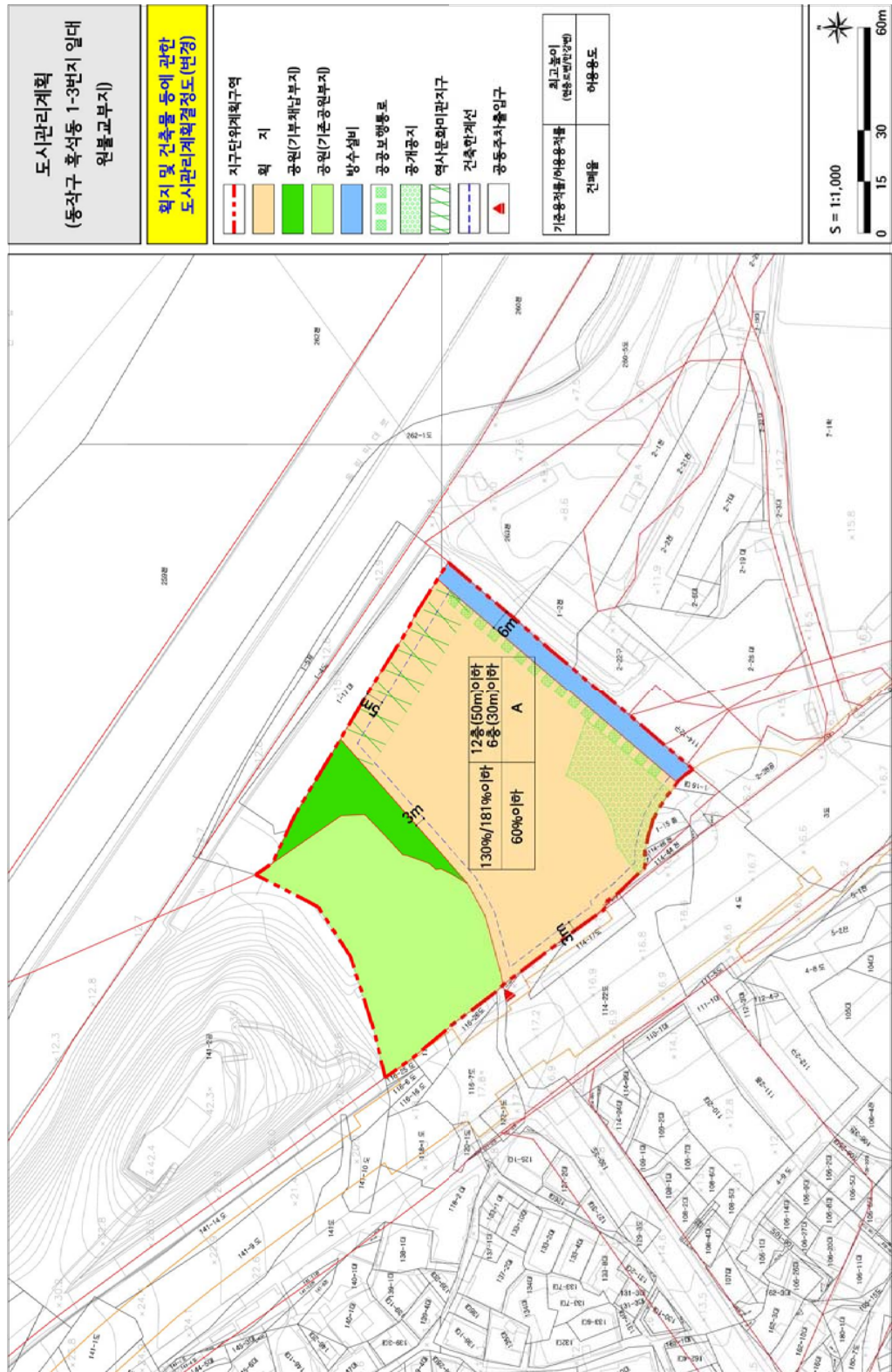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동작구 도시계획과(☎820-973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기정) >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변경) >



◆ 관악구고시 제2017-8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1. 「건설부 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4-360호(2014.10.23)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22호(2017.01.12)로 열람공고한 ‘삼성동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저촉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수령자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879-657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2월 16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관악구 삼성동 산86-6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명 칭 :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삼성동 동네뒷산공원화 사업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라. 사업규모

- 1). 위 치 : 관악구 삼성동 산86-6번지 일대
- 2). 면 적 : 15,000㎡
- 3). 내 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마.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지장물조서 : 붙임문서 참조

사. 열람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현실적인 이용상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종류 및내용
1	삼성동 산86-6	임야	임야 경작	39,939	14,617	해주정씨 보덕공파종중		관악구 봉천동 1563-24			
2	삼성동 327	전	주차장 농지	383	383	해주정씨 보덕공파종중		관악구 봉천동 1563-24			

지장물 조서(건물)

연번	소재지 (구지번)	물건 종류	구 조	면적(㎡) 및 규격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세대주	세대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관악구 광신길 142 (관악구 신림동 산86-6)	주택 (무허가)	블럭조	84	해주정씨 보덕공파종중	관악구 봉천동 1563-24					
		음식점 (무허가)	판넬	72							

◆ **강남구고시 제2017-22호****대치동 구마을 제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2호(2013.11.28)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강남구 고시 제2015-85호(2015.07.16) 및 강남구 고시 제2016-49호(2016.04.28)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된 대치동 구마을 제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경미한 사항)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강 남 구 청 장

1. 정비구역 지정 (변경없음)

- 1) 정비사업의 명칭 : 대치동 구마을 제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대치동 구마을 제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강남구 대치2동 977번지 일대	14,594.2	-	14,594.2	

2. 정비계획 변경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 계	14,594.2	-	14,594.2	1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14,594.2	-	14,594.2	100	

2)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4,594.2	－	14,594.2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2,137.9	－	2,137.9	14.6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제공 ※공원 : 소공원
	도 로	1,542.4	－	1,542.4	10.6	
	공 원	595.5	－	595.5	4.0	
택 지	소 계	12,456.3	－	12,456.3	85.4	
	택 지1	12,456.3	－	12,456.3	85.4	공동주택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도로

결 정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 정	중로	3	5	12	국지 도로	383.6 (68.8)	대치동1012-57 (대치동1012-70)	대치동1012-81 (대치동1012-70)	일반도로	-
기 정	중로	3	7	12	국지 도로	236.2	대치동1012-70	대치동1012-73	일반도로	-

주1) ()는 정비구역 내 구간임.

나) 공원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공 원	소공원	강남구 대치동 978 일대	595.5	-	595.5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시설의 종류	시 설 기 준	면 적 (㎡)	비 고
어린이놀이터	◦150세대 이상 경우 필수 주민공동시설	167.41	-
경 로 당	◦150세대 이상 경우 필수 주민공동시설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118.19	-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 경우 설치	575.27	-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 (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준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 정	대치동 구마을 제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4,594.2	강남구 대치동 977번지 일대	39	-	-	39	-	-

나)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 정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 정 법적상한	
기 정	대치동 구마을 제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4,594.2	택지	12,456.3	대치동 977번지 일대	공동 주택	60 이하	189.57 이하	220 이하	50 이하, 최고15층 (전용주거지역 경계 50m이외 지역 : 평균 13층이하)
변 경									208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주택공급계획(세대수)							
			구 분		세 대 수		비 고			
			합 계		268 (100.0%)		-			
			전용 60㎡이하		109 (40.67%)		임대 25포함			
			전용 60~85㎡이하		129 (48.13%)		-			
			전용 85㎡초과		30 (11.20%)		-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82.67%								
		변경	◦ 주택공급계획(세대수)							
			구 분		세 대 수		비 고			
			합 계		273 (100.0%)		-			
전용 60㎡이하			107 (39.2%)		임대 22포함					
전용 60~85㎡이하			164 (60.1%)		-					
전용 85㎡초과		2 (0.7%)		-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비율 : 98.83%										

결 정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예 정 법적상한	
심의완화사항		기정	◦ 층수완화 : 전용주거지역 경계 50m이외 지역 : 7층 → 평균 13층이하 ◦ 용적률 완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정비계획용적률(189.57%) → 예정 법적상한용적률(220.00%)							
		변경	◦ 층수완화 : 전용주거지역 경계 50m이외 지역 : 7층 → 평균 13층이하 ◦ 용적률 완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정비계획용적률(189.57%) → 예정 법적상한용적률(208.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인접대지경계선 : 건축한계선 6m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2013.9.13) : 수정가결

◦ 건축계획시 다음 사항을 반영 검토

- 투수성포장, 보도블럭, 트렌치 설치 시 보행 및 자전거 주행 안전을 위한 미끄럼 방지 재질 등 사용 고려
- 우수시 빗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배수펌프, 저류용량 및 시간 등 방재대책 수립

☐ 개발가능(상한) 용적률 산정

구분		산 정 내 용				
기정	토지이용 계획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14,594.2㎡	12,456.3㎡	2,137.9㎡	138.2㎡	1,434.1㎡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획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2,137.9㎡ - 138.2㎡ - 1,434.1㎡ = 565.6㎡ (층수완화 대상면적 대비 10.21%) ＊ 전용주거지역 경계 50m이외 지역(5,541.4㎡)				
	계획(기준) 용적률	●계획용적률 : 170%				
기정	개발가능 용 적 률 산 정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α) ＝ 179% × (1 + 1.3 × 0.0454) ＝ 189.57% ●정비계획 용적률 : 189.57%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20%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565.6 / 12,456.3 ＝ 0.0454 ＊ 허용용적률 ＝ 170%+9%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친환경·신재생에너지설계) (향후 허용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α) ＝ 179% × (1 + 1.3 × 0.0454) ＝ 189.57% ●정비계획 용적률 : 189.57%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08%				

※ 상기 개발가능용적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임

※ 건축시설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계획 (변경)

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면적)	비고 (연면적)
기정	대치2동 977번지 일원	-	-	4세대	43.78㎡	1,899.27㎡ (1,895.17㎡)
				21세대	59.87㎡	
변경	대치2동 977번지 일원	-	-	14세대	35.98㎡	1,148.43㎡ (1,147.85㎡)
				8세대	43.97㎡	

□ 증가용적률에 대한 소형주택 건설계획 (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기정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용적률 산정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20%	-
		정비계획용적률	189.57%	
	증가된 용적률의 50%	●소형주택 건설 규모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20% - 189.57%) × 50% = 15.215% 이상		-
	연면적 환산	●연면적 = 15.215% × 대지면적 = 15.215% × 12,456.3㎡ = 1,895.23㎡ 이상 (계획 1,927.90㎡)		-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계획	●계획 소형주택 공급면적 = 1,927.90㎡ ((59.77㎡×4세대) + (80.42㎡×21세대)) ●세대수 = 25세대 (9.33%), 전용면적 60㎡이하		-
변경	법적상한 및 정비계획용적률 산정	예정법적상한용적률	208%	-
		정비계획용적률	189.57%	
	증가된 용적률의 50%	●소형주택 건설 규모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08% - 189.57%) × 50% = 9.215% 이상		-
	연면적 환산	●연면적 = 9.215% × 대지면적 = 9.215% × 12,456.3 = 1,147.85㎡ 이상		-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계획	●계획 소형주택 공급면적 : = 1,148.43㎡ ((59.40㎡×8세대) + (48.08㎡×14세대)) ●세대수 = 22세대 (8.06%), 전용면적 60㎡이하		-

7)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구 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 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대치동 구마울 제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 기존 : 226세대 • 계획 : 268세대 • 증가 : 42세대	
변 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대치동 구마울 제2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 기존 : 226세대 • 계획 : 273세대 • 증가 : 47세대	

4. 관련도면 : 붙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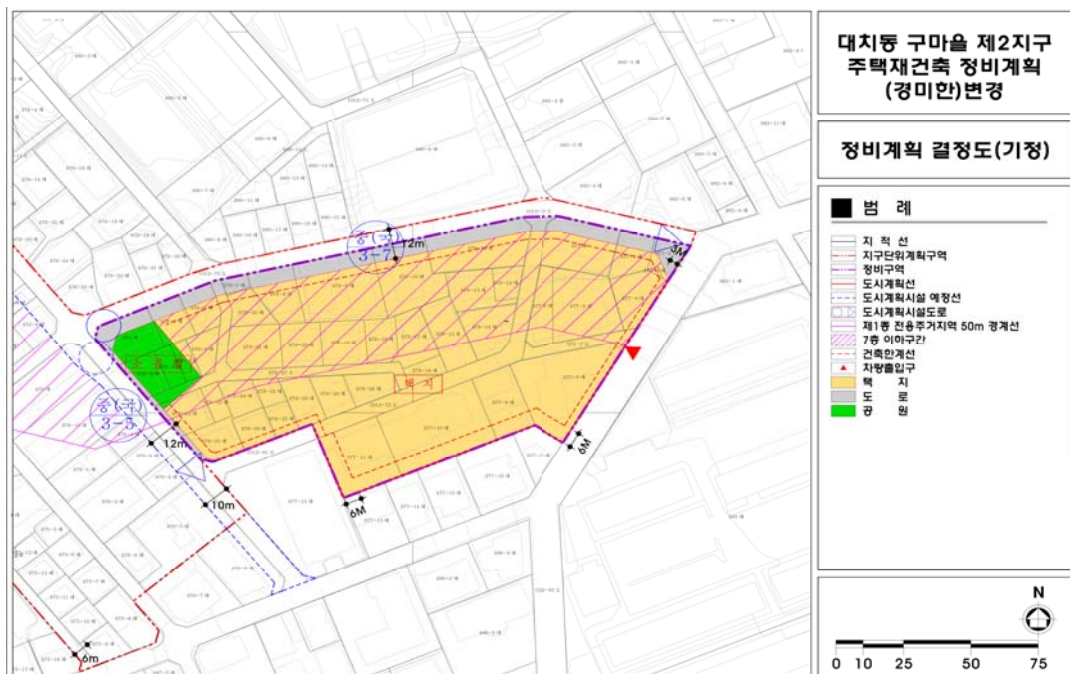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남구청 주택과 (☎ 02-3423-6072)에 관련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 결정도>



※ 용적률 및 세대수 등의 변경으로 도면상의 변경은 없음.

구 공 고

◆ 중랑구공고 제2017-1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 중랑구고시 제14호(2004.02.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망우동 87-40번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중랑구청 건설교통국 도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 날부터 14일간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리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6일
중 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87-40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망우동 87-40번지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규모 : 면적55㎡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7.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아. 열람장소 : 중랑구청 건설교통국 도로과(전화 : 2094 - 2692~5)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 업 명 : 망우동 87-40번지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1	망우동	87-40	대	63	55	송경호	노원구 덕릉로 459-18, 103동 701호(상계동, 미도아파트)	-	-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 망우동 87-40



◆ 도봉구공고 제2017-173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 도봉구고시 제2017-1호(2017.1.5.)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한 아래 도시계획시설(도로,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합니다.
3. 토지(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로과(☎2091-4054)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2월 16일
도 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도봉구 창2동 609-1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도로)사업
- 명칭 :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창림초교 삼거리)

다. 사업규모 및 내용

- 공공공지 조성 : 278㎡
- 도로 모퉁이(가각) 정비 : 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720번지)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17.12.31까지

바. 열람공고 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사. 지장물건의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

토 지 조 서

사 업 명 :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창립초교 삼거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지적 (㎡)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지 분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창동 609-13	대지	286.1	286.1	안명학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28 205동302호(상계2차중앙하이츠)	1/1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권	

물 건 조 서

사 업 명 :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창립초교 삼거리)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단위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창동 609-13	건 물	철근콘크리트조, 세멘트부록조	311.2	㎡	안명학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428 205동302호(상계2차중앙하이츠)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권	
2		영업권 (1층)		1	식	임진수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09-53 선호빌라 301				세입자
3		영업권 (1층)		1	식	박정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86 201동904호(봉천동, 두산아파트)				세입자
4		김종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96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102동901호					
5		영업권 (1층)		1	식	박민규	창2동 629-1 104호				세입자
6		영업권 (1층)		1	식	김동균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10라길 70-11 도도팰리스 601호(창동)				세입자
7		영업권 (2층)		1	식	이순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동 1120-18				세입자

◆ 노원구공고 제2017-117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수락골전망쉼터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687호(1989.11.23.)로 공원조성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6호(2016.08.25.)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44-3번지 수락산도시자연공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수락골전망쉼터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 노원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6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44-3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2) 명 칭: 수락산도시자연공원(수락골전망쉼터) 조성
- 3) 사업내용: 토지보상

다. 사업규모: 21,000㎡

라. 사업시행자: 노원구청장

마.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공고방법: 시보게재

사.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노원구청 공원녹지과(☎2116-3966)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 명세: 별첨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수락산도시자연공원(수락골전망쉼터)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1	상계동 산44-3	임야	임야	108,897	21,000	이순열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길 15, 18동 1301호(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해당없음

◆ 노원구공고 제2017-11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09.)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687호(1989.11.23.)로 공원조성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6호(2016.08.25.)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산152-7번지 수락산도시자연공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 노원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6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152-7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2) 명 칭: 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조성
- 3) 사업내용: 토지보상 및 녹지복원

다. 사업규모: 870㎡

라. 사업시행자: 노원구청장

마.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공고방법: 시보게재

사.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노원구청 공원녹지과(☎2116-3966)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 명세: 별첨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수락산도시자연공원(당고개지구) 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와 내용	
1	상계동 산152-7	임야	임야	4,364	870 (1/28)	정춘옥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295-367				해당없음	
					870 (1/28)	정춘봉	서울 송파구 석촌동 214-17				해당없음	
					870 (1/28)	정춘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장미아파트 9동 702호				해당없음	
					870 (4/28)	정봉근	서울 노원구 공릉동 224-1 국제연립주택 에이동 204호				해당없음	
					870 (4/28)	정점순	서울 마포구 망원동 57-295				해당없음	
					870 (4/28)	정봉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2410-1 현대빌라 402호				해당없음	
					870 (4/28)	정봉학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21-16				해당없음	
					870 (4/28중1/2)	정광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37 대명아파트 101-402				해당없음	
					870 (1/28)	변호선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2708 태장주공2차아파트 206-804				해당없음	
					870 (4/28)	정광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37 대명아파트 101-402				해당없음	
					870 (2/28)	정광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37 대명아파트 101-402				해당없음	

◆ 노원구공고 제2017-134호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02호(2016.10.6)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초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 노원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6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65-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2) 명 칭 :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다. 사업규모 : 2,294㎡

라.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공고방법 : 시보게재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노원구청 공원녹지과(☎2116-3946)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별첨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와 내용	
1	월계동 산65-6	임야	임야	1,585	1,585 (165/2,573)	전승기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602-254				
					1,585 (159/2,573)	최규식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19 한양아파트 1동502호				
					1,585 (139/2,573)	이국현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22-115				
					1,585 (139/2,573)	이광원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347-1				
					1,585 (139/2,573)	황완순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136				
					1,585 (139/2,573)	이정렬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136				
					1,585 (139/2,573)	이지숙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136				
					1,585 (165/2,573)	김순중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8-36				
					1,585 (165/2,573)	김지영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1가 96-14 우방오성타운 105-1701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1	월계동 산65-6	임야	임야	1,585	1,585 (159/2,573)	김의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726 성동마을엘지빌리지3차 308-1503					
					1,585 (159/2,573)	홍정희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6-36 402호					
					1,585 (165/2,573)	김장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180-1 진산마을삼성7차@ 701-1004					
					1,585 (139/2,573)	박종철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124 중앙구로하이츠@ 5-1105					
					1,585 (159/2,573)	김제인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6-36 402호					
					1,585 (165/2,573)	박용길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85-222 주공@ 101-1506					
					1,585 (139/2,573)	나유빈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0-5 대우로카운티@ 104-802					
					1,585 (139/2,573)	김희미자	서울시 강남구 도사대로 92길 10-0 대우로카운티@ 104-802					
					709	정혜승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71 현대4차@ 401-406	조철구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70 금호@ 102-604	근저당권자		
2	월계동 산65-8	임야	임야	709	709							

◆ 노원구공고 제2017-135호

도시계획시설사업(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02호(2016.10.6)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초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편입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 노원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공고 기한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6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2) 명 칭 :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 3) 사업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다. 사업규모 : 1,636㎡

라.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공고방법 : 시보게재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노원구청 공원녹지과(☎2116-3946)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별첨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조성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이용 상황	지적 (㎡)	편입면적 (공유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의 종류와 내용	
1	월계동 산1	임야	임야	5,056	1,000 (1,089.4/5,506)	이구영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716-36					
					1,000 (495.8/5,506)	전정남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21길 44, 단층(쌍문빌라)	류미연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57번길 20(하동)	근저당권자		
					1,000 (3,470.8/5,506)	문영석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090, 3층(공릉동)					
2	월계동 산1-1	임야	임야	200 (90/1,590)	200 (90/1,590)	국현명	서울시 도봉구 창동 61					
					200 (1,439/1,590)	김연준	서울시 도봉구 창동 256-2					
					200 (61/1,590)	국(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3	월계동 746	전	나지	62	62	문영석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090, 3층(공릉동)					
4	월계동 747	전	나지	274	274	윤길자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378-1					
5	월계동 746-3	철도 용지	일부도로	295	100	국(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서대문구공고 제2017-185호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2181호(1966.2.5)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78호(2015.03.19)로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14-76호(2014.06.19)로 실시계획(변경) 고시한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에 대하여, 사업기간, 사업면적 등의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동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게재 다음일로부터 일반에게 14일간 보이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6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백련근린공원)사업 시행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 산11-325호 등 18필지

다. 사업의 규모(면적)

○ 당 초 : 217,945㎡

○ 변 경 : 117,965㎡(감99,98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당 초 : 실시계획고시일 ~ 2020. 6. 30.

○ 변 경 : 실시계획고시일 ~ 2018.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없음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330-19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백련근린공원 토지조서

연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면적(㎡)			실토지 이용현황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당 초	변 경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17,945		117,965						
1	서대문구 홍은2동 180-1호	전	661	661	-	661		서울특별시				소유권외 관리명세
2	서대문구 홍은2동 산19-24호	임야	1,000	1,000	-	1,000		서울특별시				
3	서대문구 홍은2동 산 19-23호	임야	32,752	16,352	-	16,352		서울특별시				
4	서대문구 홍은2동 산19-25	임야	10,500	10,500	-	10,500		서울특별시				
5	서대문구 홍은2동 산19-26	임야	5,900	5,900	-	5,900		서울특별시				
6	서대문구 홍은2동 산 19-1호	임야	23,278	23,278	-	23,278		서울특별시				
7	서대문구 홍은2동 산11-216	임야	6,636	6,636	-	6,636		서울특별시				
8	서대문구 홍은2동 산11-319	임야	12,463	12,463	-	12,463		서울특별시				
9	서대문구 홍은2동 산11-60	임야	49	49	-	49		서울특별시				
10	서대문구 홍은2동 산11-41	임야	352	352	-	352		서울특별시				

○ 백련근린공원 토지조서

연번	지번	지목	지적면적 (㎡)	면적(㎡)			실태지 이용현황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당 초	변 경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외 권리명세		
11	홍은2동 산11-17	임야	99,980	99,980	-99,980	0	임야, 전	박문석	성북구 인암동5가 85-3	(주)신한은행	중구 태평로2가 120 남산금융지점	근저당권	지적면적 119,736㎡에서 서대문구고시 제62호(2011.10.13.)로 홍은동 산11-322번지 분할하여 면적 감	
								박재웅	용산구 이촌동 301-160 현대@ 21-1002					
								박희진	용산구 이촌동 430 엘지한강자이@ 101-601					
								박현선	용산구 이촌동 430 엘지한강자이@ 109-701					
								단정숙	용산구 이촌동 430 엘지한강자이@ 101-601					
								박동영	용산구 이촌동 430 엘지한강자이@ 101-601					
12	홍은2동 산11-320	임야	-	8,650	-	8,650	임야, 전	서울특별시					홍은동 산11-313으로 지적합병	
13	홍은2동 산11-313	임야	36,241	6,765	-	6,765	전	서울특별시						
14	홍은동 산11-321	임야	-	1,030	-	1,030	임야	서울특별시						
15	홍은동 산11-322 (산11-17에서 분할 후 산11-313으로 합병 폐쇄)	임야	-	19,756	-	19,756	공원	서울특별시						
16	홍은동 산19-15	임야	116	116		116	임야	서울특별시						
17	홍은동 산19-16	임야	139	139		139	임야	서울특별시						
18	홍은동 산26-181	임야	318	318	-	318	임야, 도로	서울특별시					산26-133에서 분할	
19	홍은동 산11-325	임야	4,000	4,000		4,000	임야	서울특별시					산11-18번지에서 분할	

◆ 서대문구공고 제2017-188호

도시계획시설(안산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호 및 서울시 고시 제251호(2016.8.18.)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2-56호(2012.3.15.)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안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안산도시자연공원)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이며 본 사업시행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 서대문구청(푸른도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용할 토지 및 물건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산41-29번지 등 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사업의 명칭 : 안산도시자연공원(송죽원) 동네뒷산공원화 사업

다. 사업의 면적 : 10,20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대문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18.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조서참조

사. 사업의 주요내용 : 공원 조성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330-190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홍제동 산41-29	임	3,236	3,236	남영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740번지 연희동 성원아파트 103동 201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홍제동 산41-30	임	2,555	2,555	남영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740번지 연희동 성원아파트 103동 201호				
홍제동 산41-28	임	3,101	1,259	남영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740번지 연희동 성원아파트 103동 201호				
홍제동 산41-2	임	33,835	3,150	남영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740번지 연희동 성원아파트 103동 201호				

◆ 구로구공고 제2017-2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440호(1979.10.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된 『구로5동 밤동산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2차)』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로과(☎860-3124)에 비치하고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6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51-127~551-192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2차)

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 폭8m, 연장5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 익일로부터 14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토 지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2차)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구로동 551-127	대	116	28	신준호	충청남도 천안시 안서동 192-1 안서대림이-편한세상201-606				
2	구로동 571-96	대	32	32	권미자	구로구 새말로 31, 107동 1602호(구로동, 롯데아파트)				
					오세준	구로구 구로동 571-69 401호				
					육재만	구로구 구로동 571-69				
					나복찬	영등포구 구로동 571-69				
3	구로동 551-162	대	42	42	기획재정부					42㎡ 중 도로 17㎡는 무상귀속대상
4	구로동 551-106	대	437	240	기획재정부					무상귀속대상 분할전면적으로 측량후 편입면적 정정예정
5	구로동 551-105	대	182	26	이경애	구로구 새말로 31, 101동 702호(구로동, 롯데아파트)				
6	구로동 551-192	대	15	15	표순기	구로구 구로중앙로32가길 47(구로동)				
7	구로동 551-228	대	29	29	구로구					
8	구로동 551-229	대	8	8	구로구					

※ 상기 지번일부(연번1,4,5)는 분할전 지번으로 토지분할 후 지번 정정 예정임.

물 건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구로5동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2차)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구로동 551-127	창고	조적조	2	창고	신준호	충청남도 천안시 안서동 192-1 안서대림이-편한세상201-606				
2	구로동 551-103	건물	시멘트블록조	19	주택	문상오	구로동 551-103				
3	구로동 551-105	건물	시멘트블록조	23	주택	이경애	구로구 새말로 31, 101동 702호(구로동, 롯데아파트)				

◆ 구로구공고 제2017-261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폐지)결정(안) 열람공고

1. 구로구 오류동 193-12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제6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및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6일

구로구청장

가. 입안사유

- 대상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소유자의 건축 행위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 기능 상실 및 공공공지 설치가 불가능한 부지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을 폐지하고자 함.

나.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결정(안)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폐지)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공공지	오류동 193-12	200	감)200	0	2003-03-15 (구고시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공공공지로서의 기능상실

다. 관련도면 : 생략(구로구청 도시계획과 및 공원녹지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라.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마. 열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860-2955), 공원녹지과(☎860-3086)

구로구청홈페이지(<http://guro.go.kr>→고시·공고),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 금천구공고 제2017-185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71호(2013.8.22.)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금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6일
금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190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 칭 : 서울금천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규 모 : 지하1층/지상6층, 2개동, 연면적 12,685.70㎡
- 면 적 : 9,20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경찰청 (서울금천경찰서)
-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2018.7.31일까지

바.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아.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
계재생략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도시계획과(☎2627-2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공고 제2017-19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34호(2011.11.1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일자산 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2월 16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산102

- 나. 사업시행자 : 강동구청장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일자산 자연공원 조성
 라. 사업의내용 : 공원조성(토지보상)
 마. 규 모 : 토지보상 865㎡
 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8. 12.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자. 열람장소 :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구분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 권리명세	
	계	1필지		865	865						
1	산102	임	865	865	최신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 257동 2402호 (잠실동, 리센츠아파트)				2415/ 4830	
					주명길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67-34, 202동104호(인정하이츠)				1207.5/ 4830	
					김미례	23600 Kentworthy Ave Harbor City, Ca 90710				1207.5/ 4830	

사업소공고

◆ 서울역사박물관공고 제2017-3호

유물 구입 공고

서울역사박물관유물수집및관리조례에 따라 유물구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물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16일
서울역사박물관장

번호	구입 분야(주제)	구입 대상 유물
1	돈의문 (서대문)	○ 조선시대 : 경기감영, 천연정, 영은문, 모화관, 의주로 등 ○ 일제강점기 : 적십자병원, 서대문경찰서, 죽점공립보통학교, 향상여자기예학교 등 ○ 광복이후 : 신문로, 교남동, 교북동, 평동, 천연동, 송월동, 홍파동 등 ○ 서대문정차장 관련 자료, 한미재단주택(행촌아파트) 관련 자료
2	종로 시전	○ 육의전문기, 시전 거래문서, 객주·여각문서, 차용증, 장부책 등 ○ 견지동, 경운동, 공평동, 관훈동 등 시전 및 시전 배후지 자료 ○ 능성 구씨 자료 : 문집, 초상화, 서화, 계획도, 시회 자료
3	한양도성	○ 조선시대 : 한양도성 건설, 운영, 관리, 변화, 방어 자료 ○ 대한제국기 : 한양도성 수리, 성벽처리위원회, 전차노선 개설 ○ 일제강점기 : 한양도성 훼손, 파괴, 수리 및 주변 근대시설물 ○ 광복이후 : 한양도성 발굴, 정비, 사대문 및 도성 복원 자료
4	동대문운동장	○ 일제강점기 : 경성운동장 조성 및 운영, 경기, 체육인 자료, 주변지역 생활사 자료 ○ 광복이후 서울운동장 자료 : 행사, 집회, 경기, 품물시장 등
5	청계천	○ 조선시대·일제강점기 준천 및 오간수문 관련 자료 ○ 백운동천 관련 자료 ○ 경복궁 서쪽 일대(순화방, 백운동, 장동, 옥류동, 청풍계 등) 자료 ○ 청운시민아파트, 옥인시범아파트 관련 도면 및 이미지, 생활사 자료
6	서울 서화	○ 서울 인물 초상화 ○ 조선시대 풍속화 ○ 조선시대 서울 실경 산수화 : 겸재 정선 산수화, 계획도 등
7	서울 지도	○ 조선시대 도성도 : 도성도 및 지도책 등 ○ 근현대 서울지도 : 대한제국기 서울지도, 도시계획 관련 지도 ○ 특수지도 : 군사지도, 교통지도 등
8	일반 서울 자료	○ 한성부, 경화사족, 중인 관련 고문서·전적 ○ 3.1운동 자료 : 3.1운동 민족대표 관련 자료, 3.1운동 관련 기록, 항일운동 자료 등 ○ 서울시장 및 시정 관련 자료 ○ 서울올림픽 자료 : 올림픽경기 자료 및 운동선수 관련 자료, 행사 관련 자료 등 ○ 서울 대중교통 자료 : 전차, 인력거, 버스, 택시 관련 자료 ○ 의상 자료 : 근현대 신분·직분별 의상, 일제강점기 종로 생산 의상 등

2. 참가 자격 :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개인소장자 등
 - ※ 문화재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 문화재 관련사범은 참가할 수 없으며, 소유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 및 불법문화재는 매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접수 기간 : 2017년 2월 10일(금) ~ 2월 26일(일)까지
 - ※ 종료일에 임박하여 접수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니 되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접수 방법 : 홈페이지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중 택일
 - 가. 홈페이지 접수 : www.museum.seoul.kr(매도접수 페이지)
 - 나. 이메일 접수 : sch99@seoul.go.kr
 - ※ 접수완료 후 담당자에게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 서류
 - 가. 홈페이지 접수 : 매도신청 페이지에서 자료입력 및 유물사진 첨부
 - 나. 이메일 접수 : ①, ②번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③유물사진과 함께 송부
 - ① 매도신청서 1통
 -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 이미지 파일 송부
 - 매도신청 유물목록은 ②번 양식에 별도 작성
 - ② 유물목록 1통
 - ③ 유물사진파일
 - 파일명을 유물번호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송부
 - 파일형식 : JPG, GIF, PNG(1점 당 1파일 이상, 1파일 5MB 이하)
 - ※ 사진파일이 많을 경우 압축파일로 변환하여 송부해주세요.
6. 실물 접수 : 서류 심사 후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해 개별 통지하여 실물 접수
 - 가. 실물 접수시 제출 서류
 - 문화재매매업자 :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통
 - 법인 또는 단체 :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통
 - 개인 : 신분증 지참 또는 사본 제출(사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 대리접수시 위임인이 작성한 위임장 1부와 위임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7. 유물 구입 가격 :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함
8. 구입 결정
 - 가. 유물평가위원회 및 운영자문위원회의 평가·심의에 의해 구입 유물 선정
 - 나. 선정 유물에 대해서 인터넷 공개를 통해 불법문화재 여부 검증
 - 다. 최종 선정된 유물의 평가금액에 매도신청자가 동의할 경우 매매계약 체결
9. 소유권 이전 : 계약체결 이후 대금 지급과 함께 유물의 소유권은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이전
10. 기타 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 출처 및 취득경로가 불분명하거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자료는 구입하지 않음
 - 다.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본인에게 통보하여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반환함
 - 라. 유물 접수 및 반환으로 발생하는 운송비 및 제반 비용은 매도신청자 부담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02-724-0157)로 문의

◆ 서초소방서공고 제2017-1호
특정소방대상물 조치명령서(미니레지던스) 공고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주체(미니레지던스-고시원)에 대해 동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조치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처리(이사불명 등) 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서 초 소 방 서 장

1. 공고기간 : 2017. 2. 8. ~ 2017. 2. 21.(14일간)
2. 공고내용

수신 : 박*호(0655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제목 : 특정소방대상물 조치명령서(미니레지던스)

1. 귀하께서 영업하고 있는 위 주소지의 전화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지적사항(불임)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조치명령하오니 **2017년 2월 21일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방과-522(2017.1.9.) “특정소방대상물 조치명령서”와 관련하여 수취인 부재 등으로 기한연장 및 재발부)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천재지변·질병·국외출장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만료일 5일전까지** 이행 할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장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서초소방서 예방과(☎ 532-0119)**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 감사반(직통) 02-3706-1800~1834 e-mail : clean119@seoul.go.kr

☞ 서울시 전자민원응답소 02-120 http://eungdapso.seoul.go.kr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7.>

제 2017- 호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수령인	성명 : 박*호	주민등록번호 801004-*****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조치명령 대상	대상 : 미니레지던스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점유자(영업주) : 박*호	
조치명령 구분	사유 : 전화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소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조치명령 발부함.	
	내용 : 건물 계단상 장애물(신발장) 설치	
	방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장애물 철거	
	기간 : 2017년 2월 1일 ~ 2017년 2월 21일 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②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를 명합니다.

2017년 2월 1일

서 초 소 방 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16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9번지 등 4필지
 - 면 적 : 보행교(L=90m) 1개소, 산책로(L=95m) 1개소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태산책로 신설
 - 내 역 : 보행교(L=90m) 1개소, 산책로(L=95m) 1개소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7.02.07.~2022.02.06.(2017.02.07.~2017.07.06.)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19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311-6번지~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235-7번지
 - 면 적 : 5,907㎡(영구 1,853㎡, 임시 4,05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보행교량 설치

- 내 역 :

· 임시점용 : 가도설치 2개소(B=20m, L=80m), 진입로설치 1개소(B=5m, L=400m)

· 영구점용 : 교량 아치부분(B=8m, L=80m) · 접속교(B=4.5m, L=78m),
계단 2개소(교각 P2, P3위치) 엘리베이터1개소(교각P3위치),
교각 P2, P3, P4

5. 점용기간(공사기간) : 허가일 ~ 영구(허가일로부터 2018.4.28.)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0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

- 면 적 : 영구 14,266㎡, 일시 1,09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올림픽 대로 ~ 여의도간 진입램프 및 여의교 확장 공사

- 내 역 :

○ 올림픽 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 여의도 진입램프 : L=712.6m(교량 L=235.0m, 옹벽 L=477.6m), B=6.4m

· 올림픽대로 이설 : L=980m(1개 차로 추가 확보)

○ 여의교 확장공사

· 여의교 기존교량 확장 : 차로폭 8차로 → 9차로

· 보도교 신설 : 연장 240m, 폭 4.6~5.2m(보도폭 : 4.0m)

* 기존교량과 분리된 독립보도교 형식

5. 점용기간(공사기간) : 허가일로부터 영구(허가일로부터 24개월)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